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윤진영

2017년 8월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윤진영

2017년 8월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윤진영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verseas Deployment of Korean
Military Reserve Forces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윤진영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재 철

이 논문을 군사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윤진영

윤진영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오두열 (인)
위원	경남대학교	교수	신미식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관수 (인)
위원	송원대학교	교수	박갑룡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재철 (인)

2017년 6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약어표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4
제1절 국가동원의 개념과 동원제도	14
1. 동원의 개념과 동원체제	14
2. 한국의 동원제도와 관련법령	22
제2절 국제분쟁과 평화유지 활동	25
1. 국제분쟁	25
2. 평화유지 활동	35
제3절 해외파병 개념과 한국의 파병활동	47
1. 해외파병의 개념과 전략적 가치	47
2. 한국의 해외파병	51

제4절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정책 결정요인	67
1. 외교적 요인	68
2. 정치적 요인	70
3. 경제적 요인	72
4. 군사적 요인	74
제5절 분석의 틀	76
제3장 외국의 동원병력 파병 사례와 시사점	78
제1절 외국의 동원사례	78
1. 미국	78
2. 프랑스	90
3. 스위스	92
4. 독일	94
제2절 시사점	96
제4장 동원병력 해외파병 여건분석	98
제1절 외교적 측면	98
제2절 정치적 측면	104
제3절 경제적 측면	109
제4절 군사적 측면	119
제5절 소결론	129

제5장 동원병력 파병 시 고려요소 및 추진방향	131
제1절 관련법령 제정 및 기구설치	131
1.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	131
2. 해외파병 관련법 개정	135
3. 파병 전담기구 설치	136
제2절 국민적 공감대 형성	139
1. 국민과의 소통	139
2. 여론조사 활용 활성화	140
3. 파병의 기대효과 전략적 홍보	142
제3절 파병부대 편성 및 자원선발	143
1. 파병부대 편성	143
2. 자원선발	145
3. 부모 및 가족 동의	147
제4절 파병부대의 임무수행	148
1. 유엔 평화유지 활동	148
2.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	151
3. 국방협력 활동	153
제5절 파병 복귀 후 관리	154
1. 취업 인센티브 부여	154
2. 잔여 예비군 훈련시간 조정	155
3. 기타 보상대책	157
제6장 결 론	158
참고문헌	162

표 목 차

<표 2-1> 동원의 분류	14
<표 2-2> 해외파병 관련 용어의 정의	48
<표 2-3> 한국군 해외파병의 진화 단계	49
<표 2-4> 한국군 주요 해외파병부대 현황	53
<표 2-5> 동명부대 주요 활동	54
<표 2-6> 한빛부대 주요 활동	56
<표 2-7> 청해부대 주요 활동	61
<표 2-8> 아크부대 주요 활동	64
<표 2-9> 정부별 해외파병 성격과 국정기조	71
<표 3-1> 미국 육군의 연혁과 참전 현황	80
<표 3-2> 미국의 예비군 복무제도	81
<표 3-3> 사막의 방패작전에 지원한 예비군 현황	87
<표 3-4> 사막의 방패작전 시 소집된 선발예비군 전투부대 현황	88
<표 3-5> 이라크 전쟁 시 예비군 / 주 방위군 동원현황	89
<표 3-6> 스위스 민병군 편성	93
<표 4-1> 한국의 대 베트남 경제활동 수익	110

<표 4-2> 현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 114
 <표 4-3> 2017년 한국군 해외파병 예산 114
 <표 4-4> 2017년 한국군 해외파병 예산 현황 115
 <표 4-5> 주요국의 인구, 상비군, 예비군 규모 122
 <표 4-6> 전역 연차별 예비군 편성 참고자료 125
 <표 4-7> 간부 예비군 편성 연령 125
 <표 5-1>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방향 132
 <표 5-2> 병역법 개정방안 133
 <표 5-3> 예비군법 개정방안 134
 <표 5-4> 국제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135
 <표 5-5> 국제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육군규정 개정방향 136
 <표 5-6>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156

그림 목 차

<표 2-1> 분석의 틀 76

약 이 표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CDI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국방정보센터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식량농업기구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S	Islamic State	이슬람국가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국제안보지원군
MNF	Multinational Force	다국적군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PKO	Peace Keeping Operation	평화 유지활동
PRT	Peace Reconstruction Team	평화재건단
UN DP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개발계획
UN DOF	Nations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UN병력분리 감시군
UN EF	Nations Emergency Forces	UN긴급군
UN 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UN난민기구
UN ICEF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UN아동기금
UN IFEM	Nations Development for Women	UN여성개발기금
UN IFIL	Nations Interim Fource in Lebannon	국제연합 레비논 잠정군
UN TSO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UN 휴전 감시기구
WFP	World Food Prgramme	UN세계식량계획

ABSTRACT

A Study on Overseas Deployment of Korean Military Reserve Forces

Yoon, jin young

Advisor : Prof. Kim, Jae Chul ph.D.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ternational disputes and conflicts have continued around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despite the hope and efforts of international society expecting the establishment of peace after the end of cold war from the conflict between ideologies led by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s Eastern Europe countries as well as the Soviet Union, a power in the era of cold war collapsed and a neighbor country, China accepted capitalistic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society met the era of post-cold war. However, international order confronted new conflict and disputes such as border dispute, religion, racism, environment and refugee even after breaking the post conflict between ideologies.

The phenomena must be from the transition in which regional powers,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era of cold war, did show their different interests and weakened control power. The reasons of disputes became various such as racism, religion, territory, natural resources and etc and especially, the recent disputes tend to be complicated as mixed with hunger, poverty, diseases and human rights, in which refugees from civil wars even created humanitarian disasters and terrorism, probably threatening the world peace.

For this,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gree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world peace and participated in the world peace maintaining activities in various ways. Korea also joined the UN in September

1991 for the request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our national interests and then active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world peace activities and military exchange cooperation such as 40 thousands soldiers in 25 countries till now, receiving high praise as a model country of peace maintenance activity. Our overseas deployment of military manpower(peacekeeping operation) would increase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situation.

Peacekeeping operation is the general term of activities given by the mission that the multi-national peacekeeping forces(PKF) and peacekeeping group, which are installed by a specific country or regional security organizations to settle international or regional disputes and establish the peace, should do.

We, the country bitterly experiencing the Korean War, have a very special meaning of the overseas deployment of military manpower as we still confront the serious threats of North Korea. Until now, we have deployed the military manpower to overseas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current domestic security threats of North Korea, historical background for the security of allied countries and practical national interests. Especially, the Vietnam War was for us to prepare the ground of self-supporting economy with the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of U.S. as handling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when we reinforced the alliance with U.S.

Korea has mainly dispatched about 40 thousands of active officers and men to 25 countries from September 17, 1991 to 2017 especially for UN peacekeeping forces, multi-national forces, national cooperative activity and military observers' disaster aid, from which we inspired the feeling of hope and peace and raised the national prestige. That a country deploys military manpower to overseas countries is meaningful in participating in world peace maintenance while it is utilized as a display of national power and military power and a way of military diplomacy and military cooperati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 is to deploy military manpower to overseas countries, to raise the country's prestige in the world and to increase the national interests. Also, participating in the UN and inter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 is for us to accumulate our leadership and prestige and to justify ourselves when expressing our opinion in a policy-decision of the UN. Many membership countries of the UN deploy their active officers and men as well as increasingly reserve force, in which U.S. is the representative country.

Therefore, Korea has to review the current overseas deployment system of military manpower mainly including active officers and men. For the background, deploying the only active officers and men and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 might improve the efficiency of mission execution and learn and hand over the know-hoe and experience while the almost currently deployed units could not be completely organized and instead, they had to reduce the organization, resulting in weakening the fighting power as they were selected for peacekeeping operation.

In addition, the national defense reform is being promoted, in which the current active force would be gradually reduced from 620 thousands(490 thousand of army, 70 thousands of navy and 60 thousands of air force) in 2016 to 530 thousands in 2022, from which the current defense may cause a temporary security vacuum as we deploy forces to overseas countries.

Korea sets a goal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blem solving of the globe and actually executes various activities such as truce supervision, reconstruction support and anti-piracy operation. While participating in the peacekeeping operation, Korea would be developed, possibly joining a group of advanced countries.

The buildup of national power would ask us to more contribute to the peacekeeping oper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Also, to correspond to gradual reduction of active military force and kinds of threats, the current peacekeeping operation of the only active military force may be limited as more as international society expec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include reserve force such as civil experts, social organizations, police and etc to the military force for overseas deployment. Among them, the reserve force would be the resource that has the capabilities to execute the missions of peacekeeping opera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peacekeeping activity of the reserve force raises the national prestige, substitutes the active military force, expands the agreed security among the nation, reinforces sense of national security and utilizes the professions and better activities of the reserve force.

Overseas deployment practically contributes to national interests,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while we may justify the assistance of the UN in emergency such as threats of North Korea, as a duty and right of a membership country of the UN. Also, it is helpful in raising the national prestige, promoting the friendship with the countries after the settle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reinforcing the diplomatic power. Therefore, the decision should be made by the President's intent as well as the nation's consensus.

The paper is to research with the purposes. In the future, Korea should review the overseas deployment in terms of military as well as national strategy. Also, that a reserve force participates in the peacekeeping operation will be researched in many ways at government level while the necessity to expand the roles of reserve force, which is expected to be included in overseas deployment, is raised. Finally, the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policy-making factors which during the time, PKO, a kind of overseas deployment was decided, the instances of reserve force deployment and suggestions from overseas countries such as U.S., France, Swiss and Germany, the conditions when we deploy the reserve force to overseas countries, and the considerations that we would review before overseas deployment including the survey and interview with commanders and primary staff action officers, contributing to the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 of Korean reserve force.

Key Word : Reserve Force, Differences Of Opinions, Peace Keeping Operation, Multinational Force, Overseas Deploymen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 인류는 소련과 미국 중심의 동·서간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희망과 노력에도 세계의 여러 각지에서 국제적 분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주도국으로 군림하던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이웃나라인 중국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질서는 과거 이념의 대립에서는 탈피 하였으나, 지금은 국경, 종교, 인종, 질병, 환경, 난민과 같은 문제가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 온 일부 강대국의 이해가 상충되고 이념적 구속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분쟁의 원인도 영토, 종교, 자원, 민족, 내전의 문제 등으로 다양해졌고, 특히 최근에는 가난과 빈곤, 질병과 나라별 내분에 의한 폭동은 물론, 인권문제까지 얽혀있고 때로는 내전에 의한 난민, 대규모 인도적 참사로 비화되는 등 테러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분쟁이 국제질서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유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청과 국가이익을 위해 유엔에 가입한 1991년 9월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총 25개국에 4만여 명을 유엔 국제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분야의 군사교류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 참여하여 많은 나라로부터 평화유지활동의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병활동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평화 유지활동 수요가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유지활동이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서 국제적 또는 국지적인 분쟁의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하여 특정국가나 지역 안보기구가 주도하여 설치된 다국적 평화유지군과 평화유지 임무단이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총칭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6.25전쟁을 직접 경험한 나라로서 아직도 직접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하에 해외파병 활동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국군의 해외파병은 국내안보 위협 대비와 동맹국 안보 문제에서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현실적 국

가이익을 고려하여 파병이 이루어졌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참가는 미국과 동맹 강화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로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유엔에 가입 후 2017년 현재까지 26년간 25개 국가에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 동참, 국방협력 활동, 군 옵서버 요원 재난구호 등 현역장병 위주로 편성, 유엔이 요청하는 지역과 국가에 파병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평화와 희망을 심어준은 물론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국가가 군 병력을 해외에 파병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력과 군사력의 과시이고 군사적 외교와 국방협력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 평화유지활동은 단순한 군대를 분쟁국에 파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일이다. 또한, 유엔과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과 리더십을 축적해 나가고,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결정시에도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유엔에 가입된 다수의 국가들이 현역 병력만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병력의 파병도 점차 증가 추세이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따라서 한국도 현재처럼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해외파병을 현역장병 위주의 파병제도에 대해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 배경에는 현역만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임무수행 측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파병의 경험과 노하우를 익히고 전수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반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대다수의 부대도 완전 편성된 것이 아니라 일부 감소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고, 일부 부대는 다수의 주요 특기자들이 평화유지활동 자원으로 선발됨에 따라 전투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2016년 현재 현역 병력이 62만(육군49만여 명, 해군7만여 명, 공군 6만여 명)여 명에서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2022년에는 53만여 명으로 감축해야 하는 군 구조 개편도 진행되고 있으며,¹⁾ 지속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현역 병력만으로 해외파병을 감당할 경우 우리의 안보 공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p.40-41.

한국은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여 피해복구 지원과 휴전국의 정전감시, 해적소탕작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로 한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가까운 시기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국력이 신장되면 국제사회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현역의 단계적 감축과 갈수록 다양해지는 각종 위협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현역만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평화 유지활동을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파병 병력에 동원병력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경찰 등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동원병력은 현역과 함께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원이다. 이러한 동원병력의 평화유지활동은 단순히 현역의 대체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국가위상 제고, 국민안보 공감대 확산, 국가 안보의식 저변확대, 전문 인력활용, 일자리 창출, 동원병력의 역할 확대 등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파병은 국가이익과 안전보장, 경제발전의 실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이자 권리의 수행과 장차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도발 등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의 지원 명분축적, 국가위상 제고, 분쟁국가의 분쟁종식 후 해당국과 우호증진, 경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파병정책을 추진하여 외교적 차원을 중요시 하고, 파병의 정책결정도 대통령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파병을 군사적인 관점만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부주도로 추진하면서,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동원병력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성과 국가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동원병력의 역할확대 방안도 모색할 당위성을 제기한다.

그동안 해외파병 시 어떤 정책결정요인 하에서 파병을 결정하였는지를 연구하고, 미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외국의 예비군 동원사례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군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여건을 분석하고, 동원업무 주요 지휘관과 참모를 대상으로 설문면담 결과를 정리하여 동원병력 해외파병 시 고려요소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제 평화유지활동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오늘날 해외파병은 자국의 군대를 타국의 영토에 상주시켜 전쟁외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내정치 행위가 국제행위로 전환 또는 전파됨을 의미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 자료에서 해외파병은 전투를 제외한 군사외교의 다른 표현 방법으로 우리나라 파병의 경우에서도 자이툰 부대는 피해복구, 재건지원과 의료구호 활동을 위한 소규모 전투부대 파병이었고, 아덴만에서 청해부대 역시 우리나라 상선보호 및 해적으로부터 국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역 장병들로 구성된 부대의 파병이었으며, 현재도 현역병력 위주의 파병활동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역장병의 파병과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한적 없는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파병 연구이다.²⁾ 현재 한국은 현역 병력만을 대상으로 유엔이 요구하는 국제평화 유지활동과 분쟁지역 다국적군의 평화유지 활동과 국방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현역 병력의 대규모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예비군의 해외 파병을 위한 국가 동원의 개념과 유형, 국제분쟁과 평화 유지활동에 관해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동원병력 활용분야는 전투분야 보다는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동원병력이 수행할 수 있는 전투근무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구상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투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의 예비군은 파병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원예비군 해외파병은 적지 않은 마찰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 분야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여건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원정책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으로 세분하였다.

2) 해외 파병의 대상을 예비군 전체로 하지 않고 동원병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률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즉, 예비군 편성 대상자 중, 병사는 전역 후 0~8년차로 이중 전역 후 0~4년차는 병력동원 지정대상자로 편성 관리하고 년 1회 28시간의 동원훈련을 실시하며, 5~8년차는 향토방위작전 대상자로 편성 관리하며 년 2회의 일반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간부(장교, 부사관)는 전역 후 해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편성되며 1~7년차까지 동원훈련 대상이다. 따라서 전역 후 1~4년차 이내의 병력동원 대상자로 한정했다.

넷째, 한국의 예비군은 해외파병 사례가 전무한 만큼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참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비군 파병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한국의 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4개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이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해외파병정책 결정을 위한 이론을 정립하고,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해외파병 여건분석에 적용하는 질적 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 자료가 빈약하고 일부 내용은 비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연구자료 획득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면담과 조언을 통해 연구를 위한 논리적 토대와 현장감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국방부, 합참과 육·해·공군 각 군에서 발행한 정식문서, 보고서와 간행물, 설문면담 등 1차 자료와 해외파병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단행본과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지 등의 자료를 참고로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도모하려 노력하였고, 부분적으로 외국의 문헌과 신문자료를 이용하여 국내문헌이 지니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 노력하였다. 아울러 해외파병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외교통상부 등의 정부기관의 해외파병 정책결정 자료와 국회의 PKO 파병 관련 회의록과 국군의 날 행사시 대통령 연설문 등의 내용과 해외파병 관련 선행연구를 인용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국가동원의 개념과 동원제도, 국제분쟁과 평화유지 활동, 해외파병의 개념과 한국의 파병에 관한 논리를 정리하고,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동원사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한국군 동원병력 해외파병 여건을 분석한 후 해외파병 고려요소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2장은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국가동원의 개념과 유형에서는 동원의 개념과 동원체제, 한국의 동원제도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2절 국제분쟁과 평화유지 활동은 국제분쟁, 평화유지 활동 관하여 정리했으며, 제3절에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정책 결정요인에서는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외국의 동원사례와 시사점을 미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을 대상으로 예비군 현역, 해외파병 운용사례,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예비전력 정책과 해외파병 절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군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대한 여건분석을 외교,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국제안보협력 강화, 국제평화유지 기여,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파병의 당위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파병병력의 신변안전 등을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경제에 기여, 해외파병 예산 절감, 청년 취업기회 확대 등을 살펴보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국방개혁 추진 여건보장, 예비전력 활용 극대화, 대군신뢰도 증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동력병력의 해외파병 시 고려사항을 관련법령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파병부대 편성, 파병자원 선발기준 및 방법, 파병부대의 임무, 파병복귀 후 관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6장 결론에서는 한국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 간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시 고려요소 및 추진방향과 제한사항, 향후 추가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고 현역병의 해외파병 관련 연구 자료들은 매우 다양했다. 따라서 현역병 해외파병 관련 연구 자료를 기초로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한국군의 해외파병 정책관련 연구자료 둘째, 해외파병 정책결정 요인 셋째, 외국의 동원사례와 시사점 넷째, 한국군 동원병력 해외파병 여건 분석 다섯째, 한국군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방안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파병이 국가이익에 미치는 연구로 윤지원(2016)은 “탈 냉전기 한국군의 파병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은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된 이래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및 민주주의 수호, 전 지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재난 구호 활동에 대하여 우리 군을 파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탈 냉전 이후 우리 군의 파병을 평화 유지활동(PKO), 다국적군, 군사협력 등의 파병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파병별 주요 특징을 배경, 파병규모, 주요 활동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우리 군의 해외파병이 군사 및 국익적 측면

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³⁾

이상욱(2015)은 “한국 해외파병 정책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에서 전투병이 파병된 국방 협력활동 중 아크 부대의 경우 사회요인과 개인요인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정부의 체제요인 영향력이 감소하여 개인과 사회, 정부, 체제 순으로 보았다. 비 전투병이 필리핀에 파병된 아라우 부대의 경우 정부요인과 개인요인이 증가하고 사회요인과 체제요인이 감소하여 정부, 개인, 체제, 사회 순으로 영향력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해외파병 정책결정의 예상되는 파병유형별 영향력 우선순위와 실제 사례분석에서 제시한 일부의 우선순위가 다른 이유는 파병 사례별로 보다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외부의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⁴⁾

이갑성(2015)은 “한국의 다국적군 해외파병과 국가 자율성” 연구에서 국가가 파병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파병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울인 제반 노력과 결과를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식하였다. 국가자율성은 로즈노가 제시한 동맹관계에서의 국가적 유형과 연계하여 순응·협조·저항적 자율성으로 정의하였다.⁵⁾

마상운(2013)은 “한국군 베트남파병 결정과 국회의 역할”에서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국내적 논의를 전투부대 파병동의안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심의 및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베트남 파병은 사회적 합의와는 크게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파병과 관련하여 종종 정략적 입장으로 각색된 국가이익을 추구했다. 일부 강경파는 선명야당의 기치 아래 파병을 강력히 반대했다. 여기에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극심한 불신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분열된 야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처음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겠다는 동기에서, 그리고 미국의 파병요청이 반복됨에 따라 이후 점차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계산하에 파병을 밀어붙이듯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대화나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대규모 해외파병이라는 중대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형성해가려는 노력은 기울여지지 않았다고 하였다⁶⁾

계운봉(2012)은 “한국의 해외 파병에 나타난 국가이익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

3) 윤지원, “탈냉전기 한국군의 파병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4호(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pp.109-133.
 4) 이상욱, “한국 해외파병 정책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p.165.
 5) 이갑성, “한국의 다국적군 해외파견과 국가자율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p.196.
 6) 마상운, “한국군 베트남 파병 결정과 국회의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22권 2호(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3), pp.59-86.

이익구조 개념을 한국의 해외파병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화 유지활동(PKO)을 제외한 해외파병을 구성하는 요소인 파병목적, 전쟁의 성격, 안보환경, 분쟁개입의 정당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파병 시 국제체제와 국력의 안정성에 적합한 한국의 필요한 욕구단계와 비교하여 해외파병에 나타난 국가이익 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⁷⁾

전제국(2011)은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에서 글로벌 평화활동은 예산지출과 인명희생 등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군의 실전경험 축적으로부터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 한미동맹의 균형 발전, 외교안보 지평의 확대, 해외국민·기업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무형의 외교안보 자산을 창출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파병과정 중 특히, 다국적군(MNF) 파병의 경우 각종 반대운동과 국내정치에 묶여 소극적 방안으로 귀결되었고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PKO를 국익창출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려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파병판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파병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지 작전소요에 맞추어 파병규모·임무·주둔지 등을 최적 판단하고 적시에 실행하는 전략적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하다. 아울러 PKO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고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국민과의 소통 등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⁸⁾

김정두(2011)는 노무현 정부의 자이툰부대 파병결정 과정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가 파병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목표, 정부 및 역할 요인은 정책 결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사회적 요인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는 국내 요인이 외부 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 입각한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파병이 결정된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결정 과정에서는 외부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외부적으로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과 내부적으로 국가목표, 사회적 요인, 정부적 요인,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교적 순탄하게 파병이 결정된 사례이다.⁹⁾

따라서, 한국군 해외파병에 관한 군사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요인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즉 국내적 요인과 파병 요청 국 환경에 따라 파병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7) 계운봉, “한국의 해외파병에 나타난 국가이익 구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pp.180-181.
 8) 전제국, “한국군의 해외 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의 국민 증진 효과”, 『국가전략』, 제17권 2호(성남: 세종연구소, 2011), pp.33-68.
 9) 김정두, “한국 군사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p.167.

초래할 수 있다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군사외교정책 결정은 국제적 외부환경, 우리나라의 국가목표, 사회적 여론의 방향, 한·미동맹 관계와 국가 최고 정책 결정자의 성향 등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미동맹 관계와 국가이익이 가장 큰 정책결정 요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

박병철(2002)은 평화 유지활동은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 즉 강행규범(jus cogens)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pparatus)가 되어야 한다. 즉, 국제사회는 분쟁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제도는 분쟁을 억제하는 기대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대는 국가 간 상호의존을 증대시켜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 평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¹⁰⁾

안충준(2002)은 “케시미르 분쟁과 한반도에서의 UN PKO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대화 창구로 국제연합을 통한 활용 이외에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한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외교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정치적 물질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PKO 참여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한국의 PKO 참여 요원들이 국제 평화유지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할 때 우리는 국제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¹⁾

향후 유엔의 국제 평화유지활동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같은 국제적 해외파병 활동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키고 외교적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더 해외파병 활동에 관한 분야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격과 다국적군 평화활동의 파병목적이 다른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기본바탕으로 그 동안 한국의 해외파병 활동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보완하여 세계평화 유지라는 대의를 달성하고 국가이익 증진에도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이지 못한 PKO파병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우리의 수동적인 PKO파병 참여정책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PKO 참여를 통해 분단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

10) 박병철, “UN 평화유지 활동을 통한 국제분쟁 관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 p.156.

11) 안충준, “케시미르 분쟁과 한반도에서의 UN PKO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 p.196.

대 형성을 위한 외교적 정치적 전략적 접근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개입될 경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의 축적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며, 현역 병력의 감축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국방개혁과 군 구조개편을 연계하여 동원병력의 평화유지활동 정책의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관한 연구로 이세영(2017)은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예비군도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국방차원에서 예비군 평화유지활동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 예비전력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새로운 안보전략 차원에서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참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편성하거나 기존 조직 내에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분야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예비군 평화 유지활동을 포함하여 해외파병 관련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분야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예비군 파병관련 훈련체계,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군 간부의 해외 연락관 파견, 전문연구소 설립 등 예비군 해외 파병과 관련된 기반구축이 요구된다고 하는 등 향후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¹²⁾

유정화와 임진희(2016)는 “한국군 해외파병 관련 국내의 현황과 기록관리 실태 연구”에서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며, 간접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라 했다.

관련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파병 업무가 진행되동안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은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별 기록물들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파병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을 컬렉션화 하는 작업은 더 더욱 어렵다고 보았다.¹³⁾

12) 이세영, “예비군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7), p.116.

13) 유정화·임진희, “한국군 해외파병 관련 국내의 현황과 기록관리 실태”,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3호(한국

서보혁(2015)은 “결정의 합리성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재검토”에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은 대내·외적, 주·객관적 요인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 요인들이 파병정책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고 정책 결정자들과의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정부조직의 표준 행동절차나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흥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의 진보적 견해를 억제하고 현실주의 시각에서 상황을 규정했으며, 그 결과 정책결정 요소들이 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의 파병안은 첫째, 강력한 상황 제약 속에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고 둘째, 그것은 정책결정 집단이 현실주의적 정책목표 설정과 일관성 있는 상황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였다.¹⁴⁾

이병록(2015)은 “한국의 베트남, 이라크 파병정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로즈노의 이론에서 5개 변수를 외교정책결정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파병정책 결정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정치 이론과 파병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세부적인 하위 결정요인을 설정하였고, 베트남전 파병은 군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변수, 남·북대결 체제하의 역할변수, 권위주의적인 제 3공화국의 정부변수, 신생·저개발 국가의 사회변수, 동·서 냉전과 도미노 이론하의 체제변수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¹⁵⁾

박동순(2015)은 “탈 냉전기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해외파병 정책 결정의 주요 요소 중 대통령-여론-정부-국회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전투부대의 파병정책 결정은 대통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직접적인 결정과정에 여론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모든 정부의 기능과 협상의 진행과정에 언론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정책적 의미로 한국의 파병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우리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해외파병 결정 과정의 공개와 해외파병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¹⁶⁾

정보관리학회, 2016), pp.287-319.

14) 서보혁, “결정의 합리성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제55집 3호(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pp.235-270.

15) 이병록, “한국의 베트남, 이라크 파병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p.190.

김수행과 김현경(2014)은 “한국의 대중동 파병외교 정책 : 아프가니스탄 및 UAE 파병을 중심으로”, 『중동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중동 파병 문제 및 테러리즘과 인질 사태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도 2000년 이후 급속히 늘어났으며, 이슬람 테러리즘의 대두와 우리나라의 파병을 통해 활발해진 연구는 주제의 특성상 사례 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반적으로 이슬람권의 정치, 문화, 사상, 언어 등에 대한 전통적 연구에서 또 하나의 항목으로 우리나라와 이슬람권간의 현대적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 분야로 파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⁷⁾

우리 정부는 2010년 아프가니스탄 병력파병 안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7월 1일부로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차리카르시 북쪽 인근에 평화재건단(PRT)과 평화재건단 보호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원전수주 계약을 계기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하, UAE)에 특전사를 2011년 1월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한국의 중동국가에 대한 파병관련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정과정의 결과적 가변성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전제국(2011)은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 활동의 국익증진 효과”에서 한국군의 파병과정은 특히, 다국적군(MNF) 파병의 경우 각종 반대운동과 국내 정치에 묶여 소극적 방안으로 귀결되었고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고, 앞으로 PKO를 국익창출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려면 소극적, 수동적 파병관례에서 벗어나 전향적, 능동적 파병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현지 작전소요에 맞추어 파병규모·임무·주둔지 등을 최적 판단하고 적기에 실행하는 전략적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하고 아울러 PKO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고 관련법·제도의 정비,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다.¹⁸⁾

마상운(2013)은 “한국군 베트남 파병 결정과 국회의 역할”에서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국내적 논의를 전투부대 파병동의안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심의 및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베트남 파병은 사회적 합의와는 크게 관계없이 이루어졌고, 야당은 파병과 관련하여 종종 정략적 입장으로 각색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보았으며, 일부 강경파는 선명야당의 기치아래 파병을 강력히 반대했다. 부분적으로

16) 박동순, “탈 냉전기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파병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p.270.
 17) 김수행·김현경, “한국의 대중동 파병외교 정책 : 아프가니스탄 및 UAE 파병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32권 3호(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4), pp.23-54.
 18) 전제국, 전계서, pp.33-68.

는 분열된 야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한편 정부와 여당은 처음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겠다는 동기에서, 그리고 미국의 파병요청이 반복됨에 따라 이후 점차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계산 하에 파병을 밀어붙이듯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대화나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대규모 해외파병이라는 중대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형성해가려는 노력은 기울여지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⁹⁾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UN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한 한국의 해외 파병에서 “현역장병의 PKO 파병”과 관련된 자료들만 파악되었으며, 해외파병이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파병의 결정요인을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외교적,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었다.

우리는 국방개혁과 군 구조개편 등 미래지향적인 동원전력 발전과 정예화를 위하여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동원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가이익 차원의 동원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원 및 예비군업무 담당자만의 관심만으로 동원전력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동원전력은 상비군 보조전력에서 대체전력으로 탈바꿈하여 국가방위와 안보의 주력으로 더 큰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과 함께하는 동원 및 예비전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동원전력 육성과 발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방개혁의 목표와 군 구조개편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원전력을 국가안보의 중요한 필수 전력으로 지원하여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볼 때 어느 나라보다도 동원 및 예비전력 중심의 안보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발전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를 파병 시 고려사항 위주로 제시하였다.

19) 마상윤, 전계서, pp.59-8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제1절 국가동원의 개념과 동원제도

1. 동원의 개념과 동원체제

가. 동원의 개념

국가동원이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한 자원을 집결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인력·자원·재화·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원을 범위, 시기, 형태, 방법, 그리고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표 2-1>과 같다.²⁰⁾

<표 2-1> 동원의 분류

구 분		내 용
범위	총 동원	동원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전 자원을 동원
	부분동원	동원대상 자원 또는 지역의 일부를 동원
시기	전시동원	전시 동원령을 선포하고 일정계획에 의거 동원
	평시동원	전쟁 외 비상사태 시 또는 전시 대비 및 대비 훈련을 위한 동원
형태	정상동원	동원령 선포 시 사전계획에 의거 동원
	긴급동원	동원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추가 소요가 있을 때 동원
방법	공개동원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동원령을 선포하여 동원
	비밀동원	동원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하여 대상자만이 알게 하는 동원
대상	인적동원	병력 및 인력 동원
	물적동원	산업, 수송, 통신 및 기타 시설동원, 재정·금융 동원, 홍보매체 동원

* 출처 : 황진환 외, 『군사학개론』 (2011), p.158.

20) 황진환 외, 『군사학개론』 (서울 : 양서각, 2011), p.158.

국가동원의 목표는 국가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민간수요를 적시적으로 수급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경제력 확보를 통해 총력전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국가동원의 목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계획, 통제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원제도는 국가 공권력과 동원의 대상인 인적·물적 자원간의 관계를 묶어주는 개념적인 틀인 동원체계가 하나의 사회적 방식으로 구체화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제도에는 관계법령, 동원담당 기구, 동원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²¹⁾

국제법에서 전·평시를 구분할 때, 평시는 전쟁이 종료되어 평화조약 또는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를 의미하나, 우리 한반도의 여건상 장기간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 상태를 평시로 간주하고, 전투준비태세가 격상되어 국가동원령이 선포되거나 적과의 교전상태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전시로 구분한다.

전시란 국가 상호간의 무력투쟁 상태를 말하고, 사변이란 국가의 헌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무장반란 집단의 폭거 등으로 국가와 사회가 혼란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전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외부의 침입, 반란 목적이 없어도 비무장집단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과 정부를 교란시키거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혼란 상태 등을 말한다.

즉, 동원은 현대전의 개념이 총력 전환됨에 따라 군사력 이외에도 모든 국력요소의 총동원이 요구되고, 현대전에 적용할 수 있는 동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정부의 동원기능이 즉각 발휘될 수 있도록 평시에 동원대상 자원을 조사하고 계획하며, 필요한 물자에 대한 통제와 비축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 전시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함으로써 유사시 실제동원을 보장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²⁾

따라서, 동원은 최우선적으로 군사작전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국민생활 안정과 정부의 전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 및 계획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의 가용 자원뿐만 아니라 잠재자원과 부족한 자원까지 추가 개발하여 국가비상사태 극복 및 사후복구 활동이 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원의 목표가 국가의 이용 가능한 병력·물자 동원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 운용하거나 동원하여 군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민수의 적정수급으로 민생의 안정

21) 상계서, p.159.

22) 김용현, 『군사학개론』(서울: 백산출판사, 2005), p.112.

과 지속적인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총력전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이러한 동원은 동원되는 범위, 시기, 형태, 방법 및 자원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²³⁾

동원범위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되며, 총동원은 유사시 국가의 유형·무형의 제반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동원이란 어느 특정지역에서 작전개시 또는 작전이 전개될 우려가 있을시 일부 지역의 자원에 대하여 동원함을 말한다.

동원 시기는 전시동원과 평시동원으로 구분되며, 전시동원은 동원령이 선포되어 국가자원이 동원되는 것이며, 평시동원은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전시동원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동원되거나, 평상시 대침투작전 및 민방위 등을 위한 동원, 전시동원을 위한 계획된 훈련 등 평시에 이루어지는 동원을 말한다.

동원형태는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구분되며, 정상동원은 동원령 선포 시 소관부처에서 사전계획된 동원운영 계획에 의거 소요자원을 동원함을 말한다. 긴급동원은 사전 계획된 정상동원에 차질이 생겼거나 우발사태로 인한 긴급한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지역사령관이 직접 해당지역 행정관서에 긴급요청 시 지역 행정관서에서 즉각 집행 지원하는 동원을 말한다.

동원방법은 공개동원과 비밀동원으로 구분되며, 공개동원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동원령을 선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동원령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비밀리에 실시하는 것을 비밀동원이라 한다.

동원대상 자원은 국가방위에 필요한 인원(병력, 인력), 물자(산업, 수송, 건설), 재정경제, 통신, 홍보매체 등으로 구분된다.

병력동원이란 전시 또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확장 및 손실보충에 소요되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역 및 상근예비역과 군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인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술 인력을 국가가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물자동원이라 함은 전시에 소요되는 군수 및 기타 소요물자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통제 운용하는 것을 말하나, 협의로는 보통 군수물자에 국한하며, 이를 위하여 물자의 생산으로부터 유통, 이용, 비축, 소비통제 및 수·출입에 이르기까지의 제반통제 수

23) 상계서, p.113.

단을 말한다. 전시에 소요되는 군수란 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자, 장비, 시설, 업체를 말하며, 기타 소요물자는 관수·민수·생산력 확충용 및 수출용 등이 포함된다.

재정경제 동원이란 전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전쟁비용을 적시에 충당하고 전시 산업 시설 업체들에게 생산의 극대화를 보장하며 동시에 민생의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재정예산 면에서의 조치 등을 말한다.

통신동원이란 전시에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관·민소요의 적정배분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통신자원을 신속히 동원하는 것을 말하며, 홍보매체 동원이란 전시에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전쟁목적을 인식케 하고, 전쟁의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민의 총화단결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매개체의 동원을 말한다. 이렇게 많은 분야의 동원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 및 장차 전 양상을 고려할 때 비교적 짧은 단기간에 걸쳐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총력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상시부터 정부가 국가동원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통제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국가동원 체제를 확립하고 동원 대상자원 조사 및 관리와 물자 비축 및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유사시 동원을 보장해야 한다.

전시에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시설의 전시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조정 및 통제한다. 즉, 전시와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 시 중점관리업체에 부여한 임무가 통보된 동원 품목의 적시적인 생산을 위해서, 평상시부터 생산시설을 추가 확장·신축·변경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업체별로 사전에 주어진 전시 동원 생산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체제를 갖추는 것이며, 해외자원의 긴급도입 등을 통해 동원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동원령이 선포되면 총무계획과 동원운영계획에 계획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므로 조기에 선포될 경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우려하여 동원령 선포가 지연될 경우에는 전쟁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원령의 선포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2011년부터 관련 법령이 제정된 부분동원 제도는 상황 진전에 따라 동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라 하겠다.²⁴⁾

전쟁억제력 일부로서의 역할은 손자병법 시계(始計)편에서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로 삼고 죽음이 걸린 것으로 깊이 살펴야 한다’ 고 했다. 즉, 전쟁은 국가의 존망과 관

24) 육군본부, 『동원 및 예비군업무 실무지침서』 (2015), pp.25-28.

련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모든 역량을 이용하여 억제
 해야 하나 만약 이에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하였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
 비전력은 상비전력·연합전력 등의 군사적 수단, 정치 및 외교, 경제 등의 비군사적 수
 단과 더불어 평시 전쟁의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경제적인 국방에 기여하는 역할을 보면 1990년대 초 냉전(Cold War)이 종식되면서
 동북아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많은 국가가 병력과 장비를 감축하였으며, 국
 방비를 줄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국방을 위해서 개별 국가가 처해있는 안보
 환경에 따라 최대의 국방비와 병력 및 장비 등이 필요하겠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국방
 비의 소요가 많고 이는 국가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국민의 삶의 질 저하에 직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평시 자국의 안보환경을 반영하면서 국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의 상비전력을 보유하여 전쟁 억제력이나 응징보복, 전
 쟁 초기 대응전력 등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예비전력을 적시에 동원하여 국가총력
 전으로 대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책이나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²⁵⁾

나. 한국의 동원체제

동원체제란 효율적인 동원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동원조
 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은 첫째, 필요한 인적·물적 모든 자원을 적보다 신속히 동원하
 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정치·경제 및 사회적 질서의 혼란을 최
 대로 억제하여 국력이 분산 내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신속한 동원’과 ‘혼란
 의 억제’라는 서로 상반되는 과제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동원조직의 과업이다.

동원조직은 국가의 행정조직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기구가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첫째, 제한된 국력의 범위 내에서 최단기간에 군에서 필요로 한 전력을 최대한 구축
 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동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용 가능한 유·무적 자
 원을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한다. 셋째, 각종 동원을 수행하
 는 기관 상호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와 유기적인 협조,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동원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치체제와 동원역량 및 행정체계 등이다.

25) 육군본부, 『동원 및 예비군업무』 (2013), pp.1-15.

26) 김용현, 전계서, p.116.

정치체제 면에서는, 평시체제로부터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평시체제로부터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전쟁 수행을 위한 각종 인적·물적, 기타 소요를 가장 적시 적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은 물론 모든 국가 자원을 평시부터 철저히 통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와 전시체제의 큰 차이는 없고 국민들도 정부의 통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관련 물자라 할지라도 국가 동원령이 선포되기 이전에는 각 개인과 회사나 기업의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도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유사시 동원의 집행이 국민에게 주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음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동원조직과 체계가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동원역량 즉, 동원물자의 비축정도측면에서는, 오늘날의 전쟁양상은 점차 단기 속결전의 경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동원되어 있는 군사력과 즉각 활용 가능한 동원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는 전시생산이나 징발과정을 통해서 활용가능한 자원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단기 속전결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전시에 소요되는 다양한 물자의 품목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동원조직의 임무와 역할이 증대되고 반대로 전쟁에 필요한 동원대상의 자원이 풍부하고 비축정도가 높을수록 동원조직은 단순하고 능률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존 자원이 많지 않음에도 동원조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신속한 동원 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직의 보장도 절실히 요구된다.

다. 동원병력의 임무와 역할

동원병력이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전쟁수행을 위한 부대증편 및 손실보충 등 군부대 작전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대상자를 말한다. 이런 동원병력은 국가비상사태 등 유사시 군 작전소요 병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원 및 충원하여 동원자원 관리 및 동원대세를 확립하게 된다. 이런 동원병력을 동원하는 병력동원은 다음과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²⁷⁾

첫째, 병력동원은 국가 구성원의 하나인 국민을 유사시만 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평소 경제활동,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한다. 하지만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 대상 자원은 국가방위를 위한 전력으로 국가안보의 주역으로 군부대에 충원되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병력동원은 평상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유사시 전쟁에 대비하여 국민 중 일부분을 동원한다는 상황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병력동원의 법적 근거는 동원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시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국민들에게 완전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상시와는 상이한 불안정성과 심리적 마찰요소가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좌·우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법적 권력에 의해 수행되는 동원 등 관련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강요할 수 있다. 병력동원의 근거는 앞에서 살펴본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²⁸⁾ 예비군법 등이 해당 되는데, 이러한 법령은 동원령 선포시 동원집행의 근거를 보장하고, 법적인 정당한 목적을 우리 국민에게 요구 할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 병력동원은 시간적 통제를 받는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시간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그 중 병력동원은 그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동원병력이 지정된 부대는 해당 병력이 동원되어야 증편되어 실질적인 전투력의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동원 집행을 얼마만큼이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지가 관건이며,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병력동원 대상자의 참여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병력동원의 과정을 보면 대체로 “동원령 선포 및 임무하달 → 최초 집결지 집결 → 병무청 통제 하 동원병력 수송 및 호송 → 병무청과 소집부대 인도·인접 → 소집부대 입영 → 부대증편”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 중 우발상황 요인이 가장 높은 단계가 최초 집결지에 집결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동원 대상자가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부대로 응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병력동원 되는 대상 즉, 각각의 동원병력 개인적 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지연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 상황 시 초기 신속한 동원의 보장을 위해서는 병력동원 대상자가

27) 육군본부(2015), 전게서, pp.13-16.

28)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자원조사, 훈련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병력동원 대상자의 동원지정은 연령과 신체상 등급을 통해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병력동원 자원 지정체계는 수입군부대장의 지역배정서에 의거 동원소요에 부합되도록 지방병무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동원지정은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전역 후 6년차 이내 자원으로 동원지정하며, 자원이 부족한 경우는 계급별 연령정년 전까지 확산 지정하여 최근 전역자 순으로 지정한다. 병사는 4년차 이내 자원으로 동원지정하며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방어), 향토사단(증편부대, 창설부대) 상비사단, 손실보충부대 요원 순으로 지정한다. 자원이 부족할 경우는 전역 후 5년차 이상의 자원 중 최근 전역자 순으로 동원 지정한다.²⁹⁾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병력동원 자원의 지정은 동원병력의 연령을 고려하여 지정이 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동원병력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시는 신체검사를 통해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동원자원은 귀가 조치시키거나 재검사를 통해 입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절차없이 전투병력으로 편성한 경우 부대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원병력 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부대의 완전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자원을 지정하며, 유사시 동원령이 선포되면 현역부대의 증·창설 요원으로 보강되어 현역신분으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병력동원 대상자는 전역 후 0~4년차까지는 동원병력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부대 증·창설 및 손실보충 요원으로 활용되며, 평시 연간 28시간을 해당 소집부대별로 동원훈련에 참가한다. 5~6년차 예비군은 향토방위작전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며, 연간 20시간의 일반 예비군훈련에 참가한다.

평시 향방동원령이 선포되면 소속된 예비군부대(읍·면·동대 및 직장)로 소집되어 향토방위작전(중요시설, 직장방호, 병참선, 기동타격 등)을 수행하며, 총 동원령이 선포되면 연초 병력동원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해당 소집부대로 동원에 응소하여 부대증편 및 창설 요원으로 현역과 동일한 전시 임무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가용자원은 국가 및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히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국가 가용자원은 국가의 잠재전력으로 평상시에는 예비전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다가 유사시 이를 상비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전력

29) 육군본부(2013), 전계서, pp.1-4.

은 국가 가용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비전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교로서 국가 총력전 수행 및 전쟁지속능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동원전력과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의 보강뿐 아니라 향토방위작전과 통합방위작전 등에 운용되어 국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재해·재난복구 등의 민방위 업무 지원 등 포괄적 안보를 위한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한국의 동원제도와 관련법령

가. 동원기구 및 기능

오늘날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군사비용이 소요되고 이와 같은 군사비용의 지출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적은 군사력을 유지하여 군사력 유지에 소요되는 지출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적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대신 유사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예비대책으로 제2의 군사력을 유지하려 동원을 중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통치,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시련 그리고 6·25 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 총체적인 국가동원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자주국방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와 같은 국가동원 체제로의 발전은 1962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대내·외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하여 대통령을 자문하는데서 비롯되었다.

1966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국가동원연구회가 창설되었으며, 이 연구회는 국가동원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수집과 기초연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회는 1969년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비상기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73년에는 다시 중앙동원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중앙동원위원회가 계획을 통합조정하고, 동원계획의 기본지침을 수립, 각 부처의 동원업무를 조정, 통제, 협조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중앙동원위원회는 19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³⁰⁾에 의거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지금의 비상기획위원회로 개편되었고, 1987년 11월 대통령령 제 43호로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³¹⁾

국가 동원의 평시 준비와 전시 집행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데, 현행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상’에 규정된 동원 행정기관은 크게 총괄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30)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해설집(1985), p.11.

3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법률 제1508호, 1963)

먼저, 총괄기관은 국무총리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충무기본계획의 지침 작성과 하달, 치장 및 비축 물자에 관한 동원자원조사 및 통제, 조정 및 감독, 주무부처 집행계획 승인 등의 국가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비상대비 계획의 작성 및 조정, 국가 동원업무를 총괄, 국방동원 자원조사 및 관리,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 조사연구, 기타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 조정하면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한다. 이러한 국가 비상대비 업무의 총괄계획을 충무계획이라 한다.³²⁾

집행기관은 정부 부서별 해당 자원에 대한 조사, 계획수립, 중점관리자원의 지정, 물자의 비축과 훈련 실시 등 소관 비상대비 업무를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 부서의 사무분장 하에 지방 행정계통에 의해 업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부처 장관은 소관자원에 대한 동원집행계획 수립, 자원 조사 및 지정, 개별자원의 동원명령 및 물자비축, 시설보강 등 동원집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시·도지사는 충무 실행계획 작성, 동원지정업체에 임무고지, 자원조사 및 훈련 등 충무계획 시행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³³⁾ 시·군·구청장은 충무 실시계획 작성, 동원영장 교부, 물자 인도·인수 등 물자동원에 소요되는 군부대와 관련 기관에 동원을 집행하고, 읍·면·동장은 기술인력 자원에 대한 동원집행 업무를 실시한다.

나. 동원시행 절차

동원시행절차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충무사태가 선포되어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 총동원령이 발령됨으로써 국가동원이 시작된다.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를 받아 동원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전국에 동원 명령을 하달하며, 이에 따라 해당 주무부처는 소관자원에 대한 동원명령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동원통지서를 발부하며, 시·군·구청장은 동원병력과 물자, 동원업체에 대한 동원통지서를 교부하고, 읍·면·동장은 기술 인력에 대한 동원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집행한다.

이에 따라 관련된 자원이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여 인도·인수가 이루어지면 동원절차가 완성된다. 병력과 물자의 동원소요 당사자인 군은 필요한 소요를 제기하며 동원에

32) 황진환 외, 전게서, p.159.

33) 상계서, p.160.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각 정부 부처가 맡게 된다. 국방부는 병무청 계통으로 이루어지는 병력동원 기능에 관여하며, 인력동원과 물자동원 기능은 행정 계통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축을 이루어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동원 업무의 연계성과 긴밀한 협조 정도가 국가동원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³⁴⁾

과거 미국이 치른 걸프전과 아프카니스탄전 그리고 이라크 전에서의 전쟁양상을 살펴보면 향후 장차전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전쟁에 동원되는 총력전의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쟁소요 경비와 자원은 막대하게 증가될 것이며,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현존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잠재전력을 얼마나 신속히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를 온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가 곧 평시에는 동원 체계를 완비하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전시에는 이를 정상적으로 완벽히 시행하는 동원시행 절차가 잘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 동원관련 법령

우리나라 동원제도의 근거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병역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군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비상대비 자원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병역법 제 44조는 병력동원소집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예비역, ②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③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³⁵⁾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6조에는 「병력동원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비군법 제5조의 「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내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34) 상계서, p.162.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서울 : 법제처, 2016), 제44조~46조.

있으며, 제6조의 「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⁶⁾.

또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규칙에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동원되는 국력의 여러 요소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특히 물자동원 및 재정경제, 통신 등의 동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제2절 국제 분쟁과 평화유지 활동

1. 국제분쟁

가. 국제분쟁의 개념

국제분쟁은 국제간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의견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분쟁이다. 즉, 국제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분쟁을 말한다. 국제분쟁은 다극(多極), 양극, 단극으로 국제시스템이 변용함에 따라 그 형태도 또한 변화한다. 냉전 이전의 다극 시대의 국제분쟁은 주로 국가 간 분쟁으로 과거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국가 간 분쟁은 결국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창설, 전쟁을 위법화한 국제법의 정비 그리고 핵무기를 정점으로 하는 근대무기의 발달 등에 의해 점차 억제되었다.³⁷⁾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한 국가분쟁은 아랍동맹과 이스라엘,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소련·이란·이라크 분쟁, 중동·인도 등 분쟁의 수량이나 분쟁의 규모, 분쟁지역이 비교적 한정되었다. 하지만, 냉전시대의 국제적 분쟁으로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미·소 양극체계의 국제적 시스템에 의한 지역 분쟁이나 내전 등이었다. 이러한 지역분쟁 및 내전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베트남 전쟁은 모두 미·소 양극체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소 양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발생한 분쟁이었다.³⁸⁾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 앙골라·모잠비크, 북아일랜드, 니카라과 등 세계 각지의 내전과 지역분쟁에 미국·소련, 그 대리국이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국제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분쟁과 내전도 미·소의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이라는 초강대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군법』 (서울 : 법제처, 2016), 제5조~6조.

37) 권혁주 외,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취약국가의 개발협력 : 취약국가 모형과 정책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4호(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p.179.

38) 상계서, p.179.

국에 의한 극단시스템 출현으로 본래의 내전이나 지역분쟁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앙골라 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미 이러한 내전은 국제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분쟁은 아닌 것이다.

한편, 국제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분쟁 등장은 미국과 구소련 양국의 냉전시대 이후 오늘날 비 국가 주체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사회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국가뿐 아니라 범죄조직, 종교단체, 민족집단, 부족 등도 분쟁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제4세대 전쟁으로 불리는 테러리즘과 같은 국제분쟁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³⁹⁾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쟁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세계는 매년 2.6회의 국가전쟁과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⁴⁰⁾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세계가 하나 된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과 분쟁은 종식되지 않고, 수많은 사상자와 물질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⁴¹⁾

분쟁의 원인은 민족문제, 식민유산, 정쟁, 영토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3개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미주 순으로 분쟁 및 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정쟁과 식민유산, 민족문제, 아시아 지역은 식민유산, 종교, 분리독립과 관련된 문제, 미주 지역은 정쟁과 이념문제, 중동지역은 민족과 식민유산, 전후처리 문제 등이 주요 분쟁원인이 되고 있다.⁴²⁾

미국과 구소련 냉전시대에는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무력충돌이 국가 간 분쟁(Interstate Conflict)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전쟁과 무력충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종교적 갈등과 인종문제, 정치적 파벌투쟁 등에 따른 국내분쟁(Internal Conflict) 또는 내전(Civil War)과 반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39) 상계서, p.179.

40)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만 4천 5백 여회의 전쟁이 발생하였고, 무려 36억 명이 희생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Nikolai TabUNov "Sources and Cause of Wars," *Soviet Military Review*(May1986), pp.11-12.

41) 대규모 전면전의 경우 수백만에서 수천만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장기 내전이나 국지분쟁의 경우에도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분쟁별 인명피해 현황은 Richard E. Dupuy and Trevor N. Dupuy,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from 3500 BC to the Present*(New York : Harper & Row, 1977) ; Marshall, "Assessing the Societal and Systemic Impact of Warfare," Center for Systemic Peace (2000) 참조.

42) <http://www.kida.re.kr/woww/>(검색일 : 2017. 2. 15).

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라고 한다. 전쟁 및 기타의 군사적 행위에 의한 강력한 해결이 제한된 19세기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헤이그조약 및 국제연맹 규약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서술함과 동시에 그 수단에 대해서 정비하고 특히, 상설 재판제도의 확립에 공헌하였다.

무력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국제연합 헌장에서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국제연합 헌장 2조 3항·6항, 33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캄보디아를 예를 들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 캄보디아 평화 유지활동은 역대 평화 유지활동 중 임무 및 활동이 가장 복잡 사례 중 하나이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 초 국가 운영에 있어 미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개입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1970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론놀(Lon Nol)이 쿠데타로 시아누크(Norodom Sihanouk) 정부를 전복시키면서 캄보디아에 위기 사태가 초래되었다. 론놀에 의해 타도된 시아누크는 망명하여 중국, 북한 등을 전전하였다. 론놀은 미국의 월남전을 지원했으나, 베트남의 공산화와 동시에 1975년 프놈펜(Phnum Penh)을 점령한 크메르루주(Khmer Rouge)에 의해 축출되었다. 크메르루주는 사회재건이라는 미명하에 1백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 양민들을 학살하였다.⁴³⁾ 결국 캄보디아 정부구성 과정에서 단일 권력의 부재는 내전으로 이어졌고, 37만 여명의 국민들이 난민이 되었다.

1978년 12월 베트남은 캄보디아 대량 학살정권 타도의 명분과 캄보디아-베트남갈등을 이유로 침공하여 친베트남 정권을 세웠다.⁴⁴⁾ 이에 1982년 6월 크메르루즈와 시아누크, 손산 등이 모여 프놈펜 친 베트남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3파 연합에 합의하였다. 1980년대 소련의 베트남 지원의 축소와 베트남 정부의 시장경제 도입 추진 등의 변화로 결국, 1989년 9월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자 1990년 9월 캄보디아 정부와 반정부세력 5파가 모여 최고국민평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 SNC) 창설에 합의하였다. 시아누크를 의장으로 한 최고국민평의회는 키우삼판(Khieu Samphan) 지도하

43) 송승중, 『UN 평화 유지활동의 이해』 (서울 : 연경문화사, 2006), p.226.

44) 당시 폴 포트(본명: Saloth Sar)의 크메르루주 정권은 ‘킬링필드(killing field)’라 불리는 대학살을 감행하였고, 폴 포트는 오랜 역사에 걸쳐 캄보디아에 고통을 안겨준 베트남을 증오하여 캄보디아내의 베트남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했다. 이에 베트남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과 베트남 공산당에 동조하는 캄보디아 공산당원들을 죽이거나 축출해냈다.

의 크메르루즈(병력 4만)와 훈센(Hun Sen) 총리의 인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프놈펜 정권(병력 12만), 시아누크의 아들 라나리드(Norodom Ranariddh)의 민족통일전선(병력 12만)과 손산(Son Sann) 전 총리가 이끄는 불교자유민주당(병력 18만)의 4파가 포함되었다. 캄보디아 사태는 1979년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었다.⁴⁵⁾

그러나 상임이사국 간의 이견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이에 유엔 총회는 1979년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과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권고했으며, 어떤 나라도 캄보디아 국민들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국가 내부 문제에 대하여 일체 개입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국제사회와 각종 단체에 캄보디아를 위한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다.⁴⁶⁾

1981년 유엔 총회는 전반적인 캄보디아의 정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주선(Good Office)의 역할을 요청하였다. 유엔 총회는 내전으로 인해 인근 태국으로 도피해 난민 신세가 된 37만여 명의 캄보디아 국민을 위해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을 따라 난민보호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후 몇 년 간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정부관계자와 정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1985년에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그 주요 내용은 캄보디아에서의 외부세력 축출, 영토 보존과 비동맹 상태 유지, 인권증진, 국가 화합증진, 독립 존중 등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국제적 보장 등이 담겨 있었다.

1988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서 캄보디아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련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유엔은 특사를 파견하여 캄보디아 정부 내 4개의 정파와 이 사태와 관련 있는 인접 국가들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의 협상은 속도 있게 탄력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어, 1988년 처음으로 캄보디아 4개의 정파가 모두 모여 자카르타(Jakarta)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1989년 4월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군대를 철수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1989년 7월과 8월에 걸쳐 유엔 사무총장이 개최한 파리회담(Paris Conference on Cambodia)에 4개의 캄보디아 정파와 17개 국가가 참석하였다.

1991년 10월 캄보디아의 정파별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8개 관련국과 정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6개

45) 남창희, “일본의 주(駐)캄보디아 PKO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3집 2호(한국국제정치학회, 1993), pp. 217-218.

46) 상계서, p.218.

국, 일본과 호주 등의 국가가 파리협정(Paris the Agreements on the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ambodia Conflict)에 서명하였다.⁴⁷⁾

유엔 캄보디아 평화 유지활동의 핵심 활동 중 하나였던 선거는 1992년 10월 초부터 투표자 등록을 시작으로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투표가 시작되었다. 총 4426만 여명이 투표하였고, 120석의 의석 가운데 58석, 51석 및 10석을 각각 차지하였다.⁴⁸⁾ 1993년 9월 24일, 120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시아누크가 국왕으로 추대되었고 유엔 캄보디아 평화 유지활동은 1992년 9월부터 그 임무가 종료되었다.

유엔의 캄보디아 평화 유지활동은 내전의 중단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선거를 통해 캄보디아의 정통성 있는 정부 수립에 기여하며 임무가 종료되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활동하는 동안 반군의 무력행사, 캄보디아 정부와 소통의 제한 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캄보디아의 사례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은 캄보디아 난민들의 본토 귀환을 가능하게 했으며,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참신하고 효과적인 대중홍보 전략으로 구사하여 비밀·자유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계몽하여 90%의 투표율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캄보디아 평화유지 활동은 대규모의 평화 유지활동 임무로 유엔의 각 부서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다. 국제분쟁의 군사적 개입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문제에 대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형태의 하나인 군사적 수단의 무력사용은 국제체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다.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근대국가 이전·이후의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다만 군사적인 개입을 위한 명분이나 대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는 국제분쟁 당시 시대적 여건에 부합한 국제적 체제하 해당 국가가 생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

47) 이 협정은 첫째, 전투행위 중단, 둘째, 각 파벌 병력 75%의 무기회수 및 동원해제, 셋째, 이와 함께 1992년 2월28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745호에 의거하여 UN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가 창설되었다. UN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에 주어진 임무는, ① 인권보호 및 증진, ② 자유 및 공정 선거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시행, ③ 휴전협정 및 군대 감축 감독, ④ 법과 질서 준수 이행, ⑤ 캄보디아 난민의 본국소환 및 재정착, ⑥ 과도기 동안의 캄보디아의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의 여섯 가지였다.

48) UN, *The Blue Helmet : A Review of the Nations Peace-keeping* (New York :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90), pp.469-470.

가에 대한 입장과 국내·외의 여론, 국가 지도자 및 관료 조직의 특성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여 해당국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군사개입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근대국가 체제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왕조국가 체제로서 국왕인 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체제 구조는 강대국에 의한 영토 확장과 그 지배력의 강화를 위한 야욕의 발생, 또는 한 국가의 국력이 힘이 왕성해졌을 때 주변을 정복하거나 강대국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주변국을 통제하는 경우 연합구조가 재편되면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은 국가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사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다른 요소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이 수단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근대 이후 현재보다 국가 간 교류와 협력, 통제의 기능이 비교적 미약했던 왕조국가 특성상 국력을 최우선 하였고, 이를 통해 국력을 과시함과 국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군사력은 국가적 생존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분쟁을 위한 필수 수단이었던 것이다.⁴⁹⁾

이러한 국제적 상황 하에서도 분쟁의 개입을 위한 결정이 전적으로 왕권에 의해 결정된 독단적인 결과에서 초래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왕권 중심의 국가지도체제에서도 왕권의 견제와 독단행동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었고,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고 민본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민심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각 구성요소들 또한 궁극적으로 왕권중심의 정치적 체제하에서는 국왕이라는 개인적 특성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정치체제가 쇠락하고, 국민중심의 민주적 근대국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현대의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국가들의 활동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조직과 체제, 그리고 국제사회라는 큰 틀 속에서 행위자로서 활동하게 되었고, 국가 행위자의 일반적인 흐름과 그 원칙은 국제적, 정치적 시각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과정을 통해 대립과 갈등은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대두된 것이다.

49) 근대국가란 영국·프랑스의 시민혁명 이후 19세기 유럽에 등장한 민족적 통일국가이다. 즉, 중세 말엽 재구성 신흥시민계급의 경제적 발전이 원동력이 되어 민족적 통일과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시민계급이 정치적 주체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민주적 통치체제를 갖추게 된 국가형태를 말한다. 근대국가의 특징은 민족적 통일과 중앙집권을 토대로 하여 개인의 자유·평등의 관념이 승인되고 입헌주의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행정학용어표준연구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서울 : 새정미디어, 2010), pp.124-134.

군사적 개입의 문제를 유발시킨 국제사회의 각종 분쟁에 대해 미·소 탈냉전 시기를 즈음하여 살펴보면, 먼저 미·소 탈냉전 시기 이전의 근대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세계 제2차 대전이 종료되는 시기인 1945년까지는 미국·영국·프랑스, 독일·일본 등 세계최고 강대국 간의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제분쟁이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강대국 간의 군사적 대립이 강대국 간 발생한 국제전(International War)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되면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 강국의 이념과 체제를 중심으로 이분되어 대치하였으며 이 강대국들과 동맹 또는 지원국가들 간에 발생하는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분쟁이었다. 그리고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각 대륙에서는 지역별로 과거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한 신생국들이 다수 탄생되었으며 이러한 신생국들은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였고 심할 경우 분쟁이 확대되어 내전(Civil War)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념이나 체제의 문제와 결부되어 강대국 간의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국가 총력전 방식의 무력충돌인 전쟁유형과는 다르게 지역적 소규모, 저강도 분쟁의 방식으로 국제분쟁의 유형이 다변화 되었다.⁵⁰⁾

따라서 이런 각종 국제분쟁의 유형에 개입하는 방식들도 국가적 총력전 형태에서 탈피하여 분쟁의 특성에 부합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을 띄게 되었으며, 국가가 직접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와 유엔 등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방법 등 개입의 범위도 확대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국제적 분쟁에 대한 개입은 미국, 소련이라는 거대 강국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 동맹국이나 우방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강대국과 우방들은 강대국과의 긴밀한 정치적 밀접성, 경제적 협력 등을 형성한 경우도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미국과의 냉전구도가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분쟁의 양상과 군사개입의 대상과 범주도 새롭게 변화 되었다. 이전의 미국과 소련 등 특정 강대국이 지향하는 국가적 이념과 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국에 대한 안보나 이익 등을 추구하면서 그들과 동맹의 형성 등을 통한 우호세력의 형성과 확대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곧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

50) 전쟁은 그 위험도와 발생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저강도 분쟁, 중강도 분쟁 그리고 고강도 분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은 전쟁의 위험도가 가장 작은 대신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쟁이며 혁명전쟁, 비정규전, 테러 등이 포함된다. 해군대학, 『군사전략개론』 (해군대학, 2009), p.89.

고 이전과는 달리 고강도의 분쟁이 양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인 개입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군사적인 개입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과의 동맹관계나 우호적 성향을 따르는 국가들의 자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으로 분쟁에 개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 국제적 군사력의 개입 대상과 그 범위는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 이전보다 소규모의 양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분쟁을 차단하는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다.

그러나 동·서의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일부 강대국의 힘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같은 성향의 국가들과 독립신생국의 생성과정에서 각자 자국의 이익추구와 민족 중심의 정체성과 국가중심의 자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충돌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확산되었다.

이를 연구한 피어론(James D. Fearon)과 레이틴(David L. Laitin)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21세기가 시작되기 이전 까지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은 25회,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내전은 127회나 되었으며 도합 1,620만 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⁵¹⁾

이것은 곧 미·소 냉전의 와해에 따라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하게 하는 정량적인 분석으로 국제적 분쟁의 해결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항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적 분쟁에 대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국제정치라는 외형적 틀에서 구상할 수 있으며, 이런 구상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적 질서와 권력의 본질을 간과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정치와 세계 각국 간의 군사적 개입에 있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런 상관관계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을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관련된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에 분쟁의 확대와 군사적 개입의 대상과 범주가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치적 측면에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소 양극 위주의 탈냉전 이후 안보에 대한 개념이 새로이 정립되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 강국의 이념과 정치적 체제를 중심으로 대립하

51) James D. Fearson and David L. Laitin,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2003), p.75.

는 상태에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균형적인 관계형성이 국가적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체제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었다.

미국과 구소련의 양대 강국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의 통제 영역에서 세력권내 강제력에 의한 편입 등이 이루어져 자국의 국가이익을 양대 강국의 힘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의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의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 현실에서 자국의 국력과 국가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 국제 체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소 냉전시기에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되어 그 이념과 정치적 체제의 대결 성격의 고강도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미국과 소련중심의 국제체제에서 국가적 전쟁과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려 했다. 미국과 소련의 탈냉전 이후에는 이러한 구도가 붕괴되면서 민족주의나 지역적 이기주의를 원인으로 한 이념, 종교적 분쟁, 국지적 영토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과거보다 국제적 분쟁이 두드러졌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교류 협력의 확대로 상호 의존성 확대와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국가의 안보적 불안이 인접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무력충돌 외에도 인종문제, 종교문제, 환경 및 경제문제 등이 세계의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범국제적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안보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질서의 구축과 분쟁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의 개입수단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에 강대국 주도하 일방적인 군사적 개입과는 상이하게 국제문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군사적 개입의 형태도 획일적인 전투적 방식이 아닌 인도적 지원을 통한 개입 등 비전투 방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한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 인종탄압 등으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엔이 적극 개입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보호책임 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⁵²⁾

52) 보호책임원칙은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하거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안보리 결의 1973호는 UN의 국민보호책임(R2P :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무아마르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 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처음 적용한 이래 실효성을 다져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2460&cid=43667&categoryId=4366>(최종검색일, 2017년 3월 22일)

둘째,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에 강대국 국가적 권위와 위상이 군사력이나 다른 우월한 국력의 요소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모습이 탈냉전 이후에 나타나면서 국제적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도 많은 국가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하고 결정과 참여를 하는 다국적군의 모습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⁵³⁾

다국적군 형태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제도적 범위에 구성되어 국제평화 유지활동의 명분으로 참여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 기구가 주도해서 이해 당사국이나 필요한 국가의 요청과 합의로 이뤄지는 군사적 개입의 형태를 말한다. 순수한 전통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을 통한 군사적 개입이나 다국적군 활동을 통한 군사적 개입은 모두가 국제체제 속에서 양산되는 현안을 다루는 방법으로 국제정치의 다양한 역학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여러 국가들 간의 직접적인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셋째, 뚜렷한 목표 없이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자신의 목적 달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테러는 탈냉전 이후 국제적 분쟁이 다양화된 형태의 하나로 분쟁의 대상과 범주가 확대되었다. 강대국과 싸우며 대항해야 하는 힘이 약한 세력과 집단에 의한 비대칭적인 폭력 수단인 테러는 그 잔인성과 폭력의 강도 증가는 피해대상으로 하여금 전쟁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강국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펜타곤의 9·11 테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테러형태로 종교적 민족적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안보에 대해서 최고의 대비태세를 자랑하던 미국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준 엄청난 국제적 테러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즉각적인 테러와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 질서의 재편에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으며 군사적 개입 대상 및 범주가 새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을 볼 때 국제적 문제에 대응하는 군사적인 개입은 국제체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결정적인 변수가 각 국가의 참여에 결정적인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내·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군사적 개입 형태의 국제사회 참여에 우리도 동참할 것일 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53) 다국적군이란 다국적 평화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 지원부대, 민사부대 및 기타 단위부대를 말한다.

2. 평화유지활동

가. 평화유지 활동의 개념

평화유지(Peace Keeping)란 용어는 유엔 헌장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평화유지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찾을 수 없고 여러 다양한 의미가 혼용되어 있다. 이는 평화 유지활동의 법적 근거의 부재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평화유지의 개념이 수시로 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까지 국제평화연구소(The International Peace Academy) 및 갈리(Boutros Ghali) 전 유엔사무총장이 정의한 평화유지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다.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질서를 복원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조직되고 감독되는 다국적군, 경찰, 민간인을 사용한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분쟁당사국의 적대행위 예방(Prevention), 봉쇄(Containment), 조율(Modulation), 종결(Termination)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⁵⁴⁾ 갈리(Boutros Ghali)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유엔이 평화유지군, 경찰, 민간요원을 분쟁지역에 전개시켜 실시하는 활동으로 분쟁예방 및 평화조성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한바 있다.⁵⁵⁾

또한, 유엔에서 발간된 블루 헬멧(The Blue Helmets)에서는 “유엔이 무력의 사용 없이 군사요원을 포함하여 분쟁지역의 평화의 유지 또는 회복을 돕기 위하여 펼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⁶⁾

냉전시대의 평화유지 활동은 단순하게 정전협정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주요 임무 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에 접어들면서 평화유지활동은 진화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분쟁이 국가 간의 분쟁에서 국가 내 무력집단간의 분쟁으로 바뀌면서 분쟁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재건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정파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주는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⁵⁷⁾

오늘날 탈냉전 이후에는 유엔이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국내 분쟁에까지

54) International Peace Academy, *Peacekeepers Handbook*(New York : Pergamon, 1984), p.22.

55) 갈리 전 UN사무총장은 평화 유지활동이 평화조성, 예방외교, 평화재건 선상에서 구상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향후의 PKO는 기존의 전통적 PKO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 즉, 선거지원, 인도주의적 원조, 난민 귀환, 지뢰제거, 예방진개, 무장해제 등의 다양한 역할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확장된 PKO가 실시된 예로서 나미비아(UNTAG), 소말리아(UNOSOM), 캄보디아(UNTAC), 엘살바도르(ONUSAL) 등을 들 수 있다. Mats R. Berdal, “Whither UN Peacekeeping?,” *Adelphi Paper* 281(London : Brassey's, 1993), pp.12-25.

56) United Nations, *The Blue Helmet*(New York: UN, 1992), p.34.

57) 이세영, 전계서, p.116.

개입하고 단순한 목적의 개입이 아닌 평화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평화유지활동의 개념도 확장되어 왔다고 한다. 유엔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평화유지라는 용어는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니 그 정의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 평화학회는 평화유지를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제3자가 국제적으로 조직 구성된 다(多)국적의 군인, 경찰 및 민간인을 운용하여 분쟁당사 집단의 적대 행위를 예방, 봉쇄, 완화, 종결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⁸⁾

블루 헬멧(The Blue Helmet)에서는 “유엔이 무력의 사용없이 군사요원을 포함하여 분쟁지역의 유지 또는 회복을 돕기 위하여 펼치는 활동”이라 정의 하고 있다.⁵⁹⁾

국방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란 국제적 또는 국지적 분쟁의 해결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엔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지역 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가 주도하여 설치된 다국적 평화유지군 또는 임무단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총칭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5개국에 4만여 명을 국제 평화유지 활동과 평화활동, 국방분야 군사교류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갈리(Boutros Ghali) 전 유엔 사무총장은 1992년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평화를 위한 아젠다」라는 보고서에서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유엔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엔헌장의 규정 범위 내에서 예방외교, 평화조성, 평화유지 등을 위한 유엔의 능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⁶⁰⁾

이를 종합해 볼 때, 평화유지 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유엔이 공평하게 직접 분쟁지역에 개입함으로써 국가 간이나 국가 내부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유엔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유엔의 제반활동’에는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재건, 평화강제, 예방외교 등의 세부 활동들이 있고, 예방외교와 평화조성은 분쟁예방 전략으로 평화유지와 평화강제는 분쟁타결 전략으로, 평화재건은 분쟁해결 전략으로 분류한다.⁶¹⁾

(1)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예방외교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의 분쟁이 무

58) 허남성 외,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방안』(국회국방위원회, 2002), p.71.

59) 안충준, 전개서, p.38.

60) 김열수, “한국군의 평화활동 : 회고와 전망”, 『해외파병사연구총서』, 제1집(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463.

61) 김동성, “UN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참여와 국가이익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 p.54.

력이나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⁶²⁾

분쟁예방 개념의 사용 역사는 오래 되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함마르셀드(D. Hammarskjold)는 1950년대 후반부터 잠재적 위험지역에 개인대표를 파견하여 ‘유엔의 존재’를 그 지역에 상주시켜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갈리(Boutros Ghali)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 외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평화적으로 긴장을 완화 시키는 것이다, 만일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신속히 봉쇄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⁶³⁾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수단이 필요하며, 조기 경고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분쟁에 대한 사전경고를 발할 수 있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비무장지대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위기 지역에서 유엔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⁶⁴⁾

국제사회는 분쟁이 발생하여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분쟁을 방치했다가 막대한 자금·물자·인원을 투입하여 분쟁을 종결하려는 스스로의 모순을 저질러 왔고, 결국 그 비용은 조기 개입한 경우에 비해서 수백 배나 늘어났던 것이다. 예방외교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그 중 한 가지 방법이 예방 전개이다.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해당 정부와 관련 당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분쟁 예상지역에 미리 전개할 수 있는데 마케도니아 유엔평화유지군(UN PREDEP)이 구(舊) 유고슬라비아의 한 공화국이었던 나라에 사전 전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⁶⁵⁾

(2) 평화조성(Peace Making)

평화조성은 “유엔 헌장 제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적대적인 정치 집단들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평화조성은 분쟁 중에 있는 정치 집단끼리 단절된 상호활동을 회복하는 시도이며 그 결과물은 통상 정전 동의 또는 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나타난다. 이 활동은 평화유지군이 전개 전부터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하였다.⁶⁶⁾

62) 허남성 외, 전계서, p.73.

63) 이세영, 전계서, p.8.

64) 오재복, “동티모르 UN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34.

65) 허남성 외, 전계서, p.75.

66) 이세영, 전계서, p.9.

유엔 평화유지군이 전개되기 이전에 국제사회는 분쟁의 당사자들 간에 정전 또는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활동해야 하며 이들로 하여금 협정 준수를 위한 공정한 감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이게 협상을 해야 한다. 또는 평화유지군이 전개된 이후에는 협정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견되게 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분쟁의 평화적인 종결을 위해 분쟁 당사자들을 지속적으로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 모든 활동이 평화조성 활동이다.

(3) 평화유지(Peace Keeping)

평화유지란 ‘분쟁과 관련된 모든 정치집단들과 정부의 동의하에 통상 유엔 군사요원과 경찰 및 민간요원들이 분쟁 현장에 배치되어, 분쟁의 확대를 예방하고 평화조성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분쟁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 한다’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인 국제적 분쟁에 유엔이 개입하여 분쟁이 인접지역으로 확대 또는 분쟁지역 내에서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의미이다.⁶⁷⁾

‘평화조성 가능성을 확대 한다’는 것은 상호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분쟁 당사자에 대해서 정전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희망과 정전협정이 이미 체결된 분쟁지역에서 정전협정을 지속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조성은 군인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인 경찰병력과 선거감시 요원, 인도주의적 지원활동 요원 등이 동시에 활동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⁶⁸⁾

(4)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평화강제란 ‘평화의 조성과 평화 유지를 위한 활동이 분쟁을 관리함에 있어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을 때 실시하는, 강제적 수단 및 방법’을 통해 평화를 얻는 것이다. 평화강제의 수단은 대부분 유엔의 헌장 제7장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이 평화유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특정 정치적 집단간 합의한 정전을 위반하거나, 무시 또는 파괴하면서 분쟁에 돌아가는 경우 유엔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⁶⁹⁾

첫째, 유엔의 요원 안전을 위해 평화유지활동 임무 수행단을 철수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유엔이 평화조성 방법인 중재와 주선 등을 사용하여 정전협정을 파기한 특정 정

67) 허남성, 전계서, p.75.

68) 이세영, 전계서, p.9.

69) 김열수, 전계서, p.78.

부나 정치집단이 정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평화유지를 저해하는 특정 집단을 ‘평화의 파괴 또는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응징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바로 평화강제 활동이다.⁷⁰⁾

평화유지활동의 한 유형인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와 집단적 안보 성격의 강제(enforcement)활동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유엔군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되 분쟁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적대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즉시 강제 활동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후자는 개입 초기부터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와 평화에 대한 위협’ 당사자를 규정한 뒤 유엔이 집단 안보체제를 수행하면서 분쟁의 피해자를 유엔의 동맹으로 삼는 것이다.

동티모르의 다국적군(INTERFET), 소말리아의 다국적군(UNITAF),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다국적군(RRF)등은 평화강제 활동이며, 한국전쟁이나 걸프전이 유엔의 강제 활동이다. 또한, 한국전쟁 또는 걸프전이 ‘평화에 대한 위협과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군사력을 운용하면서 전쟁차원의 강제 활동을 한다면, 소말리아의 다국적군, 동티모르의 다국적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다국적군 등은 반드시 전쟁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이는 처음부터 평화강제를 수행할 수 있고, 평화유지 임무를 적극 수행하다가 평화강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엔이 통제하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임무수행 요원들은 부여된 임무만 수행하고, 특정국가가 중심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 유엔의 책임 하에 평화강제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¹⁾

(5) 평화재건(Peace Building)

평화재건이란 ‘평화유지 활동과 평화조성활동이 성공적으로 그 활동을 수행하여 분쟁지역에 평화를 공고히 하고, 분쟁지역에 국민과 정부 간에 신뢰와 번영을 정착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이를 지원하는 포괄적 노력’이라고 하며, 이 노력 속에는 분쟁 당사국의 무기회수 및 파괴, 무장해제, 난민 복귀, 선거 감시, 정부기관의 재편 및 강화, 인도주의 구호활동, 인권보호 활동들이 포함되며, 분쟁 당사국에 대한 유엔의 경제 및 사회적, 정치적 지원이 평화재건의 핵심요소이다.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평화유지와 평화조성은 나란히 혹은 순서를 두고 이루어지며 상호 조정과 보완되면서 시행된다. 이런 활동이 평화조성과 유지의 그 목표를

70) 오재복, 전계서, p.37.

71) 김열수, 전계서, p.79.

달성 할 경우 분쟁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협정 또는 정전협정을 통해 유지된 적극적 평화가 소극적 평화개념을 퇴보시킬 수 있다.

분쟁 후에 평화재건은 분쟁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고 이는 곧 예방외교가 분쟁의 위기를 막는 것이며, 평화조성은 분쟁원인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긴장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목표를 둔 조치이다.⁷²⁾

유엔의 평화재건활동은 국제 평화유지군 뿐만 아니라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 개발계획(UNDP), 어린이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등 유엔의 특별 및 보조기구와 지역기구와 민간단체(NGO)들에 의해서 유엔의 평화재건 활동이 수행 되어지기도 한다.

평화재건활동은 분쟁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평화유지 활동단이전 개되기 이전에도 평화유지 활동의 범주 속에서 동시에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평화유지군이 철수한 후에도 유엔의 특별 및 보조기구 등에 의한 활동은 계속된다.⁷³⁾

나. 평화유지 활동의 등장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유지’를 통하여 유엔 헌장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평화위협의 제거와 방지를 위한 집단조치’와 ‘평화적 수단과 국제법에 따른 분쟁해결’로 간주되고 있다.⁷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의 위협에 동원될 수 있는 집단적 조치, 즉 유엔의 안전보장 조치들은 헌장 제6장과 제7장에 구체적으로 잘 명시 되어 있다. 헌장 제6장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에는 심사, 협상,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중재재판, 지역협정, 지역기관의 이용 또는 분쟁 당사자가 선택하는 또 다른 평화적 수단의 활동 등이 있다.

분쟁이 평화적으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유엔은 평화적 수단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와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어떻게 조치 할 것인가 결정한다. 유엔 헌장 제7장은 여러 수단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군사적 강제조치와 비군사적 강제조치로 구분한다. 군사적 수단은 군사력을 활용한 시위와 봉쇄 및 기타 물리적인 행동이며, 비군사적 수단은 경제제재와 통신, 외교관계의 단절과 의사소통의 중단 등이다.⁷⁵⁾

72) 허남성 외, 전게서, p.80.

73) 상게서, p.81.

74) 임태호, “한국군 평화유지 활동의 역할과 방향”, 호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p.27.

75) 상게서, p.15.

그러나 이런 수단이 유엔 현장 정신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적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으며, 이는 유엔 현장을 통한 분쟁 해결능력과 수단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으로 유엔 현장 제 6장의 평화적 해결방안은 실질적인 구속력이 결핍되어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었고, 현장 제 7장의 평화위협에 대한 강제조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기력하게 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⁷⁶⁾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유엔 현장 제 6장 보다는 강하고 제 7장 보다는 약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평화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확보하고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대안과 방법의 하나로 유엔 주도하 신실한 제3의 방법이 평화유지 활동의 등장이라고 하였다.

다. 평화유지 활동의 유형

평화 유지활동은 유엔의 승인 하에 국경·자원, 인종·종교 등의 문제로 분쟁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지역에 파견되어 중립적 입장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정전감시 등의 활동을 말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선택한 결의안에 따라서 유엔이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동맹국 주도의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유엔의 위임을 받은 EU, NATO 등 특정 기구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요 임무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인 등을 분쟁지역에 파견하여 분쟁 사태의 진정이나 재발 방지, 정전감시, 국가재건활동, 평화로운 선거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s)과 다국적군 평화활동(Multi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s)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모두 파견국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 요소이며, 파견을 받는 접수국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 평화유지 활동은 안보리의 결정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파병 경비와 군수지원 등의 비용을 유엔이 모두 부담하고, 지휘체계도 파병국 중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단일부대 지휘관으로 통제되며, 청색 베레모를 착용하고 복장도 통일하여 착용한다.

반면,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만으로 파병이 가능하고, 파병에 투입되는 비용은 파견국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지휘관은 파병에 참여한 국가 간의

76) 상계서, p.16.

협의로 결정되며, 참가한 해당 국가의 복장을 그대로 착용한다.

평화유지활동의 조직형태는 유엔정전감시단(UNTSO :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과 평화유지군(UN Peace-Keeping Force)으로 나눌 수 있다. 유엔정전감시단(UNTSO)은 국제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정전과 휴전을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 유엔 안보리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비무장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유엔평화유지군(UNPKF)은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정착, 국가와 지역재건 등을 위해 각국 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부대로 무력행사는 '자위권'의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된다.

한국은 걸프전 당시 국회 동의를 거쳐 1991년 1월부터 1992년 3월까지 국군 의료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병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 9월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된 한국은 유엔의 요청에 의해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 상륙수부대의 파병을 시작으로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했고, 2016년 11월 말 기준 13개국에 1,100여 명을 파병하여 분쟁지역 재건과 의료지원, 치안유지 및 분쟁국가의 평화정착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 평화유지활동은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유엔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평화 유지활동의 대표적인 유형과 범주는 5가지의 유형으로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과 평화조성(Peacemaking), 평화유지(Peacekeeping)와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그리고 평화구축(Peacebuild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유형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⁷⁾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은 대외적으로나 혹은 국가 내부적으로 발생한 긴장과 갈등이 폭력적인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외교적인 수단까지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분쟁예방은 분쟁의 정보수집, 조기경보체계, 분쟁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시된다. 이러한 분쟁예방 활동은 유엔 사무총장의 신뢰구축 수단의 하나인 예방외교 등이 포함된다. 즉, 단순한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서 대립과 분쟁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무력 분쟁(armed conflict)을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현행 또는 잠재적 갈등이 폭력을 병행한 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은 사실 확인, 사찰 및 감독, 상담 등 외교적인 초기단계의 조치로부터 군사력을 사전에 전개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7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New York: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 UN Department of Field Support, 2008), pp.17-18.

군사력의 예방적 전개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한 군대를 분쟁지역에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 1995년 마케도니아의 독립과정에서 유고와 그리스의 분쟁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마케도니아 국경지역에 파병된 유엔 마케도니아 예방전개부대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평화조성(PeaceMaking)은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대적 단체를 대상으로 협상의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목적을 두고 조치하는 외교적 행위가 포함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직접적인 발의 또는 안전보장 이사회와 유엔총회의 요청을 통해 평화조성 활동으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로 활용한다. 평화 협상자는 국가들의 연합단체, 지역기구, 정부, 특사, 혹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의 유명 인사에 의해 수행된다.

평화유지(PeaceKeeping)는 전투가 종결된 나라나 지역에서 평화 협상자들이 이룩해 놓은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의 협정과 그 실천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는 평화의 영구적인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정전이행을 감시하고 전쟁 국가 당사자 간에 군사력을 분할시켜주는 주요한 모델로부터 안정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일하는 종합적 모델로 발전되어 왔다. 구체적인 활동은 완충지대 통제, 휴전 및 정전감시, 폭발물 제거, 부대해산 및 무장해제 등이다. 통상 유엔 헌장 제 6조에 기초하여 분쟁 당사국의 동의하에 평화유지군이 전개되며, 그동안 유엔 및 지역안보기구가 수행해 온 대부분의 활동이 평화유지 활동에 해당된다. 이러한 통상적인 활동을 좁은 의미의 평화유지활동으로 불려지고 있다.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 하에 군사력 등의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강제적 수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평화파괴, 평화위협, 침략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평화와 안보회복을 위해 승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황에 맞게 지역기구 및 기관들을 운용하기도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유엔 헌장 제7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활동인 바, 한국전쟁과 걸프전시 사막의 방패작전 및 사막의 폭풍작전, 그리고 1960년 이후 콩고 내전종식을 위해 전개되었던 유엔 콩고 임무단(ONUC), 소말리아 내전종식을 위한 소말리아 임무단 등이 유엔으로부터 강제집행권을 부여받아 활동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최소한의 무력사용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평화강제의 성격을 띤 유엔의 전통적 집단안보와는 일부 구분이 된다.⁷⁸⁾

78) http://www.mnd.go.kr/sub_home/html/sub_home9_menu1-1.html(검색일 : 2017. 1.15)

평화구축(PeaceBuilding)은 분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쟁의 발생과 재발의 위험을 축소시키고 모든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분쟁의 재발이나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평화와 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수단들도 포함한다. 또한 평화에 필요한 여건을 항구적으로 조성하는 복잡하고 오랜 기간 소요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분쟁의 뿌리 깊은 구조적 원인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평화구축의 활동은 사회와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발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며, 국가의 역량을 더욱 더 강화하여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전과 분쟁상태에서 시행되는 국제 평화유지활동 유형인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강제, 평화구축 등의 활동은 일부 중첩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정적인 평화정착과 여건 조성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인 평화구축은 평화유지 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화강제와 평화조성의 영역과 상호 중첩된다. 평화구축 활동은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조성 활동을 일정부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둘째, 통상적으로 좁은 의미의 평화유지 활동으로 알려져 있는 평화유지 유형은 정전상태에서의 핵심적인 활동 유형이다. 즉, 전투가 끝난 곳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조성 당사자들이 이룩한 평화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평화구축 유형은 그동안 유엔 및 일부 지역기구가 수행해 온 대부분의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전상태가 지속되면 평화유지 유형은 평화구축의 활동으로 대체되고, 평화유지 활동을 포함하여 평화구축 활동이 전개되며, 이는 평화유지 활동의 중·장기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분쟁지역에서 분쟁이 완화되거나 또는 종식되어 정전상태로 이행되는 것은 유엔 주도하에 이루어지거나 지역기구의 정치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유형은 정치적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 의해서 분쟁예방 단계를 거쳐 평화조성과 평화강제의 단계를 거치고, 평화 유지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됨을 알 수 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원칙적으로 정전 혹은 평화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되지만, 평화조성 노력과 역할이 요구되며 이러한 것은 평화구축활동과 연계된다. 유엔 국제 평화유지 활동은 안보리의 승인 하에, 분쟁 당사국과 파병병력 자신의 위임명령을 보호하기 위해 전술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강력한(robust)’ 평화강제와 평화유지 사이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가지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강력한 평화강제는 국제적, 전략적 수준에서 무력사

용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평화유지는 해당국의 동의나 분쟁국의 당사자 동 의가 있을 때 자위권적 수준의 무력사용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 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⁷⁹⁾

강력한 평화유지 활동을 포함한 PKO 활동에서 무조건 무력사용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임무수행 요원들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위권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평화과정을 방해하는 세력의 억제를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최초에 이와 같은 무력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나, 평화과정을 교란하거나 저해하는 개인과 집단에게 방해하는 활동을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다. 이러한 무력사용은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국지적이기 때문에 전술적 무력사용이라 고 칭하는 것이다.

평화강제 활동은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당사자들이 유엔의 제지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작전활동을 원활하게 실 시할 목적으로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여 전투력을 전개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다.

현재까지 유엔에 준용하는 평화유지활동의 임무별 유형별 분류는 감시단, 평화유지 군(PKF : Peace Keeping Force), 혼성 평화유지활동의 3가지 형태이다. 초기에는 평화 유지활동이 주로 감시단과 평화유지군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평화유지활동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임무가 복잡해지자 단일 성격보다는 복합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야 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최근의 평화유지활동 유형은 민· 군 등 다양한 요소가 참여하여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혼성 평화유지활동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⁸⁰⁾

감시단(Observer Mission)은 대부분 비무장한 장교로 구성되며 그 중요한 임무는 정 전협정의 이행상태를 감독하고 분쟁 당사자들 간의 또 다른 분쟁을 중재하는 것으로 통상 감시소 운용을 통해 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각각의 다른 국가 장교 수명이 1개조 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감시단장(CMO : Chief Military Observer)에 의해서 감시단 요원의 지휘·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나 평화유지군 이 동일지역에서 감시활동 임무를 수행할 경우는 감시단의 감시소와 별도로 각각의 평 화유지군이 각기 따로 감시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⁸¹⁾

만약 해당지역에 평화유지군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담당할 감시단은

79) 국방대학교 PKO센터, 『PKO 바로알기』, pp.31-32.

80) 박성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p.24.

81) 김동성, 전계서, p.32.

평화유지군의 운용통제 하에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시단의 임무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여되며, 필요시 감시단에는 감시활동 이외에 중요지역 차량순찰, 적대세력간의 국지적 교섭, 특정조사 등의 부가적 임무가 부여될 경우도 있다.⁸²⁾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Force)은 유엔 회원국에 의해 편성되며 유엔의 지휘하에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하는 무장한 부대이다. 무장의 정도는 본래 유엔 사무총장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해 주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무기로 한정하여 경무장화되 자위(自衛)행위를 제외하고 일체 무력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평화유지군은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전투부대와 전투근무지원부대로 구성된다.

냉전시대의 평화유지활동은 군사적 성격의 임무가 강했으나 냉전이후에는 민간부문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부문 평화유지활동이 증시되는 것은 유엔이 개입하는 분쟁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냉전종식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은 국가 간의 분쟁보다 내전상황의 분쟁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내전을 겪는 국가는 무력충돌 외에 경제적 마비, 빈곤, 대규모 인권침해, 국가체제의 붕괴 등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유엔이 개입하면 유엔은 정전감시 또는 적대적으로 쌍방을 분리하는 군사적 활동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위한 선거를 관장하고 감독, 무장해제, 난민송환, 행정기구 설립지원, 기간시설 복구,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등 국가를 재건하는 임무 수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⁸³⁾

이런 임무의 성공적 수행은 민간 전문요원의 역할도 핵심적이기 때문에 평화유지군과 더불어 민간 전문요원이 참여하는 혼성 평화유지활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유엔 캄보디아 임시 행정기구(UNTAC)로, 이 기구는 경찰·민간기구와 군이 참여하여 정전감시, 무장해제, 민간행정업무, 인권상황감시, 난민송환, 기간시설 복구, 선거지원 등 종합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1993년 8월 종료된 바 있다.⁸⁴⁾

이 외에도 유엔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나미비아 과도정부지원단, 앙골라 검증단, 엘살바도르 감시단, 서부사하라 선거지원단, 모잠비크 활동단 등 최근의 평화유지 활동이 모두 혼성 평화유지 활동에 속한다.⁸⁵⁾

82) 임태호, 전게서, p.27.

83) 상게서, p.28.

84) 이세영, 전게서, p.13.

85) 조춘호, “한국군의 UN 상비체제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p.42.

제3절 해외파병 개념과 한국의 파병활동

1. 해외파병 개념과 전략적 가치

가. 파병의 개념

국군의 해외파병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부합한다. 헌법 제5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된 것처럼 ‘국제평화유지’는 헌법적 가치에 속한다. 우리 군이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가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 평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치다. 더구나 헌법 제60조 제2항⁸⁶⁾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파병하기 때문에 적법한 가치 창조라고 볼 수 있다. 해외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단위 파견과 참모요원 등 개인파견을 총괄하는 개념이다.⁸⁷⁾

해외파병은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유엔 PKO는 사실상 국제평화활동(IPO)의 범주에 속하는 하위 개념이지만 일반적인 인지도는 높다. 그 임무나 규모에 있어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15년 5월 현재까지 유엔이 주도한 PKO가 71개에 이를 정도로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⁸⁸⁾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상륙수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유엔 PKO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유엔의 결의에 근거한 파병 요청에 부응하여 수많은 분쟁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양상의 다원화로 인해 유엔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기구나 특정국가가 선도하는 다국적군 평화활동(MNFPO)이 활성화되는 단계로 진화했다. 해외파병의 개념이 유엔 PKO를 넘어서 다원화되고 진화되고 있으며 사실상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의 개념이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반영된 것이다.

유엔 PKO와 MNFPO를 포괄하는 개념이 국제평화활동(IPO)이다. 최근 국제 테러리즘,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 공해상 해적행위, 빈번한 내전 및 난민 발생, 반인도적 범죄 증가 등 초국가적 비전통 한보위협이 증대로 인해 유엔 PKO 수준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MNFPO와 협력적 안보 차원의 파병에 대한 당위성이 고조되고 있다. <표 2-2>

86) 제60조 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87) 김철우 외, “해외파병의 전략적 접근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5), p.27.

88) 2015년 5월 29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은 ‘UNPKO의 날’을 맞이하여 블루 헬멧(blue helmet)으로 지칭되는 평화유지군의 숭고한 기여를 강조하며 그 가치에 부응한 효과적 추진이 전개될 것임을 다짐했다.

에 제시한 해외파병 관련 용어 정의를 보면 에서 유엔 PKO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정립하고 유엔 PKF를 직접 지휘하며, 지휘하는 기능은 유엔의 평화유지국(DPKO)에서 관장한다.

<표 2-2> 해외파병 관련 용어의 정의

구 분	용어의 정의
해 외 파 병	국제연합, 지역안보기구, 특정국가의 요청에 따라 국제 평화유지활동(UN PKO) 및 다국적 평화활동에 참여하는 국군부대 또는 군 요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
국제평화유지활동	UN, 국제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로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
유 엔 PKO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유엔의 재정 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질서유지, 선거지원, 재건복구 및 개발지원 등의 활동.
UN평화유지군 (UN PKF)	유엔 PKO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
다국적군(MNF)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
다국적군 평화활동 (MNF PO)	UN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의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 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

* 출처 : 국군의 파병업무 훈령(2014. 12. 16 개정, 제1739호)

평화유지국(DPKO)은 복합적 안보위협과 분쟁양상에 맞추어 평화유지(Peace-Keeping)를 넘어 필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하는(Robust PKO)’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 유엔이 Robust PKO를 강조하지만,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전투역량과 의지가 부족하여 ‘유엔 주도의 평화강제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Robust PKO는 주로 다국적군에 의해 평화강제나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갈리(Boutros Boutros-Ghali)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상비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노력은 ‘새로운 대응조치 기준과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강화’를 요구하는 브라히미(Brahimi) 보고서에 잘 반영되었다. 브라히미 보고서는 ‘빠르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정치적 지지, 신속배치, 강력한 군사태세, 건전한 평화체제 건설 전략 등’을 강조하였다.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별로 여건에 맞추어 상비부대를 운용하거나 유엔 상비체제(UN SAS : United Nations Standby Arrangements System)에 참여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신속한 전개, 명확한 임무수행, 신속한 위기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파병은 지금까지 4단계를 거치며 진화되어 왔다. 한국군은 국제평화활동(IPO)을 유엔 PKO와 혼용하여 개념 혼돈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 2-3>와 같다.⁸⁹⁾

<표 2-3> 한국군 해외파병의 진화 단계

1단계 (1964.9~1973.3)	2단계 (1991.9. UN가입~)	3단계 (01.9~)	4단계 (2010년대~)
베트남 파병	유엔 PKO	다국적군 활동	국방교류협력

* 출처 : 김철우 외, “해외파병의 전략적 접근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5), p.30.

베트남 파병을 1단계라면, 2단계는 유엔 PKO 위주의 활동으로 소말리아 상륙수부대(1993), 서부 사하라 의료지원단(1994), 앙골라 상륙수부대(1995), 레바논 동명부대(2007) 등이 대표적이다. 동티모르 상륙수부대(1999)는 당초 다국적군 형태로 참여했다가 PKO 임무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89) 김철우 외, 전계서, p.30.

또한 1994년부터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 MOGIP)과 조지아 정전감시단(UN OMIG)에 참모와 옵서버를 파견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다국적군의 아프가니스탄 항구적 자유작전(OEF)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청마부대(2001), 동의부대(2002), 다산부대(2003)를 파병했고, 다국적군의 이라크 자유작전(OIF)을 지원하기 위해 서희·제마부대(2003), 자이툰부대와 다이만부대를 2004년에 이라크에 파병했다. 2008년부터 국제평화활동의 다양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국제평화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전략과 정책의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도 내재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안보전략의 기초로 설정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엔 PKO와 미국의 요청에 호응하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동참해야 하는 여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이 부대단위로 국제평화활동에 동참해 온 성과와는 별도로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등 세계 곳곳에서 정전 감시요원, 참모 및 협조 장교로 꾸준히 활약하며,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⁹⁰⁾

나. 파병의 국가 전략적 가치

세계의 평화는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속한다. 평화유지활동(PKO)이 주목받는 근본 원인 중에는 이러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한국이 국제적 위상과 국력에 걸맞게 국제평화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영향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명분과 실리’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평화활동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거나 부정적 여파를 수반하기도 한다.

첫째, 특정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년 국방예산 37조 4,560억원 중 순수하게 4개의 파병부대를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809억원에 불과하다. 외교부가 2014년에 유엔 PKO 예산으로 기여한 분담금은 1,680억원이다. 실제 장병을 운용하는 국방부의 파병예산은 외교부가 국제기구에 분담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둘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PKO에 대한 지휘 및 통제권이 특정국가에 위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강도 높은 수준의 ‘Robust PKO’를 주창하지만, 무력개입의 범

90) 상계서, p.32.

적 기준이 애매하다. 넷째, 선진국들이 소극적으로 파병하여 실제 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자들이 후진국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다섯째, 파병부대의 안전 문제, 참여 요원의 훈련 및 수준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고 했다.⁹¹⁾

위에서 예시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당사자 동의, 공정성, 무기사용의 최소화’ 등의 국제적 기본원칙과 국내법의 ‘국회 동의’ 요건을 준수해 왔다. 다만 한국의 평화활동이 국회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안전 위주로 편향되거나 적시성을 결여한 파병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해외파병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설득의 과정에서 ‘한미동맹’, ‘국익증진’을 강조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포인트다. 일부 정치권이나 진보적 NGO 등 파병 반대론자들의 ‘미국 용병’ 주장이 먹혀들어 다국적군에 동참하는 전투병 파병을 기피하는 현상도 파생되었다.

한국이 지향하는 해외파병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 5년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목표와 국방 목표 구현을 위해 파병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발전 로드맵을 정립해야 한다. 해외파병의 가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할 정도로 직접 체험을 하거나 파병장병들이 헌신하는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강대국의 정책 방향에 편승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안보 현실, 국제사회의 요구, 대의 명분, 가용 병력 및 예산, 현지 작전소요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파병 요청에도 수동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이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에서 진취적으로 추동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파병의 가치는 국방정책 이슈를 넘어선 국가전략 가치의 표현이다. 우리 군은 국방의 관점에서 한반도에 고착되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으로 마인드를 확충해야 해외 파병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해외파병은 국가안보의 외연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출발점이다.

2. 한국의 해외파병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6.25전쟁의 비극을 극복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

91) 상계서, p.32.

는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중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군의 해외파병은 미국과 베트남의 요청으로 1964년 9월 22일 남베트남에 이동외과병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을 시작으로 해외파병이 개시되었다.

1965년 3월에는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이 파병되었고, 육군의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해병 청룡부대 등의 전투부대와 100군수사령부, 해군수송전대, 공군지원단 부대 등 전투지원부대의 파병이 이어졌다. 1973년 3월 철수 때 까지 8년 6개월간 육·해·공군 연인원 325,517명의 병력이 베트남전에 투입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파병 역사상 최장·최대 규모를 기록했다.⁹²⁾

1991년에는 걸프전시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이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해옴에 따라 다국적군으로 의료지원단 154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병을 했었고, 이어서 공군 수송단 160명을 항공기(C-130) 5대와 함께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파견하여 걸프전을 지원했다.

우리나라의 평화유지 활동은 1991년 9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유엔 회원국으로써 평화 유지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파병 지역과 파병 기간도 다양해졌다. 비록 단기기간으로 국한되기는 하였으나 경찰과 민간인들도 해외 파병 부대의 평화유지 활동에 일부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파병 모델의 선례가 되었다.

이어서 1995년 10월부터 1년 여간 앙골라에서 야전공병단이 1999년 10월부터 4년여 동안 상륙수부대가 동티모르에서, 1994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군의료지원단이 국제 평화유지군으로써 23진에 걸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고 많은 국가들과 현지 주민들로부터 칭송과 찬사를 받고 있다.⁹³⁾

파병 유형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유엔 평화유지활동 중 부대단위 파병은, 2007년 7월 레바논 동명부대(329명), 2013년 3월 남수단 한빛부대(293명)가 8개월의 교대 주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단위는 인도와 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등 6개지역에 25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국적군 평화활동 중 부대단위 활동은 2009년 3월 청해부대(302명)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6개월 단위로 교대근무 하며, 개인단위는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등9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방교류 협력활동은 UAE 아크부대(146명)가 2011년 1월부터 알 아인에 파병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개국 1,104명의 주요 파병활동 현황은 <표 2-4>과 같다.

92) 이세영, 전계서, p.16.

93) 국방부, 『2016국방백서』, p.150.

<표 2-4> 한국군 주요 해외파병부대 현황

2016년 11월 기준

구 분		현재인원	지 역	최 초 파 병	교대 주기		
총 계		1,104	13개국				
U N 평화유지동 태	파견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티르	2007.7.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보르	2013.3.			
	개인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7	스리나가	1994.11.	1년	
		남수단 임무단(UN MISS)	7	주바	2011.7.		
		수단 다푸르 임무단(UN AMID)	2	다푸르	2009.6.		
		레바논 평화유지군(UN IFIL)	4	나쿠라	2007.1.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 OCI)	1	아비장	2009.7.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라운	2009.7.		
	소 계		647				
다국적 평화유지 태	부대단위	청해부대	302	소말리아 아덴만해역	2009.3.	6개월	
	개인단위	바레인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4	마나마	2008.1.	1년
		지부티 연합합동 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2	지부티	2003.12.	
		미국 중부사령부	협 조 단	2	플로리다	2001.11.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투트가르트	2016.3.	
소 계		311					
국방 평화유지 태	부대단위	UAE 아크부대	146	알 아인	2011.1.	8개월	
	소 계		146				

* 출처 : 김철우 외, “해외파병의 전략적 접근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2015), p.31.

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 TSO)을 설치하면서 시작 되었다. 현재 16개 임무단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정전 감시, 재건 및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레바논 동명부대

유엔은 1978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을 구성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지역에 대한 정전 감시임무를 시작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평화유지군 규모를 2천 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회원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⁹⁴⁾

우리 정부는 유엔의 요청으로 2007년 7월 19일 레바논의 평화유지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를 파병하였다. 특전사 병력이 주축인 보병, 이를 지원하는 공병, 통신, 의무, 수송 등 350명으로 편성된 부대는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동명성왕의 이름을 따 동명부대로 명명하였다.

동명부대는 정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 무기와 무장 세력이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정전 감시활동이외에도 다양한 민군작전과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주요 활동은 <표 2-5> 와 같다.⁹⁵⁾

<표 2-5> 동명부대 주요 활동

2016년 11월 기준

작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감시 작전 : 33,190회 · 레바논군과 연합 도보 · 기동정찰 : 3,780회 · 자체 도보 · 기동정찰 및 E00정찰 : 38,384회
민군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주민 의료지원 : 91,627명 · 가축진료 : 22,314두 · 컴퓨터 · 한글 · 태권도 · 재봉 교실 운영 : 5개 마을 · 주민 숙원사업 : 284건(공공시설, 학교시설, 하수시설 등) · 레바논 지원 : 79건

*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p.152.

94) 국방부(2016), 전개서, p.151.

95) 상계서, p.152.

동명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UN FIL)의 일원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30Km 북방, 레바논 남부 해안도시인 티르 시내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쉬말리 지역에서 레바논 저항 세력인 헤즈볼라의 무기반입과 적대 행위와 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⁹⁶⁾

현재까지 9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하수도과 학교시설 개선, 도서관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였다.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민군 작전은 레바논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평화유지 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레바논에서도 지속적인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2) 남수단 한빛부대

영국과 이집트의 공공 통치로부터 벗어난 수단에서는 1955년 정치·종교적 이유로 내전이 시작되었다. 여러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남수단은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의 국가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 남수단 임무단을 새롭게 창설하고 유엔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⁹⁷⁾

우리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 동의를 받아 2013년 1월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 공병 부대를 창설하고 2013년 3월 31일 남수단 현지로 파병하였다. 세계에서 분단된 두 나라 중 그 하나는 수단이었고 그 하나는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이다.

남수단 재건부대인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황폐된 남수단 보르지역에서 비행장, 도로, 교량 건설과 보수 등 국가 기반시설 재건지원 활동과 식수 및 의료지원, 난민 보호, 등 인도적인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4년에는 나일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7km에 달하는 차수벽을 설치하였고, 2015년에는 보르에서 망겔라에 이르는 12.5km를 보수하여 보르 지역과 유엔의 후보급로를 개통하였으며, 남수단의 현지 여건에 맞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남수단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한빛 농업기술 연구센터와 한빛 직업학교도 운영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우리 한국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고 현재 남수단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96) <http://www.peacekeeping.go.kr>(검색일 : 2017.5.6.).

97) 국방부(2016), 전계서, p.152.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은 <표 2-6> 과 같다.

<표 2-6> 한빛부대 주요 활동

2016년 11월 기준

재건지원 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르공항 주기장 확장(410X110m) · 보르공항 활주로 보강공사(1.8kmX45m) · 보르공항 헬리콥터 이·착륙장 신설(70mX70m, 헬기 정비고 신축(1동)) · 보르~망겔라 도로 보수공사(125km), 보르~안이다 도로 보수공사(24km) · 종글레이주 종합쓰레기 처리장(2개소), 오수 처리장 건설(50mX50m, 3개소)
민군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 1만 6천여 명 · 르왈릿 초등학교 신축공사 · 백나일강 홍수예방 차수벽 설치 · 백나일강 차수벽 펌프실 신축 · 한빛농장 운영 : 망고, 구아바, 묘목 600주 식재 · 한빛농업기술연구센터운영:113명 수료, 현재 4기 교육중 · 한빛직업학교(토목 등 4개 분야)운영 : 72명 수료 현재 2개 교육 중
난민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보호소 신설 · 총상환자 치료 : 819명 · 급수 및 배수지원 · 난민 보호소 방호벽 설치, 내부 도로 개설
UN군 시설공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르기지 숙소건설 : 동부지역사령부(35동), 에티오피아대대(35동), 직원숙소(30동), 네팔경찰기지(8동), 스리랑카 병원(12동), 오수처리시설(4개소) · 보르기지 경계시설 보강 : 방호벽, 내부작전로, 고가초소, UN 직원 대피호 설치(4개소, 16개), 사계청소(1.5km) · 기지 배수시설 개선 : 대형집수지 건설(4개소, 525kton), 배수로 도로보수(7.5km)

*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152.

(3)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동남쪽, 호주 다윈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국토의 75%가 산악 및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주변 티모르 해역에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과 석유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모르섬은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배하에 있었으며, 1924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티모르섬에 대한 분할통치에 합의하여 서티모르는 네덜란드가,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이 서티모르를 4년간

점령하였으며, 일본 패전 후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 귀속되었고, 동티모르는 1975년 11월 독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침공 및 지배를 받게 되어 독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999년 인도네시아 독재정권이 민간정권으로 이양 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동티모르 주민의 계속적인 저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권국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동티모르에 대해 독립을 묻는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UN은 동티모르 지원단을 파견하여 선거를 관리하였고, 선거결과 동티모르인들은 독립을 선택하였다.

선거 후에도 독립을 반대하는 집단의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유엔에서는 안보리 결의에 의거 다국적군(INTERFET)을 1999년 10월에 파견, 성공적인 작전수행으로 인도네시아 군이 서티모르 지역으로 철수하였고 안정과 치안이 회복되었다. 이어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272호에 의거 입법과 사법, 행정의 치안유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평화유지군을 운용할 수 있는 동티모르의 과도 행정기구를 설치하였다.

우리정부는 유엔의 파병 요청에 따라 1999년 9월 22일 국회 파병동의를 거쳐 10월 4일 유엔에 가입 후 최초로 전투부대인 상륙수부대 1진 419명을 파병한 이후 2003년 10월 3일 철수 시까지 총 8개진 연 인원 3,328명을 파병하였고, 더불어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부에 45명을 파병하였다. 또한, 원활한 재보급을 위해 해상상륙함(LST)과 공군수송기(C-130)를 운용하였다.

파병부대는 1진~4진까지는 라우뎀에서, 5~8진까지는 암베노에서 책임지역 수색 및 정찰, 유엔시설 경계, 블루엔젤작전(다기능 복합민사작전) 및 주민 친화활동 등을 실시하여 책임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타 파병국으로부터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지역 내에 “한국 친구의 거리(루아 말록 꼬레아)”가 명명되는 등 동티모르에서 4년여에 걸친 우리의 활약은 한·동티모르 양국 간 유대강화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⁹⁸⁾

(4) 걸프전 평화유지 활동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1990. 8. 2)하여 강제 합병함에 따라 1991년 1월 17일부터 2월 29일 간에 걸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쿠웨이트의 주권과 영토회복을 위한 무력 응징조치였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라크의 쿠웨이

98) 양점석 외, “예비군 해외파병 방안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방부연구용역과제(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4), pp.39-40.

트 침공사태는 힘의 논리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를 응징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논리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6·25 전쟁 시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보답과 장차 아랍권 국가와의 외교·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쿠웨이트의 주권과 영토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정부는 1990년 9월 24일, 정부 종합지원 방안에 관한 대국민 발표와 함께 우리 정부의 의사를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국방부는 의료지원단 파병을 결정하고, 1월 21일 국회가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자, 154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창설하였다. 의료지원단은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91년 1월 23일 쿠웨이트 남쪽 120km 알누아이리아에 본대를 전개하고 본격적인 의료지원활동을 개시하였다. 의료지원단은 사우디군 925명, 다국적군 469명, 이라크군 포로 156명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4월 10일 귀국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군수송단 파병을 결정하고, 2월 13일, 인원 160명과 C-130기 수송기 5대로 편성된 공군수송단(비마부대)을 창설하고 2월 22일 UAE의 알아인 기지로 전개하여 총 309회의 비행을 통해 다국적군 병력 1,350명과 668톤의 장비·물자 수송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4월 9일 귀국하였다.

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 파병은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침략국 제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세계평화와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과거 6·25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미국과는 기존의 안보협력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현신적이고 뛰어난 의료기술과 미 공군도 극찬할 정도의 비행 기술과 기량을 과시했다.⁹⁹⁾

(5) 이라크 제마·서회부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자유작전’은 2003년 3월 20일 개시되어 4월 30일 종전이 선언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라크 전후복구와 평화정착을 위해 UN은 2003년 10월 16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과 이라크 재건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UN 안보리 1511호를 결의했다. 최초 미국, 영국,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15만여 명의 병력이 파병되었다.

99) 상계서, p.34.

한국군은 최초 600여 명으로 구성된 서희·제마부대가 2003년 4월 17일 쿠웨이트로 전개 후 5월 6일부터 이라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 해 9월 4일 미국으로부터 추가 파병요청에 의거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희·제마 부대를 포함한 3,500여 명의 병력으로 자이툰 사단을 편성, 추가 파병하여 세계가 놀랄 정도의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¹⁰⁰⁾

자이툰 사단이 임무수행 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주 일대로 이동하기 위해 펼친 작전이 파발마 작전이었다. 병력 2,500여 명과 450여 대의 차량, 컨테이너 250개에 담긴 수천 톤의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 자이툰 사단의 임무는 ‘책임 지역의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이라크 임시정부 지원 및 협조, 이라크 군·경 치안 유지활동 지원 및 적대적 세력 공격 시 방어적 조치 등’ 이었다. 자이툰 사단이 철수하기 전 까지 그곳에서 보여준 눈부신 활약은 세계를 놀라게 하며 평화 유지활동의 모델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¹⁰¹⁾

(6) 유엔 옵서버 및 참모장교

현재 우리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 2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유엔 옵서버는 현지의 임무단 통제 하에서 파견 국가별 정전협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 순찰, 보고, 중재 등의 평화정착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모장교는 각 사령부의 정보, 작전, 인사, 군수 등 참모부에 소속으로 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다국적군 평화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특정국가나 지역기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을 의미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쉬노 부대를 파견하였다. 오쉬노 부대는 2014년 6월까지 1천8백여 회에 달하는 정찰 및 호송작전을 수행하며 단 한건의 피해도 없이 재건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국가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100)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 제공자료(2007) ; 이세영, p.27에서 재인용.

101) 상계서, p.27에서 재인용.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 총 311명을 파견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302명과 지부티 협조장교 2명, 바레인 연합 해군사 참모장교 4명, 미군 중부사령부 협조 및 참모장교 2명,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 1명 등이며 다음과 같다.¹⁰²⁾

(1)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활동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1960년 북부의 영국 식민지와 남부의 이태리 식민지가 소말리아로 합병 통일된 나라이다. 1961년에는 국민투표에 의한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다음 해 쿠데타가 발생한 후 3대 군벌에 의한 내전이 계속되어 1992년에 1차 유엔 소말리아 활동(UN OSOM I)이 파견되었고, 1992년 4월 UN OSOM II가 파견되면서 한국도 참여하게 되었다.

육군은 제189공병대대를 모체부대로 1993년 4월 23일 부대를 창설하고, 부대명을 ‘소말리아의 험벗고 척박한 땅을 푸르름이 넘치는 옥토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상록수부대’로 명명했다.

상록수부대는 4주간의 파병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5월 18일 국회 파병 동의안이 가결되자 7월 31일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북방 30km 지점에 위치한 발라드로 부대를 전개하여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유엔본부와 유엔 OSOM II로부터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최초 참여한 활동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26개국이 모인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한국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정부와 한국군이 유엔 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¹⁰³⁾

소말리아 내전으로 2004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은 안보리 결의한 1838호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함정과 항공기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9년 3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였다.¹⁰⁴⁾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한국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 해군사령부의 해상 안보작전에 참여하여 유사시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병력은 2016년 11월 기준 302명이다.

102) 국방부(2016), 전게서, p.153.

103) 이세영, 전게서, p.22.

104) 국방부(2016), 전게서, p.154.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원과 선박을 구출하였고, 2011년 3월과 2014년 8월 리비아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 국민을 인접 국가에 안전하게 철수시킨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과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2015년 4월 예멘의 수도 사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켜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과의 연락 유지와 보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 합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표 2-7> 과 같다.¹⁰⁵⁾

〈표 2-7〉 청해부대 주요 활동

2016년 11월 기준

선박호송		안전항해지원		해양안보 작전	해적퇴치
우리선박	타국선박	우리선박	타국선박		
476척	1,736척	11,555척	2,842척	386회(783일)	21회/31척
국 민 보 호					
아덴만 여명 작전(2011.1.)		선장 및 선원 전원 구출, 해적8명 사살, 5명 생포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작전(2011.3.)		우리국민 37명 리비아 몰타에서, 그리스 철수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작전(2014.8.)		우리국민 18명, 외국인 86명 리비아 몰타로 철수			
예멘 재외국민 철수 작전(2015.4.)		우리국민 6명, 외국인 6명 예멘에서 오만으로 철수			

*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156.

이러한 청해부대의 활동은 우리의 한국군과 외교부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아덴만 지역의 해적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덴만 해역은 원유, LNG 등 전략물자 주요 해상로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29%가 아덴만 인근 해역을 통영함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전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105) 상계서, p.156.

(2) 앙골라 도로·시설보수 및 대민지원 활동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 남서쪽에 대서양과 인접해 있는 한반도의 5.5배 면적을 가진 나라이다. 앙골라는 1647년 이전까지는 인접국가인 콩고의 지배를 받아오다 이후 1973년까지 포르투갈의 식민지배하에 있었다. 1974년에 포르투갈과 3개의 독립운동단체로 구성된 앙골라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각 단체의 이해관계로 1975년 7월 과도정부가 붕괴되어 내전이 발발하자, 동년 11월 포르투갈은 앙골라의 완전독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정권을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에게 인계하였다.

이후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은 구소련과 쿠바의 지원 하에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였으나, 반정부군인 앙골라 해방인민전선, 앙골라 완전독립연합과의 내전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쿠바는 앙골라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6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후 1992년 9월 최초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하자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과 앙골라완전독립연합 사이에 리스본 협정이 체결되었고, 유엔에서는 공정한 선거감시를 위한 앙골라 유엔감시단(UNAVEM : UN in Angola Verification Mission)을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에 대한 앙골라완전독립연합측의 불복으로 내전이 재개되었다. 이후 미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조정으로 1994년 11월 20일 정전협정 이행, 유엔 ITA 군 무장해제 등이 포함된 루사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유엔은 평화협정 이행감시를 위해 7천명의 군 병력과 610명의 감시단으로 구성된 UN AVEM-III를 승인하여 1995년 2월부터 1997년 6월까지 활동하였다.

한국군은 유엔 AVEM-III에 공병대대를 1995년 10월 5일부터 1996년 12월 23일까지 3개진 연인원 600여 명을 파병하여 앙골라 ‘우암보’ 지역에서 주 임무인 교량복구를 비롯하여 도로·시설 보수 유지 및 대민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유엔 AVEM-III 사령부에 한국군 최초로 6명의 참모요원을 파견하여 한국군 공병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이라크 평화정착 재건활동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자유작전’은 2003년 3월 20일 개시, 4월 30일 종전이 선언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진 이라크 복구와 평화정착을 위해 유엔은 2003년 10월 16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과 이라크의 재건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 1511호를 결의했고 미국, 영국,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15만여 명의 병력이 파병되었다.¹⁰⁶⁾

106) 양점석 외, 전계서, p.41.

한국군은 최초 600여 명으로 구성된 서희·제마부대가 2003년 4월 17일 쿠웨이트로 전개 후 5월 6일부터 이라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 해 9월 4일 미국으로부터 추가 파병요청에 의거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희·제마 부대를 포함한 3,500여 명의 병력으로 자이툰 사단을 편성, 추가 파병하여 세계가 놀랄 정도의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자이툰 사단이 임무수행 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주 일대에 가기 위해 펼친 작전이 파발마 작전이었다. 병력 2,500여 명과 450여 대의 차량, 컨테이너 250개에 담긴 수천 톤의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¹⁰⁷⁾

자이툰 사단의 임무는 ‘책임지역의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이라크 임시정부 지원 및 협조, 이라크 군·경 치안 유지활동 지원 및 적대적 세력 공격 시 방어적 조치 등’ 이었다. 자이툰 사단이 철수하기 전 까지 그곳에서 보여준 눈부신 활약은 세계를 놀라게 하며 평화 유지활동의 모델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4)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 장교

우리 군은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 미국 중부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등에 총 10여 명의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여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업무 수행, 연합작전계획 수립, 한국군의 해외 파병부대 교대 및 작전 지속지원 활동, 현지 동맹군 협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국방교류 협력활동

국방교류 협력활동은 특정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전투의 위험이 없으며 파병 장병의 안전이 명확히 확보된 지역에 우리 군 병력을 파견하여 인도적 지원, 교육훈련, 재난 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1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였다. 아라우 부대는 필리핀의 피해지역 복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에 철수하였다.

2014년 3월 239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공기 잔해 탐색을 요청하였다. 해상 탐색지원 활동에서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의 잔해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우리 해군은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다국적 연합 탐색작전 지원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07) 이세영, 전계서, p.27.

2016년 11월 우리나라는 총 146명이 해외에서 군사지원 및 협력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참여 현황은 아래와 같다.¹⁰⁸⁾

(1) UAE 아크부대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체계를 벤치마킹하여 UAE군의 군사교육훈련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2010년 8월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한국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UAE군의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을 2011년 1월 150여 명 규모로 아부다비주 지역에 파견하였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연습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군은 UAE군의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특수전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 역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높은 기온과 건조한 사막 훈련과 우리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아크부대 주요 활동은 <표 2-8> 와 같다.

<표 2-8> 아크부대 주요 활동

2016년 11월 기준

UAE군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군의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 · UAE군 교육훈련체계 개선
우리군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의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특수작전 능력 향상 · 약조건 하(90℃ 이상 고온, 사막) 생존능력 강화 훈련 실시 · 장거리 사격훈련 및 고공낙하 훈련 실시
국방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군 주요훈련 시 UAE군 참관 및 양국 연합훈련 시행 · 각 군 교육과정에서 UAE장교 수탁교육 및 한국군 위탁교육 실시 · UAE군·가족의 국내 민간병원 진료 등 의료협력 · 중동지역의 국방외교 허브 구축 및 방산수출 협력 등

*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157.

108) 국방부(2016), 전게서, pp.156-157.

특히 고공·야간 강하 훈련은 국내에서 6~7년 걸리는 훈련량을 6개월 만에 소화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견을 계기로 국방 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작전 훈련을 포함해서 육군·해군·공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군 관련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2) 서부사하라 의료지원 활동

모로코는 서부 사하라 지배를 위해 1975년 11월 약 35만 명의 민간인을 모로코에서 서부 사하라로 이주하는 “Green March”계획을 단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서부 사하라 무장투쟁 세력인 폴리사리오(POLISARIO)가 1976년 2월에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을 창설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들어갔다. 그 이후 양 측은 유엔의 중재 제안에 동의하여 1991년 9월 5일 유엔 서부사하라 선거지원단(MINURSO)이 창설되었다.

국군의료지원단의 서부사하라 파견은 걸프전에 파병되었던 우리군의 의료 수준을 높이 평가한 유엔이 한국정부에 1994년 2월 의료지원 임무를 서부 사하라에서 종료하고 철수하는 스위스를 대신하여 파견시켜 줄 것을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8월 2일 서부 사하라에 우리 의료 기술진과 장비로 구성된 제1진 42명이 파병된 이래 2006년 5월 14일 제23진 20명을 마지막으로 12년간의 활동 후 말레이시아 의료부대에게 임무를 인계 후 철수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유엔 요원에 대한 기초 단계의 의료지원, 응급환자 및 사상자 발생 시 상급 의료지원 시설 후송 등 임무로 6개월 기간 단위 제 1진부터 4진까지는 각 42명씩 파병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유엔요원이 감소되어 제 5진부터 23진까지는 20명씩 파병되어 연 인원 542명이 파병되었다.¹⁰⁹⁾

파병활동 성과로 국군의료지원단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연 인원 5.8만여 명을 진료하였으며, 현지 유엔 요원 및 현지인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신뢰받는 의무부대로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 의료지원단 요원은 개개인이 군사외교관임을 명심하여 행동에 유의하고 각종 유엔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 현지 유엔 관계자로부터 서부사하라 PKO파견국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현지인들에게도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09) 양점석 외, 전개서, pp.36-37.

(3) 아프간 건설·의료지원 다산·동의부대 활동

아프간 파병은 2001년 9월 ‘알카에다 탈레반’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던 미국의 요청과 ‘테러’가 어느 국가나 정부의 정략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합의하에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최초 제924의료지원단(동의 1진)이 2002년 2월 키르키즈스탄 마나스 기지에 파견되었으며, 2003년 2월에는 ‘테러와 전쟁’ 승리 후 전·후 아프간 재건과 동맹군 기지복구를 위해 건설 공병부대가 아프간 바그람 기지로 추가 파병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2월 동의부대가 마나스 병원을 폐쇄하고 바그람 기지로 이동 후 병원을 개원하고, 2003년 8월에는 민사반(8명)이 파병되어 활동하였으며, 다산부대는 건설 공병부대로 동맹군기지 운영지원 임무를 수행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듯 국방협력 활동은 전투위험이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여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지역 피해복구 지원, 의료구호 지원 등 비전투분야에서의 평화적 협력활동을 활발하고 완벽하게 펼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렇게 수많은 국제적 분쟁지역에 파병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제 평화유지를 위해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도 국방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과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국방외교의 활동과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한국의 해외파병 활동유형 모두가 국가이익을 위한 파병이었고, 파병의 활동결과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우리의 해외파병 활동에 동원병력과 예비군이 단 한명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동원병력을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법령 제·개정, 국회의 동의 등 수 많은 과제들을 도출하고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절차들이 산적하리라 판단은 하지만 국방개혁 추진과 군 구조발전 추진을 위한 동원 및 예비전력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한다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연구되고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정책결정 요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해외파병 정책결정 중에서, 베트남의 파병은 한·미 동맹의 특별한 관계라는 틀 속에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미국의 파병 요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소말리아 평화 유지활동 파병은 그 당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외파병동기 부여로 추진되었다. 파병에 영향을 미친 순서는 베트남전과 걸프전은 ‘체계-역할-개인-정부-사회’의 순으로, 동티모르 평화유지 파병 활동은 ‘개인-체계-역할-정부-사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말리아, 동티모르, 앙골라에서 수행한 평화 유지활동 임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군 해외파병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투입→전환→산출→환류’라는 정책결정 모델을 기초하여 분석을 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이 평화유지 활동 파병이라는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제적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국익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공통적인 목표 하에 수행했던 역할을 보면, 대통령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3개 파병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 여론의 역할도 이러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참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정부별로 파병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는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 시 파병결정 과정에서 국내·외의 반전 분위기와 파병반대 여론이 높았으나,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군을 구성하는 국가의 강력한 요청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국회는 결국 파병 안을 통과시켰고, 이라크전이 조기에 종결되어 전후복구와 의료지원의 임무수행을 위해 파병하였다.

참여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하 자이툰부대 파병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가 파병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국가목표와 정부의 역할 요인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사회적 요인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실용정부에서의 청해부대 파병은 국내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내부적으로는 국가목표, 사회적, 정부적, 경제적, 인적 요인과 외부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교적 원활하게 파병이 결정되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유형상 해외파병이라는 정책 결정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외교

정책 결정은 국가목표, 외부적 환경, 사회적 여론의 정서,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견과 한·미 동맹관계 등의 중요 요인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미 동맹과 국가이익 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원업무 주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원병력 해외파병 관련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파병 결정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파병정책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국가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해외파병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다.

해외파병 정책입안 정부부처는 국가이익 구현을 위한 파병 정책의 타당성에 대하여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설득하는 정책을 펼쳐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외국의 예비군제도와 동원예비군의 해외파병 사례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정부도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정책결정을 적극 검토하고, 해외파병 정책 결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정책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자는 해외파병 정책결정 요인을 외교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군사적 요인으로 한정해 분석하였다.

1. 외교적 요인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외교정책 결정은 국가이익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이익 중에서도 가장 중시되는 것은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내적 체 가치와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민족국가 중심적인 세계에서 민족국가의 출현과 함께 현실주의자들이 정치권력 형태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의된 것이라고 한다.¹¹⁰⁾

따라서 외교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이론적 이해를 통해 체계적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교정책은 한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국토의 넓이, 자원의 양, 인구의 수와 같은 기초적인 규모의 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는데, 학자들은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요인과 변수에 대하여 일반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외교정책의 이론적 고찰에 앞장선 학자들은 기타의 학문처럼 규칙성과 패턴 또는 일정한 경향 등

110) 강현구,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p.56.

각 나라의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외교정책이 구상되어 마련되고 실제로 현실에서 집행될 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세밀히 분석하면 상대국의 대외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자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시도할 수 있다.

국군의 해외파병 활동은 우리 정부의 단독적인 파병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강력한 요청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엔의 결의로 구성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해외파견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유엔이 참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요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

다국적군 해외파병 활동은 유엔의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의 요청에 대하여 다국적군을 주도적으로 결성하는 국가에 우리 정부가 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그 근거는 유엔 안보리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지지와 결의에 의해서 파병이 결정되어졌다.

군사협력 활동은 군사교류 협력의 목적을 통하여 파견을 요청한 상대국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군사협력 요청은 국제협정이나 교류협력의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상호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군의 해외파병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실시되는 사전 조사와 판단은 원활한 파병을 위한 해당국과 상호 주둔군지위협정(SOFA) 체결 여부를 확인하며, 주로 정부의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기본 자료로 제공하는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준비하는 것이다.¹¹¹⁾

파병과 관련하여 파병요청 국가와 군수지원 소요 및 체계, 소요비용 판단, 파병 준비 소요기간, 그리고 해외수송 간 사용하게 될 수송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양륙공항 및 항만, 고속도로, 국도 등 해외수송지원 소요와 수송장비 소요를 판단해야 하며, 파병 소요비용은 개략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 결과는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파병시기 판단에는 해외파병 부대 부대교대 계획, 파병준비기간 판단은 파병시기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111) 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개 국가와 SOFA 협정을 맺고 있다.

국내·외 동향, 현지상황과 주변국 동향, 파병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부합동 현지조사는 정부의 정책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로, 현지 정세와 국민 관련사항, 군사동향, 안정성 등을 판단하는 활동이며, 군부대 작전지원 분야는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해서 사전 판단한 자료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평화유지군 파병 시 지원 가능한 분야와 지원이 불가능한 분야 등의 군수지원 체계와 방침을 확인하고 식별해야 한다.

해외파병과 관련된 해당 국가와의 협조는 국회동의 이전에 정부 합동조사 및 내부검토 결과를 토대로 파병 주요 의제인 파병 임무와, 파병지역, 파병시기 등에 관한 상호 협조와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된다. 이런 협조는 파병 요청 내용을 관련 국가와 충분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파병방안을 결정 짓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파병에 결정된 주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파병을 요청한 국가와 파병을 지원하는 국가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토의와 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명확한 근거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의된 사항이 간혹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군 주도하의 파병인 경우에는 유엔 주도하 파병되는 경우와는 달리 개별로 해당 국가와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사전에 체결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통관절차와 출·입국 절차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도 출·입국 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외교적 요인의 핵심사항은 한 나라의 파병이 유엔 안보리와 파병요청국의 단순한 외교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의해서 파병이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동원병력의 해외파병도 국제적으로 유엔의 지지와 파병요청 국가의지지 그리고 국제사회,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2. 정치적 요인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기조로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주변 4강이 지원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취임 이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국가의 협조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의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와 안보협력을 재확인 하였고,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또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한·미 안보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핵 의혹시설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데 주력하였다.¹¹²⁾

1998년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당시 정치상황은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여·야간 정쟁이 가열된 상황 하에 있었고, 각종 정부시책을 결정하는 데도 국가의 이익을 떠나 정쟁으로 일관하는 상태에 있었다. 당시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환경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신장과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우선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전투부대 파병정책을 결정한 세 정부의 성격과 국정기조는 다음의 <표 2-9>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¹³⁾

<표 2-9> 정부별 해외파병 성격과 국정기조

구 분	성 격	국정기조	외 교·안 보·통 일 국정목표
김대중 정 부	국민의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 참여민주주의 • 화해 협력(햇볕정책) • 생산적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강화, 국익중심 경제, 문화 •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실천 • 자주적 집단안보의 구축 냉전구조의 해체
노무현 정 부	참 여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발전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자주국방 • 균형적 실용외교 • 신뢰와 포용 대북정책
이명박 정 부	실 용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기찬 시장경제 • 섬기는 정부 • 인재대국 • 성숙한 세계국가 • 능동적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인 대북정책과 튼튼한 안보 •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선진강군으로 가기 위한 국방 개혁의 추진

* 출처 : 박동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서울 : 선인, 2016), p.320.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기조로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주변 4강이 지원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취임 이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국가의 협조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112) 장진원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 법문사, 1998), p.13.

113) 박동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서울 : 선인, 2016), p.320.

의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와 안보협력을 재확인 하였고,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또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한·미 안보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핵 의혹시설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데 주력하였다.¹¹⁴⁾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2003년 3월 이라크를 대량살상무기(WMD) 제조를 이유로 공격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국내·외의 전쟁을 반대하는 분위기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국회는 국군의 파병을 결국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예상보다 일찍 종결되어 전투병 파병은 못했고 이라크 전쟁후 복구와 의료지원 임무로 2003년 5월에 제마부대 100명과, 서희부대 573명 등 총 673명이 파병되었다.

한국의 파병부대는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부대로 구성되었고, 명칭을 각각 '제마부대'와 '서희부대'로 결정했다. 이후 2003년 10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1진과 교대하여 2진 466명이 출국하였고, 제마부대와 서희부대 2진은 2004년부터 이라크 남부에 주둔하면서 전쟁의 폐허 복구와 의료지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고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협력과 안보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확산에 대해 공동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이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한다면 정부는 추가 파병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파병으로 인한 정쟁과 국론의 분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경제적 요인

참여정부가 출범할 무렵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인 대형 사건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라크 전쟁, 북핵문제, 태풍, 사스전염병 등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LG카드 부실, SK비자금, 대선자금 수사 등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로 국가와 국민의 경제심리가 위축되었다.¹¹⁵⁾

한국경제의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그 당시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하는 문제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해외 파병이 무산될 경우에 한·미간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며, 이것이 북핵 문제

114) 장진원 외. 전계서, p.13.

115) 이정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정 분석”,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p.21.

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국가 신용등급하락 등의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간의 상호 신뢰구축과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경제 불안요인을 예방하고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과정에서 파병문제를 활용하였다.¹¹⁶⁾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과 이라크 전후 복구 및 주변국 경제지원 등 이라크 전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하였다.¹¹⁷⁾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이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해외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라크의 전후 재건사업 특히, 중동의 건설사업 수주, 대기업의 미수금 회수 가능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소 침체된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았다.

한국이 이라크 파병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당시 국책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전경련은 이라크 파병으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중동 특수를 예상하면서 투자 비용대비 경제적 수익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업연구소는 전후 재건사업으로 향후 10년 이상 150억~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3~5%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연간 4억~8억 달러 규모의 달러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¹¹⁸⁾

한국은 2004년 4월 이라크에 파병되는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를 이라크 대표적인 유전 지대인 키르쿠크 등 북부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아타민주 지역의 치안상황이 불안하고 극도로 악화 되어가자 당초 추가 파병할 예상지역인 키르쿠크 파병은 무산되었다.

이후 2004년 5월 9일 쿠르드족 자치지역 정부의 부총리가 한국군의 파병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서한을 보내오에 따라 추가 파병지역을 아르빌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불안한 상황의 이라크와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 사례와 당초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 무기의 부재 등으로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2004년 6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이라크 파병 계획을 확정지었다.

비전투병 위주로 편성된 자이툰 부대는 3,000명 규모로 아르빌 도시기반시설 복구와

116) 연합뉴스, 『연합연감 2004』.(2004), p.243.

117) 세계일보(2004년 2월4일)

118) 산업경제연구소, “이라크 파병 경제적 영향 분석”, 『산업경제정보』, 제163호(2003), p.3.

치안유지 목적으로 2004년 8월 3일 선발대가 출국했고, 8월 28일 본대가 파병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최대의 병력 파병이었다. 쿠웨이트의 공군 58항공수송단 다이만 부대가 2004년 8월 31일부터 자이툰 부대에 병력과 군수물자를 공수하여 지원하였다.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군부대와 경찰 등을 대상으로 장비와 물자를 공급하였고 군사 교육과 함께 건물 신축도 병행 하였다. 도로, 전기, 급수, 치안유지 등 열악한 국가기반 시설 보수와 교육, 보건의료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아르빌을 안정시켰다. 그러는 중 2004년 6월 22일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이라크의 무장단체에 의해 민간인 김선일 씨가 살해되었고, 그 후 국내에서는 파병의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파병은 2008년 12월 까지 이어지다 2008년 약 4년 3개월 만에 자이툰과 다이만부대가 철수했다.

실용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외교·경제·안보 측면을 강화하면서 창조적 실용주의와 포괄적 실리외교를 추구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국군을 파병할 때 파병의 명분과 실리 그리고 외교적 영향에 따라서 찬반의 여론과 논란이 심하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2011년 비 분쟁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군사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파병을 시작했다. 파병을 추진하고 논의 과정에서 원전 수출을 위한 군부대 파병 등 명분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¹¹⁹⁾

우리 정부의 해외파병 정책은 실용주의와 포괄적 실리외교라는 측면에서 특정국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군대를 파병하여 상호 군사교류와 교육훈련 증진 등 외교·경제·안보 전 분야에서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었고, 향후 한국의 해외파병은 국가 이익에 우선한 유형의 파병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군사적 요인

참여정부 대통령은 당선자 자격으로 2002년 12월 계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군 보강 대책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참여정부 공식 출범 이후에는 자주국방을 강조하였다.¹²⁰⁾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보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방위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국과 주한미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안보를 확고하게 지켜내고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천명하였다.¹²¹⁾

119)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2001』 (서울 : 외교통상부, 2001), pp.88-89.

120) “미군철수 문제 정치권 쟁점화”(조선일보, 2002년 12월 31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목표를 자주적인 선진국방 구현으로 결정하고 추진 중점사항으로 첫째, 완벽한 자주국방태세 확립 둘째, 미래지향적인 국가방위역량 구축 셋째,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넷째, 장병복지·병영시설 환경 개선을 제시하였다.¹²²⁾

당시의 국방부는 국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향후 20년간 약 209조원, 연평균 10조원 정도가 첨단무기 구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와 물자의 예상 가치는 약 140억~150억 달러로, 이 가치를 대체할 경우에 우리는 매년 약 9년에서 17년 동안 전력투자비의 절반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¹²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2003년 4월8일 제 1차 미·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에서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를 한강이남 경기도 ○○지역으로 조기 이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1990년 초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북핵문제로 중단되었던 시기를 같이 하면서 국민들은 한반도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¹²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파병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통일의 역할에 대해 계속적인 미국의 완전한 보장을 받기를 원했으며, 한반도의 안정된 기반위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당시의 주한미군 배치 및 감축 등의 한·미간의 군사협상에서 안보 불안 요인은 최소화시킨 가운데서 한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파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라크 파병은 한국의 월남전 파병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을 해외에 파병한다는 점과 이라크 파병이 가장 먼 원거리 파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군사 작전 능력의 향상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반도의 장기휴전 상황에 따른 군인들의 정신적 이완의 일소와 전투경험 축적, 연합작전 능력배양 등의 측면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다.¹²⁵⁾

이렇듯 군사적 요인에 의한 해외파병도 국가와 군 발전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파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파병병력도 현역위주 편성에서 동원병력도 혼합편성 파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121)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서울 : 국방부, 2003), p.40.

122) 상계서, p.30.

123) “주한미군 감축의 경제파장”(서울경제, 2004년 6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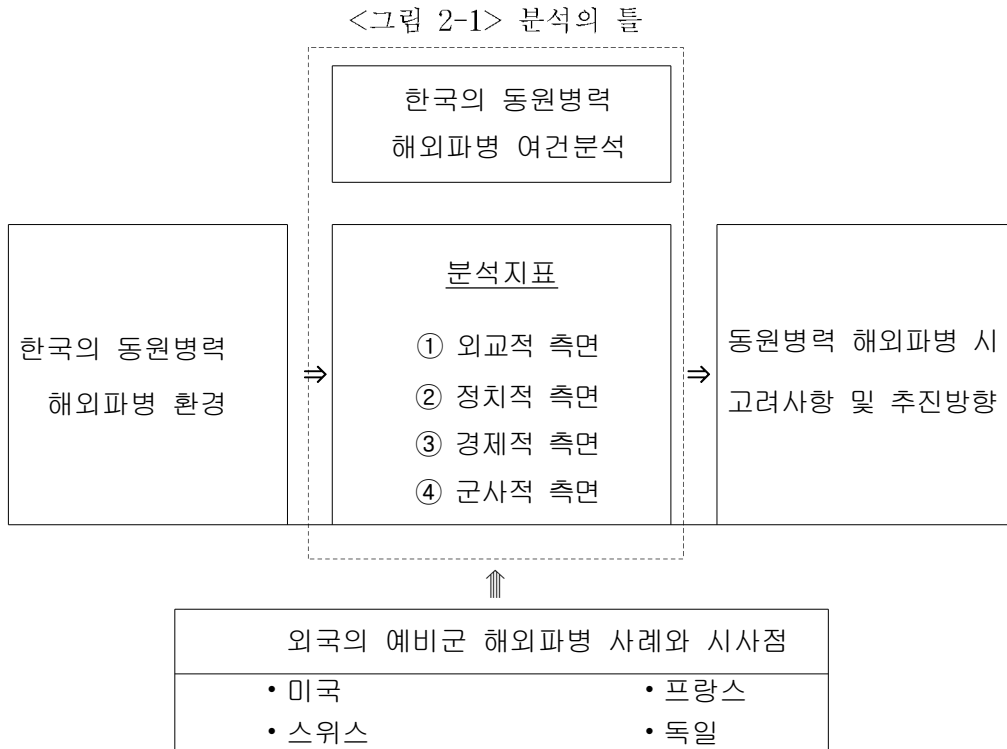
124) “한미동맹 3차회의 / 국방비부감 커져”(동아일보, 2003년 7월 25일).

125) 제236회 임시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최명현 의원은 ‘이라크에서 전략전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파병 이전에 미국과 먼저 협의해서 보내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에 조언함.

제5절 분석의 틀

국군의 해외파병은 국내에서 제한되는 실전경험의 축적과 군의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한·미동맹 관계의 균형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안보의 선순환에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해외파병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해 많은 기업이 대형 인프라 및 건설수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중심의 해외파병은 즉응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다소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원병력 해외파병정책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반드시 고려해야할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정립한 다음 한국의 여건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차적 작업은 제2장 제4절에서 제시한 ‘동원병력 해외파병정책 결정요인’을 분석지표로 하여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 여건을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의 틀은 <그림 2-1>과 같다.



또한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정책이니 만큼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본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향후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 2-1>에서 제시된 연구흐름도 중에서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 여건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해외파병 여건 분석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국제안보협력 증진과 국제평화에 기여도 및 국제적 국가위상 문제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파병의 당위성을 비롯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파병 동원병력의 신변 안전문제가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국방개혁 추진여건 보장과 예비전력 활용 극대화, 대군신뢰도가 주요 연구문제가 될 것이다.

제3장 외국의 동원병력 파병 사례와 시사점

동원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정해진 법률에 의해 활용하여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대부분 국방력이 튼튼한 나라는 국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원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정신적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국가의 존망이 곧 자신들의 생존이라는 안보인식을 국가형성과정 초기부터 투철하게 각인되어 있어 신속한 동원을 가능하게 하고, 동원전력이 군사력의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미국도 전통적인 애국정신도 독립전쟁 시 국가동원의 중심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국가 비상시 동원으로 인한 기업과 개인의 피해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국민모두 병역의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가의 공적인 신뢰성을 확고하게 보여줌으로서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원태세 유지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미국을 포함하여 프랑스, 스위스, 독일의 동원병력 해외파병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국가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로 미국의 동원사례에서는 미국 예비군의 연혁과 예비군의 해외파병, 운용 사례를 연구하였고, 프랑스는 예비군 연혁과 동원제도 그리고 해외파병 운용사례, 스위스와 독일은 자료가 한정되어 연혁과 예비군 동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제1절 외국의 동원사례

1. 미국

가. 예비군의 연혁

1636년 육군은 주 방위군의 기원이 되는 시민군 연대조직이 메사츄세추주 식민지 의회에서 결성되었다. 1908년에는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의 결과 예비군의 필요성이 인식되자 미국 예비군의 기원이 되는 육군의 현역과 예비군 의무 부대를 창설하였다. 1916년에는 국방법(National Defense Act)이 제정됨에 따라 육군, 해군 및 해병대의 예비군이 편성되었다.¹²⁶⁾

126) 양점석 외, 전게서, p.44.

1947년 공군 주 방위군이 육군 주 방위군에서 분리되어 창설되었으며, 1948년에는 공군 예비군이 편성되었다. 1952년 예비군법(Armed Forces Reserve Act)이 제정되어 역종이 분류된 예비군제도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73년 이후로 실시된 총체전력정책(Total Force Policy)¹²⁷ 따라 미국은 예비군기구에 근무하는 각개요원과 부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원 및 전개하여 운용하기 위한 제도 및 능력(能力)면에서의 방위수단을 점차로 강화하여 왔다. 미군 예비군은 상비군에 대한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탈피하여 상비군의 동반자로서 현역과 예비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군대이다.¹²⁸

역사적으로, 미(美)의회는 현역과 동원 및 예비군 기구를 구축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전부와 각 주(州)의 명확한 임무와 역할, 그리고 관련된 법률을 1903년에 최초로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동원 및 예비군 기구는 공식적으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난 1917년에 창설되었다.

미(美)의회는 동원 및 예비전력 기구에 근무하는 병력과 인력을 인가하는 법령을 1968년 통과시킴으로서 현역과 동원 및 예비군 기구가 편성되었고, 훈련된 부대편성의 일부를 유지하도록 현역과 예비군 부대에 대한 최소한의 연간 훈련소요와 현역과 예비군 기구의 지휘관과 일반장교 계급을 상정하였다.

현역과 동원 및 예비군 기구가 증편됨에 따라 1983년 예비군담당 국방부 부차관보실을 창설하였고 1984년에는 차관보로 기구를 격상시켰다. 이후 국방성내에서 예비군기구의 보좌관들과 주요참모들은 의사결정자로서 최고의 위치를 겸직하게 되었다. 미 육군의 예비군역사는 의무예비군 군단이 조직되어 교육 훈련된 장교들이 첫 배출된 1908년 4월 23일을 예비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미 육군의 주 전력인 예비군은 창설이후 등 많은 전투와 전쟁에 참전하여 크고 작은 공로를 세웠으며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중과 사랑을 받았다. 미국 예비군의 연혁과 주요참전 내용과 현황은 <표 3-1>과 같다.

127) 1970년 미국방장관 레어드(Melvin Laird)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1973년 국방장관 슬레진저(James Schlesinger)에 의해서 국방부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제 2차 대전 후 세계강국으로서의 국가적 책임과 월남전 이후 국방부가 직면한 재정적인 문제, 국방부 연련층 감소 등 인구통계학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여건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현역을 평화 시에 유지하는 것인데, 상비군과 예비군의 능력 및 전력을 효과적으로 최대한 통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상비군과 예비군의 능력 및 전력을 효과적으로 최대한 통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는 미군 예비전력이 현역군의 보조 개념으로부터 미군사력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성군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128) 양점석 외, 전계서, p.44.

<표 3-1> 미국 예비군의 연혁과 참전 현황

기 간	참 전 명 칭	주요 내용
1908.4.23	창 설	훈련된 장교 첫 배출, 의무예비군단 조직,
1914~1918	1차 대전 참전	8만 명 예비역 병사, 89,500명 예비역장교
1916~ 920	국가방위법 제정	예비군단(ORC)창설(현 육군예비군 전신)
1920년대		매년 2주간 예비역 장교교육(3~4년)
1930년대		예비역장교 관리, 국민보호군단
1940~1944	2차 대전	육군 장교 29% 예비역부대 참전(20만여 명)
1948		예비군 수당 법제화
1950	한국전쟁	40여개 예비군부대 참전(24만여 명 현역복무)
1961	베를린위기	현역동원(6만 여명)
1968	베트남전	5,900명 동원
1983	그라나다사태	기반시설 재건 지원(민사부대)
1989	파나마사태	질서확립 지원(민사부대와 헌병부대)
1990~1991	걸프전 참전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84,000명)
1992	소말리아	미국의 구호활동 지원(우편, 군수)
1995~1996	아이티	민주화 재구축 지원
1995~2001	보스니아	민사, 우편, 공병, 수송(330개부대)
2000~2001	코소보	NATO군 지원
2001~현재	항구적자유작전	본토방어(테러집단 공격대비)
2003~현재	이라크자유작전	이라크 안정화와 재건지원

* 출처 : <http://www.armyreserve.army.mil/ARWEB/MISSION/History.htm>(2009.6.30).

미국의 예비군은 약 145만 명으로 약 138만 명인 상비군과 예비군이 거의 동등한 구성비를 이루고 있으며 예비군에 대한 지원 역시 상비군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의 사람이 미국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국가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은 1973년 의무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으나 시민권 및 영주권 보유 남성은 병역의무 등록을 하고, 병역의무 등록자 중 지원에 의해 상비군이나 현역과 예비군 또는 주 방위군에서 근무하게 한다. 이는 평시에는 지원제이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될 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미국의 현역과 예비군 제도는 그 복무여부가 매우 큰 도덕적 기준이 되고 있는 국가이다.¹²⁹⁾

미국의 예비군복무 지원자는 기초 군사훈련을 6개월간 수료한 후 대기예비역과 긴급예비역 등 총 6년을 복무하며 긴급예비군에 편성된 자원은 거주지 변경 등이 통제된다. 미 예비전력의 핵심인 긴급예비군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무제도는 <표 3-2>와 같다.¹³⁰⁾

<표 3-2> 미국의 예비군 복무제도

구분	현역병 4년 복무	현역병 3년 복무	현역병 2년 복무	6개월 단기복무	특기자 3개월 복무
계	6년	6년	6년	6년	8년
현역	4년	3년	2년	6개월	3개월
긴급예비군	.	1년	2년	4년	.
대기예비군	2년	2년	2년	2년	8년

* 출처 : 국방부, 『외국의 예비군 제도』 (2004), p.81.

미국의 현역과 예비군은 유급 제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의 예비군은 평시에 자기 개인이 지원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에 대한 동원훈련과 전시동원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경제적인 손실도 보상해 주고 있다. 비상사태나 전쟁의 선포 전 대통령에게 90일 동안 동원할 수 있는 20만 명 이하의 선발 예비군을 사전 동원하는 제도는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기능별로 예비군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¹³¹⁾

129) 김현조, “국방개혁2020과 한국 예비군제도 발전방안”,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p.25.

130) 국방부, 『외국의 예비군 제도』 (2004), p.81.

131) 양점석 외, 전계서, p.56.

(1) 연방예비군(US Reserve)

연방예비군의 임무는 전·평시 전투 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부대 제공을 준비하고, 주 방위군 및 예비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부대 증편 및 손실보충을 통한 부대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편성은 육군은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및 교육훈련 부대로 편성하고 해·공군은 전투임무 수행부대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통제는 연방 정부 즉, 국방성에서 통제한다. 전투력은 육군이 30여만 명으로 12개 사단, 12개 지역 준비사령부와, 3개 지역지원단 및 24개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15만여 명으로 36대의 전투기로 편성된 2개 항공단과 8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은 13만여 명으로 3개 공군사령부와 항공기 447대가 편성된 35개 비행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10만여 명으로 1개 사단, 전투기 48대로 편성된 비행사단 및 1개 근무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²⁾

(2)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

주(州) 방위군의 임무는 첫째 비상사태 시 주를 방위하는 것으로 지진, 홍수, 허리케인, 화재 등의 재해 시 구조 및 구호와 폭동 시 소요 진압하는 것이며, 둘째는 전쟁이나 국가비상 시 국가(연방)를 방위하는 것으로 부대 단위 동원 및 작전투입, 전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편성은 상비군 수준으로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고, 50개주(州) 4개 자치구의 3,000여개 기지의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통제는 평시와 주(州)방위 임무수행 시에는 주 정부에서 하고, 국가(연방)방위임무 수행 시에는 연방정부에서 실시한다.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상비군의 증편병력으로 소집되어 현역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현역에서 3년 이하 복무한 자와 지원자로 편성된 예비역 장교와 병사로 구성된다. 예비군부대로 입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병력으로 구성되며 긴급예비군은 미국의 예비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¹³³⁾

전투력은 육군 주(州)방위군이 33만 여명으로 8개 사단, 18개 독립여단 및 항공, 포병, 헌병등 기타의 여단이 25개로 편성되어 있다. 공군 주 방위군은 10만 여명으로 폭격기 20대, 전투 및 공격기 700여대, 수송기 300여대, 지휘통제기 8대로 구성된 88개 비행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긴급예비군과 대기예비군, 퇴역예비군이 등이다.¹³⁴⁾

132) 상계서, pp.56-58.

133) 김현조, 전계서, pp.41-42.

긴급예비군(Ready Reserve)은 개인 또는 부대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시나 국가 비상시에 상비군에 증편되는 자원으로, 지정예비군과 비 소집 주(州)방위대원으로 구성된다. 지정예비군은 관련 군 장관이 지정한 예비군부대에서 비 소집 훈련되는 개별 긴급예비군 및 연차 훈련에 참여하는 개별 예비군 등으로 구분된다. 지정예비군의 범주는 현역복무 개시하기 전 훈련 중인 자도 포함된다.

지정예비군부대는 작전부대 또는 증편부대로 임무 및 훈련하기 위해 인력과 물자가 충당된 부대이다. 작전부대는 부대단위로 훈련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며, 증편부대는 동원 시 상비군 부대의 지휘권에 귀속된다. 지정예비역 부대는 부대 교육훈련을 참가하는 병력과 주 방위군으로 편성된 부대 또는 예비군부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병력 등 훈련된 병력들을 포함한다.

예비군부대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예비역의 개별적 구성원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고 동원 후 신속하게 보충되어야 할 상비군부대, 선별된 각 군의 기관, 연방비상관리처 등에 사전에 배속되게 된다. 현역으로 복무 연장중인 예비역, 장교복무 예비역(ROTC), 개별 긴급예비역대원, 군의 보건전문 학위 과정중인 자는 지정예비역으로 편입 및 보류된다.

대기예비군은 군 복무 완료 후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전체 동원이나, 총 동원 시에만 외교관, FBI, CIA 등 정부 내 비 군사기관의 요원으로 동원된다. 준비예비군을 이수한자와 예비군복무 지원자로 편성된 예비역 병사 및 장교로 구성된다. 대기예비군은 평상시는 평범한 국민으로 자신의 본업에 근무하고, 적시에 동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은 하지 않고 부대지정도 하지 않는다.¹³⁵⁾

퇴역 예비군은 20년 이상의 상비군이나 예비군 복무를 완료한 자로서 60세 까지 동원 의무가 지속된다. 예비군에서 퇴역한 자원도 전쟁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현역으로 복귀하도록 명령을 받고 준비예비군이나 대기예비군에 편성되어 장교와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퇴역예비군은 개별적으로 관리 및 동원하며, 현역과 예비군 조직에는 미 편성 되어 있다.¹³⁶⁾

134) 상계서, p.41.

135) 상계서, p.41.

136) 상계서, p.42.

나. 예비군 해외파병 운용사례

(1) 6.25 전쟁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기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군이 당면했던 최대의 문제는 병력의 부족과 준비태세였다. 정규군의 인가병력은 63만여 명이었는데, 이 중 36만여 명은 미국 본토에, 11만여 명은 극동사령부에 8만여 명은 유럽에, 나머지는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위군의 인가병력은 35만명 이었으며, 동원예비군은 25만 5천명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전장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 본토의 일반예비군으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4개 사단으로 구성된 1개 야전군, 1개 공수 연대전투단, 3개 중형탱크 대대로 구성된 1개 기갑여단, 그리고 포병 및 지원부대를 요청했다.

한국전 개전초기 투입 가능한 예비전력은 주방위군, 일반예비군, 그리고 동원예비군이 가용하였다. 미국 의회는 맥아더 장군의 신속한 병력지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1950년 7월에 징집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을 의결하여 현역과 예비군 동원이나 신병 모집에 소요되는 기간에 우선 대비토록 했다.

미 극동 사령부가 우선 의존할 곳은 일반예비군이었는데 일반예비군의 임무는 ‘미군의 일부로서 통상 미국 본토에 위치하며 공격이나 방어 임무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무장되어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미군은 극동사령부에 전투부대의 절반과 지원부대의 절반을 일반예비군에서 이관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반예비군의 전투준비태세가 미흡하여 일반예비군이 준비태세를 회복하려면 최소한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기존 전투부대에서 예비군과 신병을 훈련시키는데 정규 병력을 전환하게 되어 정규군의 병력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우선 한국전 이전의 동원계획은 동원 첫째 동안의 해외파견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결과 참전 첫째 동안의 전투손실 보충소요가 배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의회가 배정한 예산이 제한되어 일반예비군의 병력이 매우 부족하고, 비상시 병력증강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맥아더 장군은 8월 중순에 예비군을 미국 본토로부터 자신의 부대 보충병으로 즉각 수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의회는 맥아더 장군의 요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신속히 동원병력의 징집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승인했다.

다른 곳에서 공격이 가해질 경우 예비군은 동원기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

었다. 따라서 의회는 신속히 투르만 대통령에게 선택적인 근무를 통해 예비군을 사용하고 징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였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필수적이었다.

동원예비군은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육군의 장비가 별로 바뀐 것이 없었기에 신속히 훈련될 수 있었다. 부족한 자금과 낮은 충원률로 인하여 146,000명의 장교와 956,000명의 사병이 필요한 동원예비군의 부대들이 조직화될 수 없었다. 한국전 발발 당시에 많은 전투 및 근무 지원 부대들의 병력은 인가병력의 1/4 혹은 그 이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현역에서 근무한 장교들 보다 높은 계급이 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육군에서는 위관급 예비역 장교들만 소집하여 현역 장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였다. 역사평가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희소성이 있고 중요한 주특기를 가진 수백명의 영관급 장교만 한국전 기간 중 육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소집되었다고 한다. 7월 중순에 이르러 육군은 예비군을 강제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동원 대상은 장교 4만3천명과 병사 12만 5천명이었다. 동원 후 훈련이 시작되자 이제는 장비 부족문제가 대두 되었다. 극동에서의 상황과 군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집된 예비군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다. 이 부대들은 대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장비로 무장되었으며, 그나마 인가된 장비보다 턱없이 적은 양의 장비만 가지고 있었다.

가장 부족한 장비들은 차량, 무기, 통신, 그리고 정비에 필요한 장비들 이었다. 이러한 장비 부족현상은 예비군의 장비를 당장 필요했던 정규군에게 전환한 것에 일부 기 인하였다. 그러나 동원 예비군의 40%와 방위군의 34%를 동원함으로써, 졸속한 조치에 의하여 고도의 효과적인 인력 사용은 가능하지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한국전에 필요한 병력은 충원되었다.

(2) 걸프전

이라크가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점령했다. 이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침공을 격퇴하고 쿠웨이트를 회복하기 위해 미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월남전에서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국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미국 행정부는 동원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여론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동원령 선포전인 1990년 8월 9일까지 개별적으로 1만5백명의 예비군들이 자원 입대하여 사막의 방패작전 초기단계에 지원임무를 수행했다.

국방성은 확산되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역과 예비군 동원을 검토하고 중부군 사령관의 요구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역만 배치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동원예비군을 신속히 소집했다.

한국전 이후 40년만의 최대 동원소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령 선포 이전부터 예비군들은 자원입대하여 현역 임무를 지원하였고, 동원령 선포이후에 약 22만 8천 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걸프전에 참가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실패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선언하고, 국민의 여론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예비군을 동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후 전쟁에 참여했다.

미국은 총체전력정책을 통해 동원전력의 역할과 점유율을 계속 증대시켜 왔으며, 이는 걸프전에서의 승리를 미리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 섬머즈는 대부분의 미국 전쟁에서 예비군들의 보장능력은 결정적이었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시에 군과 국민간의 가교 역할이었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 예비역들은 ‘탁월한 삼위일체(국민, 정부, 지휘관과 그의 군대)’를 부흥시키는 이상적인 도구로써 의회의 지지를 굳건히 하고 전시(戰時) 작전에 대한 의회의 발언을 보증하였다고 동원전력의 역할을 주장했다. 그리고 1990년 10월 1일에 육군 예비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예비군부대에 대한 지휘, 통제, 지원 및 전시 예비전력의 준비태세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총체전력정책을 도입하고 군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맞게 예비군의 역할을 증대하였다. 군의 지도계층에 의한 총체전력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정책추진은 훗날 미국의 군대에게 승리를 미리 보장시켜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2월 10일에 최대로 예비군이 동원되었을 때 총 22만 8천여 명이 본토 군 기지, 사막의 폭풍작전과 기타 관련지역에 배치되었다. 동원된 예비군부대 주 임무는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 지원이었는데 그들은 각 군 지원능력의 절반이상의 몫을 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예비군들의 물자하역, 경계, 수송, 연료, 보급, 의료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막의 방패 및 사막의 폭풍 작전의 절차와 20년 이상 동안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는 대기 현역과 예비군 360,000명에 대해 현역으로의 소집을 승인했다. 대통령의 예비군에 대한 소집승인이 있기 전에 자원한 예비군들은 사막의 방패 작전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었다. 남서아시아로의 전개결정이 있

자마자, 공군 예비군으로부터 지원자들이 C-5, C-141, C-130, KC-135 항공기로 핵심적인 전략수송과 유조선 지원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즉각 반응했다.

1990년 8월에만, 공군예비군과 공군주방위군 지원자들은 전략수송임무의 43%, 공군재보급임무의 33%를 수행했다. 사막의 폭풍작전이 1991년 1월 16일 개시될 때까지 18만 8천여명 이상의 인원과 37만여 톤의 장비가 공군예비군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송되었다. 공군예비군 지원자들은 또한, 중요 정비, 의무, 민간건설, 공중 기지, 치안 작전 등 <표 3-3>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하였다.¹³⁷⁾

<표 3-3> 사막의 방패작전에 지원한 예비군 현황

단위 : 백명

구 분	8월 8일	8월 15일	8월 22일
계	595	7,675	10,658
육군주방위군	5	68	107
육군예비군	0	200	392
해군예비군	0	26	183
해병대예비군	0	50	50
공군주방위군	216	2,700	3,737
공군예비군	350	4,500	5,992
연안경비대예비군	24	131	197

* 출처 : 양점석 외, 『예비군 해외파병 방안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4), p.53.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구성군으로부터의 지원자들도 중요한 기술들을 제공하였다. 육군 예비군지원자들은 즉각적으로 긴급정수, 보급품 할당, 기타 지원품목들

137) 양점석 외 전게서, pp.52-53.

을 요청하였다. 해군예비군 지원자들은 C-9 항공기로 공중작전을 지원하였고, 중요한 의무, 군수지원, 정보, 화물운반임무 등을 수행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예비군들이 주로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분야 위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현역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국의 예비군들이 보여준 활동은 사막의 방패작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해외 파병예비군들이 펼쳐왔던 활동상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⁸⁾

사막의 방패작전 이전에 소집된 선발예비군 전투부대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사막의 방패작전 시 소집된 선발예비군 전투부대 현황

구 분		인원(명)
육 군	제 142 야전포병여단	1,410
	제 196 야전포병여단	1,490
해병대	제 14 포병연대	1,150
	제 4, 8 전 차대대	1,350
	제 24 보병연대 2, 3대대	1,610
	제 23 보병연대 3대대	890
	제 25 보병연대 1대대	760
공 군	제 152 전술정찰단	140
	제 174 전술전투비행단	450
	제 926 전술전투단, 제 169 전술전투단	1,005
해 군	기뢰제거	30

* 출처 : 국방대학교, 『군사동원론』 (국방대학교, 2004), p.88.

138) 이세영, 전계서, p.5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예비군들이 전투부대로 소집되어 현역과 함께 임무수행에 참여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이라크전

이라크전투에서 미국은 총 21만여 명의 동원예비군을 소집하였으며, 이라크 전쟁지역에서는 동원병력을 전투현장에 투입하거나 후방지역에서 작전지속지원 요원으로 운용하였고, 미국 본토에서는 연합군의 협조 및 경계임무 등에 운용되었다.

미군의 현역과 예비군 활용의 특징을 보면 현역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능력을 평가하여 혼합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파병 시에만 현역과 예비군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모든 대우와 훈련 등을 현역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파병 복귀 후에도 조직적이면서도 다양한 복지와 사기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현역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시 현역과 예비군 및 주 방위군 동원현황을 보면 <표 3-5>와 같다¹³⁹⁾

<표 3-5> 이라크 전쟁 시 예비군 / 주 방위군 동원현황

구 분		계(명)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작전초기	소계	40,000	19,552	9,291	2,056	9,501
	현역과 예비군	24,327	10,686	2,084	2,056	9,501
	주 방위군	10,673	8,866	7,207		
작전 종결 시		212,617	148,612	30,783	13,511	19,711

* 출처 :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 분석자료(2003), p.22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예비군에 대한 위상제고 노력과 다양한 사기대책으로 인해 미국의 예비군들은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더라도 동원이후 빠른 시간 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139) 이세영, 전계서, p.58.

2. 프랑스

가. 예비군의 연혁

1990년대 중반 까지 프랑스는 국가봉사제의 개념 하에 국민개별주의에 입각한 징병제 위주의 징·모 혼합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누구든지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는 직책은 물론 여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였다.¹⁴⁰⁾

병역기본원칙은 철저한 국민개별주의 고수, 군 소요의 우선 충족, 다양한 의무수행제도 도입, 직업과 사회와 학교생활이 연계되도록 소집 해당자들에게 병역 의무수행을 위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병역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징집병, 지원병, 장기복무지원자, 해외 복무병, 기타 정보처리 강사, 사관학교 교원, 징집관련 과학자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유지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병역 의무자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 군복무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높은 자율권을 부여한다.

프랑스의 예비군은 22.5만 명의 상비군보다 2배 정도 많은 약 41.9만 명이다. 1996년 프랑스 대통령이 직업군인 제도를 결정하며 새로운 예비군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직업군인 제도는 전략적인 상황 하에서 커다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이었다. 직업군인 제도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군대의 작전 가용성과 적시성을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예비군도 국가안보 상황 변화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고, 1999년 법령에 의해 예비군은 작전예비군과 시민예비군의 두 가지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시민예비군은 작전예비군을 제외한 다른 예비군 신분의 시민예비군이 존재하는데, 시민예비군 임무와 구성은 작전예비군과는 완전히 상이한 것이며, 이러한 시민예비군의 개념은 국방과 국가 간의 교류 및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계약이 끝난 작전예비군 또는 민간사회에서 모집된 무료로 봉사하는 예비군들로서, 이러한 예비군은 국가와 군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연결의 역할을 하며, 이들은 군인이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보수 협력자 신분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작전예비군은 군 작전활동의 중요성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적의 위협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든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군의 작전운용 능력을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140) 양점석 외, 전게서, p.65.

중요하다. 작전예비군 제도는 군에서 복무를 마친 전역군인, 또는 민간인들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시켜 배치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들은 군부대의 작전에 개입하는 시점부터 현역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사회로 복귀한 전역 군인은 신중히 고려한 가운데 5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것을 희망한 인원들이며,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주요한 전쟁 상황발생 시 필요한 자원병들을 보충하기 위해 작전예비군으로 소집되었다. 이런 작전예비군은 해외파병을 통해 작전 임무를 수행중인 현역 병력의 대체, 군에서 보유하지 않은 특수한 능력(지리학자, 보도, 통역, 법무 등) 국토에 대한 안전 및 보호임무에 적극 참여하는 등 파트타임 개념의 근무를 하는 군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예비군 해외파병 운용사례

프랑스는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정국이 불안정한 시기로 정규군 건제부대를 파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몽크라르’로 불리지는 베르느네 중장이 “예비역과 현역 지원병으로 편성되는 프랑스 독립부대를 창설해 파병하자”고 제안했다. 마침내 1950년 10월 1일 유엔군 프랑스 대대가 편성됐다.

몽크라르 장군은 프랑스 대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본인의 장군 계급장을 반납하고 5개의 깃털 장식이 달린 중령 계급장을 달았다. 한국전에 참전한 프랑스군은 여러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하였다. 특히 지평리 전투는 유명하다. 지평리는 경기도 양평군의 작은 마을로 여러 방면으로 도로가 교차되고 고지로 둘러싸여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51년 2월 프랑스 대대는 미23연대 전투단에 배속되었다. 미 2사단장은 지평리가 전투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양평의 남쪽인 여주로 전투부대를 철수시킬 계획이었으나 미 제8군 사령관으로부터 지평리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 중공군은 유엔군 주력의 측면을 위협해 지평리를 공격하면 유엔군이 철수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중공군 제39, 40, 42군이 가평지역을 확보하고자 공격하여 제42, 66군으로 운주 일대의 유엔군을 고착 시켰다. 미군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는 쌍터널 지역에서 혁혁한 전투의 유공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고 사기가 충천돼 있었다. 몽크라르 대대장은 중공군 포위망을 좁히면서 접근하자 중공군을 지근거리까지 유인하도록 명령을 하달하고 사격을 통제하면서 육박전에서도 승리하도록 지휘해 중공군을 수차례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¹⁴¹⁾

141) 이세영, 전계서, p.59.

경기도 가평지역의 지평리 전투는 증공군과 싸워 유엔군이 얻은 최초의 전술적 성공이었고, 그동안의 전투에서 유엔군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전투였다. 이처럼 프랑스 동원병력의 한국전 참전의 전사에서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전투는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인 동원병력도 전투부대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사례이다.

3. 스위스

가. 병력동원 제도

스위스는 유럽 대륙의 중앙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산악 소국이며 연방국가(26개주)로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속한다. 국방여건은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1895년에 빈 조약에 의해 영세 중립국으로 국제적 지위를 보장 받았다. 따라서 “스위스는 안보정책상 중립정책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헌법상 상비군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평시 국경경비, 항공초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극소수의 상비군(3,400여 명 수준)만 보유하며, 전시에는 민병군(62.5만 명)을 동원하는 징병에 의한 민병제를 채택하고 있다.”¹⁴²⁾

1914년 세계 1차 세계대전시에는 25만 명의 민병군을 동원하여 동·서부 국경 수비를 강화하여 인접국의 침략을 저지하였다. 세계 2차대전시(1939년)에는 40만명의 민병군을 동원하여 전쟁 결의를 천명함으로써 독일군의 침략의지를 분쇄하였다. 1991년에는 중립국이지만 세계평화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가를 결정하였다.

나. 예비군 운용 제도

상비군을 제외한 민병군은 정예군, 보충군, 후비군 및 민방위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만 19세에 징병검사를 통하여 민병군을 분류한다. 징병검사 후 적격자는 신병 기초훈련 17주 이수 후에 정예군으로 편입시키고 부적격자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시키되 50세까지 병역 면제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 면제자중 보조근무 적격자는 민방위에 근무토록 하고 있다.

142) 양점석 외, 전게서, p.69.

스위스의 민병군 편성은 <표 3-6>과 같다.¹⁴³⁾

<표 3-6> 스위스 민병군 편성

구 분	연 령	편 성 부 대
정예군	22~32세	· 병역의무 적격자 · 전투부대(보병, 포병, 방공, 공병) 편성
보충군	33~42세	· 정예군을 필한 자 · 전투부대 일부, 국경 / 요새지역 수비부대 편성
후비군	43~50세	· 보충군을 필한 자 · 후방지역 근무부대 편성
민방위대	20~60세	· 보조근무 부적격자와 51~60세 병역 필한자 · 지역 / 직장 민방위대 편성

* 출처 : 양점석 외, 『예비군 해외파병 방안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4), p.70,

“예비군 지휘체계에 있어서 평시에는 국방장관이 총참모장을 통하여 지휘하고, 전시에는 군 정권은 국방장관에 있고, 군령권은 총참모장에게 있으며, 총참모장은 의회에서 임명한다. 대통령에게는 전·평시 군 통수권이 없으며, 평시 국방장관은 국방위원회와 군령회의 보좌를 받아 군사문제를 처리하며, 국방위원회는 총참모장, 훈련단장, 군단장 및 방공사령관으로 구성되고, 군령회의는 총참모장, 훈련단장 및 총무국장으로 구성된다.”¹⁴⁴⁾

민방위 자원관리는 지역 및 지구 병무관서와 지역군 부대장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초에 지정된 부대는 계속 지정토록 하고, 민병군에 대한 진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 훈련은 국방성 예하 훈련단에서 예비군 훈련을 전담하고 있으며, 입대 전 훈련과 신병 기초훈련, 민병군 연계훈련으로 구분하여 신분별로 실시한다.

보상제도로 교육기간은 봉급제에 의한 보상을 실시하며, 보급지급 기준은 소득활동이 있는 직장인 또는 고용주는 봉급의 25%를 기본으로 한다.

143) 상계서, p.70.

144) 상계서, p.71.

4. 독일

가. 병역동원 제도

독일은 기본적으로 국민 개병제에 의한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4만여 명을 징집하고 있다.(실제는 임무복무제 직업군인을 모병하는 등 정모 혼합제를 운용) 병역의 종류는 현역기본 복무, 동원대기, 동원소집훈련(군사훈련), 전시복무 등으로 구분된다.¹⁴⁵⁾

첫째, 현역기본복무는 현역복무를 의미하며, 복무기간은 10개월로 통상 입영연령은 19세 이후이다. 복무 만기 후 지원에 의하여 복무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최대 13개월까지이다.

둘째, 현역기본복무 후 복무연장을 실시하지 않은 의무자는 제대와 동시에 2개월간 동원대기역에 편입되며, 국방성의 명령이 있을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동원 소집훈련은 1회 3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총 훈련일수는 병 9개월, 부사관 15개월, 장교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조기 제대자나 군복무 적격자임에도 징집되지 못한 자는 현역 기본복무 기간만큼 소집훈련 기간이 연장된다. 현역복무를 거부하는 자는 군복무 거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봉사 또는 민사복무(Civildienst)로 병력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복무기간은 13개월이다.

넷째, 전시복무 또는 비상시 복무는 국가비상시 기본병역 의무자에게 3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대자도 소집명령이 내려진다.

나. 예비군 동원제도

(1) 예비군제도

비상시 및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군은 육군 35만 여명, 해군 1만 여명, 공군 7만 여 명으로 총 44만 여명에 이르며, 예비역 의무복무 기간은 병의 경우 45세, 부사관 및 장교는 60세 까지 이며, 복무 소집기간은 각각 4년, 7년, 및 10년이다.¹⁴⁶⁾

편성된 예비군은 거주지 인근지역의 군부대에 입소하여 개인훈련과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개인훈련은 개인 체력과 전투력 수준유지 및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며, 동원훈련은 현역과 예비군부대의 전술훈련 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한다. 개인훈련은

145) 양점석 외, 전계서, p.72.

146) 상계서, p.72.

회당 2주내지 3주이며, 동원훈련은 매년 혹은 격년주기 단위로 일정 기간을 훈련을 받고 있다. 예비역 복무기간에 진급이 가능 한데 장교는 대령까지 부사관은 최고 계급인 특무상사까지 진급이 가능하다. 동원훈련 규모는 연간 4천 여명 수준이다. 훈련의 종류는 부대훈련, 지휘훈련, 연합작전훈련으로 구분된다.

부대훈련에는 전투훈련, 군수·의무 지원훈련, 동원훈련 및 지휘조 훈련으로 나누어진다. 전투훈련은 중대에서 군단까지의 전술훈련을 일방 또는 쌍방훈련으로 실시하며, 제병협동 전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수·의무지원 훈련에서는 전술상황에 적합한 보급, 정비 등 군수지원과 의료지원을 훈련한다. 동원훈련에서는 부대 및 시설의 인적·물적 동원준비태세훈련을 실시한다.

지휘훈련은 지휘관 및 참모 팀만 참가하여 지휘참모훈련 및 전술토의 훈련을 받는다. 완전편성 및 감편부대에 소속된 동원예비군은 소속 부대장의 결정에 따라 개인훈련과 동원훈련을 받게 되며, 감소편성 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은 격년마다 12일 이내의 동원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부대는 동원훈련이 없는 해에 지휘조만 훈련한다.

(2) 동원제도

독일은 NATO의 구심적인 역할과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인하여 인접 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자적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자체 군사력 건설에 일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전시에 NATO 군이 요구로 하는 동원소요만을 편성하는 범위 내에서 전·평시 비상대비를 위한 동원관련 법과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1954년 10월 군 창설과 동시에 병력 동원법과 물자 동원법을 제정하였으며, 동원에 대한 권한은 이원화 되어 있어 전시에는 수상이 총괄하나, 평시에는 국방장관이 담당한다.¹⁴⁷⁾

모체부대 동원제도가 정립되어 있어 전역 10개월 이내인 대기예비군은 전역 당시부대로 소집된다. 전시 동원을 위하여 500개소의 동원센터와 155개소의 훈련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동원의 형태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동원은 전시 정부의 결정에 따라 동원이 이루어지며, 부분동원은 국방장관의 권한에 의해 12개월간 동원기간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4.5만~5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자원이 편성이 되어있다. 불시 동원 시에는 48시간 내 소요의 80%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⁴⁸⁾

147) 상계서, p.73.

148) 상계서, p.73.

제2절 시사점

앞에서 제시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동원병력을 상비군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전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전 세계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비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력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특히,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동원예비군들이 보여준 눈부신 활동상은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서슴없이 성공의 열쇠를 이들 동원된 예비군에게 돌리는 공식적인 평가까지 나왔음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원 분야의 대부분을 동원된 예비군들이 담당하였음은 물론 현역과 함께 전투에도 참가하여 현역 못지않은 놀라운 활약상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외국의 동원사례에서 연구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현역 병력은 국제적인 흐름과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줄여가면서, 예비전력을 중요한 국가전력으로 동시에 질적인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안보는 오히려 튼튼히 해나가고 국방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예비군에 대한 국가 및 국방차원에서의 위상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예화 노력과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어느 나라라고 해서 예비군들의 부모나 가족들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 또는 위험지역에 자신의 남편, 아들, 아빠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파병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가가 예비군의 역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고 가족들도 국가를 위해 파병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는, 파병에 참가한 예비군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을 가지고 파병대열에 동참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없는 이유일 것이다.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서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조직 등의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복지와 보상분야에서 국가 방위 임무수행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국가에서 소집하는 각종 소집훈련이나 동원훈련 시 참여여건이 보장된다. 또한 면세품 구입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 등 상비군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연금은 일정기간 복무 후 지급되는데 전임(Full Time) 근무자는 20년 후에 지급되고, 기타는 20년 근무 후 60세부터 지급되는 등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국가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속 선진국이라 자처하면서 국제 질서를 조율해가는 선진국들의 동원된 예비군들도 해외에 파병되어 얻게 되는 파병지역에서의 다양한 평화유지활동 경험들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켜내는 큰 힘이 되었다는 점 등의 교훈을 도출했다. 이들 국가의 동원병력에 대한 인식은 예비군은 전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일상의 업무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많은 애국선열들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오래전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 왔듯이 이들 역시 파병지역에서 복귀 후에도 국가를 지켜 가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외국의 동원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도 동원 및 예비전력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향후 상비 병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대규모의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원체제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는 병력의 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이 바로 동원 및 예비전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동원병력과 예비전력의 유용성과 정예화의 필요성은 잘 알면서도 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미진하다. 예산반영 측면만 보더라도 예비전력예산은 국방예산 반영 비율 중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전력화의 수준도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동원병력의 법적인 신분을 국군의 일부로 재정립하고 전시법인 부분동원법을 평시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동원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을 넘어 선진국들이 보여준 사례의 교훈처럼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추세, 국가안보의 새로운 평가와 방향모색,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용, 예비군의 위상제고,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균형 발전모색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한국군 동원병력 해외파병 여건분석

한 나라가 군대를 파병하거나 타국의 군대가 자국에 주둔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외교정책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외교정책의 핵심 기준은 국가이익이다. 일반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분쟁지역에 대한 참여를 국가 위상과 이미지 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과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쟁적으로 분쟁지역에 참여하여 국가이익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의 최초 해외파병은 국제적으로 냉전시기인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이었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다국적군의 일부로 이라크에 파병한 바 있으며,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1993년 최초로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병했고, 1995년 10월에는 앙골라에 공병부대를 파병했다. 1999년 10월에는 동티모르에 최초로 보병이 편성된 상륙수부대를 다국적군으로 파병한 외에도 서부사하라에 국군의료지원단, 인도와 파키스탄과 그루지야에 유엔정전감시단 등 대·소규모의 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을 외교적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외교적 측면

1. 국제 안보협력 강화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더 강력한 힘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도 해외 파병한 목적도 한·미 동맹 유지를 강화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의 국력이 증대되고 국제적 위상 또한 상승함에 따라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에 갖는 역할과 기대도 병행하여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안보는 현재와 미래에도 국제적 협력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 자주국방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 구축을 기본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스스로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미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현재 불안정한 안보상황하에서 전쟁 억제력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미래의 한·미 동맹은 현재보다 더욱 강력해 질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한국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안전보장 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며, 국군의 해외 파병은 이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적 방안이며,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국가안보도 보장 받는데 큰 기여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해외 파병결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대테러경계 강화가 필요함을 재강조하고 있다.

국제테러는 대표적인 초국가적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갈수록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전쟁이 끝남에 따라 국제적 테러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국은 테러의 공포와 위협에 만반의 경계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와 병력을 파병한 한국도 이슬람권 무장 세력과 테러집단의 목표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 졌다.

국가적 개인적 테러는 예방되어야 하고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서도 회피할 수 없고 모두가 원하지 않는 폭력으로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테러에 관한 국제적 정보 협조체제 구축과 정보수집 등 대테러 대응작전에 면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다음과 같이 다방면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2016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외교·안보·경제적 분야에서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새롭게 대응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 현 정부의 대통령도 첫 해외 국민 방문을 미국으로 정했던 것이고 미국과 우호적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측면의 활동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 서기전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군사력을 8만에서 24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아프간 재건과 관련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주목하여 국가이익 증대를 위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협의채널의 지속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의 개발 등 직접적인 우리의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지역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정당성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해외파병은 국내정치의 정파적 이해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했다. 사실상 해

외 파병과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해외 파병활동이 유엔과 파병요청 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것은 유엔과 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협조적이고 긴밀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우리의 자세는 남북한 분단의 불안한 안보환경에 놓인 현실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파병활동으로 국가의 위상이 상승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강화되면 부차적으로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UAE로부터 유전광구 3개를 확보했다. 이는 UAE가 과거 35년간 타 국가에게 허용한 적이 없었던 일이다. UAE의 정유시설 프로젝트 7개 중 5개를 한국이 수주를 했는데 이런 사실은 UAE가 한국에 대한 특별하고도 진폭적인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었던 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는 파병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동시에 국내에서 파병에 따른 부정적 여론과 논란이 대두될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새로운 형태의 해외파병이라 할 수 있다.

아크부대의 파병은 기존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 파병지역의 상황이 달랐다. UAE는 분쟁지역도 아니었고 전쟁과 재난상황이 발생한 국가도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으로 분류된 기존의 해외파병 지역과는 달리, 부유한 국가에 우리 군을 파병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군 특진사와 연합훈련을 통해 UAE의 군대와 전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 했던 UAE 정부의 의도와 UAE와 국가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시키려 했던 한국 정부의 의도가 적시에 일치해 결정되었던 것이다.

아크부대는 UAE와 한국과 신뢰구축의 표상이자 상징이며 양국 간에 경제·외교·국방 등 많은 분야에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아크부대는 UAE 현지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얼굴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국가위상 강화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한국군의 명성도 같이 상승하였다.

우리 입장에서 아크부대는 “UAE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이자, “글로벌 협력시대에 걸맞은 군사협력의 이상적 모델”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아크부대는 우리의 기존 해외파병의 정책과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군은 물론 국가의 차원에서도 아크부대와 같은 국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해외파병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국제평화에 기여

국제 평화유지에 기여한 한국의 동티모르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은 대대단위로 파견된 상륙수부대 1진이 동티모르에 전개되어 작전을 실시한 약 3개월간 다국적군(INTERFET)체제 하에서 활동과 이후 8진의 완전철수에 이르기 까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담당했던 유엔평화유지군(PKF)의 활동으로 크게 2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군은 최초 동티모르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라우텡(Lautem)지역에서 동부여단의 일부로 필리핀군과 태국군이 함께 동티모르의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2년 1월 유엔의 요청으로 요르단군을 대신하여 서티모르내 고립지역인 오쿠시(Oecussi)지역으로 재배치되어 유엔 평화유지군(UN PKF)사령부의 직접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상륙수부대는 2002년 5월 동티모르의 독립과 함께 출범한 유엔동티모르지원단 합동참모대학,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활동계획에 의해 4년 동안 제1진부터 8진까지 연인원 3,300여 명이 파병되어 활동하다 2003년 10월 전원 철수하였다.

특히 우리군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군(UN PKF)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된 ○○○ 장군은 창설초기 어려운 상황에도 전 세계 30여 국가에서 파견된 참모요원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여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수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국적군 체제하에서의 파병된 각국의 임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264호에 명시된 동티모르에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UNAMET의 활동을 지원하며 능력범위 내에서 인도적 지원 작전을 촉진하는 것”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한 다국적군의 작전개념은 Oil-Spot식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작전을 단계화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상륙수 부대가 이처럼 치안유지에 적극적인 작전을 전개하자 마을 주변 산으로 피신했던 주민들이 다시 복귀하였다. 이후 학교들도 정상적인 학업을 진행하였고 종교행사도 보장되었으며, 주민들이 평상시의 생활을 누리고 거리로 나와 물물교환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변화되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변화되었다. 11월 25일 상륙수부대를 방문했던 Cosgrove 다국적군 사령관은 “그 동안 로스팔로스과 콘항 일대는 작전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국군이 들어온 이후 주민들이 대거 복귀하는 등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면서, “이들의 평화는 한국군의 우수성에서 모두 비롯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의 상륙수부대는 2002년 2월 1일 가장 먼저 다국적군 가운데 UN 평

화유지군으로 전환되었다.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 상록수부대는 기존의 부대 운용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취약지역에 대한 상주 작전을 성과있게 전개하여 UN TAET이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동티모르의 치안상황 호전, 유엔의 재정여건과 동티모르 방위군의 창설 등에 따른 PKF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상록수부대는 오쿠시(Oscussi)지역¹⁴⁹)에 재배치가 추진되었다.

유엔은 상록수부대가 오쿠시(Oscussi)지역의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을 맡아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동티모르 지역 국민들이 상록수부대의 주둔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엔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였다.

상록수부대는 라우텡 지역의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을 새롭게 창설된 동티모르 방위군에 인계하고, 2002년 1월 10일부로 오쿠시(Oscussi) 지역으로 이동해 요르단 부대로부터 책임지역을 인수하였다. 오쿠시(Oscussi) 전환된 이후로 상록수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도네시아와의 국경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었다.

국경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동티모르와 서티모르 국경사이에 지상의 국경선이 제대로 확정되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상록수부대는 인도네시아군과 국경을 연하여 양쪽으로 1Km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하여 국경선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완전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한국군이 유엔과 미국의 요청으로 동티모르에 상록수 부대를 파병하여 각종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동티모르와 서티모르의 평화는 물론 국제평화에 기여하였고, 4년여 동안 3,300 여명이 유엔과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군 평화유지 활동상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유엔에 가입된 국가로서 다국적군 임무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두 가지 소임을 다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원병력도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다면 현역 장병의 임무수행처럼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이익과 한국의 동원병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동원병력을 해외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많은 법령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하겠지만 국제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국가이익의 활동을 위한 파병은 굳이 현역과 동원병력을 구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149) 오쿠시(Oscussi)는 서티모르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동티모르이 영토로 수도 딜리(Dili)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동 서티모르 국경으로부터 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80%가 300~1,200km의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형성 되어 있다.

3. 국제적 국가위상 강화

한 국가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정책 결정요인은 국가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 외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으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외부요인이며 어떤 요소가 내부요인을 구성하는지의 변수들을 식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파병정책이 결정될 때에는 그만큼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요인을 식별해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이 집행되는 절차와 과정도 불확실하므로 정책 결정요인을 모두 찾아내고 정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해외파병 정책은 유엔에서의 입지와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인접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동맹국과 파병 요청 부대와의 특수성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 그중 파병정책 결정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외교·경제·안보적 영향이 주는 주요 변수를 찾아내고 이 변수들을 비슷한 성격에 따라 묶는 일이 필요하다. 식별되지 못한 변수도 파병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식별된 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약할 뿐이다.¹⁵⁰⁾

국제적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와 동북아가 우리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와의 조화 속에서 동북아의 지역정세와 연관성 등을 살펴 깊게 판단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중견국의 외교를 위해서 적극적인 리더십과 현실적인 지정학적인 한반도의 위치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신뢰가 떨어진 동북아에서 한국의 국제적 국가위상 강화를 위한 글로벌적인 국가의 정체성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6·25전쟁 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 나라를 지킨 경험이 있으므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 유엔으로부터 진 빛을 갚아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할 때 국제적 국가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다. 이는 곧 불안정한 현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남·북이 대치한 안보불안에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투자를 꺼리는 심리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의 현실은 외교·안보·통일·경제문제가 국민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요청과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소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50) 남궁곤, “외교정책 결정 요인”,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 명인, 2009), p.44.

제2절 정치적 측면

1. 파병의 당위성

한 국가의 파병정책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해외파병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통해 다양한 실제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체계적이고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노력을 정책이론이라고 부른다. 정책이론을 통하여 파병정책이 계획되어, 결정되고 실행되며, 실행의 결과가 다시 입안의 과정에 환류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해외파병은 국내정치와 국외정치 등의 다양한 요소가 연계되어 상호조정과 절충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국내·외 다각적인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을 병행한 이론을 분석의 도구로 활용한다. 로즈노(Rosenau)는 정책 결정과정을 정부와 사회, 체제와 역할, 개인 등 5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¹⁵¹⁾ 엘리슨(Allison)은 과거 쿠바의 미사일 사태를 설명하며 관료정치의 모델, 조직 형태적 모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행위의 의식적인 선택을 결과로 보는 것을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 한다. 조직 형태적 모델은 거대한 조직들이 미리 규정된 행위의 패턴에 따라 작품한 일종의 산출로 본다. 관료정치 모델은 다양한 행위자가 국가이익, 조직이익, 개인이익에 따른 논리의 결과로 보는 모델이다. 대부분 국가들의 정책결정 상황을 합리적 행위자, 관료주의인 정부정치, 조직 형태적 모델 등 3가지에 기반을 둔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¹⁵²⁾

작은 배도 급격히 방향을 바꾸려면 많은 배와 탑승자에게 무리가 따르는데 하물며 국가 단위에서 정책의 급격한 방향조정은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정당한 명분과 최소한의 준비시간이 부여되지 않으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본 상식이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당연히 느껴지는 지난 새마을 운동과 중동 진출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리 쉽지 않은 결단이 요구되는 정책이었다. 새마을 운동이 1970년대에 전개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전 세계적인 오일쇼크로 중동에 달려가 넘쳐날 때 우리 한국정부가 중동 사막의 악조건을 극복하며 중동으로 달려가지 않고, 국내 제조업의 외수확대 경제정책에 치중했다라면

151) Rosenau, James N.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 Nicholas Publishing Company, 1980)

152) Allison, Graham T. Zelikow, Philip. *Essence of Decision :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ition* (Pearson Education Publishing, 1999).

아마도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세계 초강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와 중국 등 지정학적 강대국사이의 국제질서 관계, 경제정책 전략에서 후세인이 국가전략을 잘못 선택한 결과였다.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전쟁개입의 정당성을 대량살상무기를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두 나라 정보의 왜곡과 불확실성 때문에 곤경에 처했지만 명확한 정보가 있었다 해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받을 붙이지 못하는 영역에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을 불러들인 것은 단기적으로는 반미 정서를 통한 국민통합에 부합하는 방안이 되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흥망에 치명적 타격을 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이념이 지배하는 지정학적 동맹의 시대”가 마감되고 “국익과 경제 중심적 국가전략이 동맹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전개됨을 알리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¹⁵³⁾

이렇듯 국가 간의 전쟁도 이에 따른 파병이나 파병의 요청도 정치적 당위성이 있어야 국제적으로도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발생하는 전쟁을 자국과 한 나라만을 위한 경제 중심적이고 국가전략의 시각이 결여된 과거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은 이제는 국제 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의 동원병력 해외 파병도 정치적으로 파병의 당위성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해외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마땅하다. 한국이 해외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총 13차례로 모두 헌법 5조에 있는 ‘국제평화’가 헌법적 근거였다. 1991년 유엔에 가입 후 1993년 7월에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로 소말리아 재건을 위한 상륙수 부대를 최초로 파병하면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획기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고, 한국 정부는 유엔과 국제평화에 지속 기여하기 위해 해외파병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국군의 해외파병 시 마다 파병지에서 성과와는 별개로 국제 사회로부터 파병을 요청받고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정치적

153) 김재두, “한국의 파병과 한반도 안보질서”,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4), p.4.

사회적 많은 갈등이 발생되었다. 특히 파병의 목적과 파병부대의 임무수행과 형태 등에 따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와 동맹국으로부터 국가의 신뢰를 저하시키기도 하였다.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의 해외파병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남·북이 대치한 상황과 한·미동맹의 한반도 특수성이 파병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파병의 유형과 부대, 파병의 형태와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서 정책 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상이했다.

국제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그리고 국방협력활동 등 파병 형태별로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국제 평화유지활동은 일반적으로 파병명분에 대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였고 정부중심의 파병정책을 추진하여 마찰 요인이 많았고 파병준비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과 한·미동맹의 관계를 고려하여 파병이 추진되었고 정부가 파병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 파병이 추진되었으며, 반미운동의 영향과 현지의 위협을 고려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했다.

국방협력 활동은 타 파병의 형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이 약했으며, 국가이익 창출 수단으로 군사력을 활용하여 파병의 명분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였다.

파병유형별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경우는 파병명분이,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의 경우에는 한·미동맹 관계가, 국방협력 활동은 국가이익이, 전투병 파병은 장병의 신변안전 문제, 비전투병 파병은 정치·사회적 관심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예상되는 정책결정 영향에서 파병 유형과 형태별 우선순위가 실제 사례에서 제시한 우선순위가 다른 것은 파병 사례별 외부변수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각된다.

국제 평화유지활동은 국가적 이익의 긍정적인 명분을 최대한 홍보하고,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한·미동맹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구축 정착을 알리고, 국방 협력활동 파병은 국가이익과 자주국방을 위해 파병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해외파병과 관련하여 파병 유형별 위험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적 홍보를 통해 대군신뢰도 증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이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명분에 의해 파병하는 것인가? 와 파병 요원들이 안전한가? 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결과,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다국적군 평화활동 모두 국제적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는 물론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책 결정자들이나 국내 여론은 국제 평화유지활동은 상당한 공감을 갖고 있지만, 다국적군 평화활동에는 극단적인 반대를 하는 양면의 모습을 보였다.

결국, 얼마나 많은 병력을 어떤 기준과 여건에서 파병 할 것인지, 파병할 경우 주요 임무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과 다양한 사회집단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이를 법적과 제도적으로 정립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 2년 임기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출함에 따라 유엔과 국제사회의 기대가 더한층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유엔과 국제사회의 파병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파병정책을 정부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계의 전문가와 사회 지도층 인사의 의견청취 그리고 국민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은 문제가 발생하여 수습하고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파병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평가와 실익 등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상이할 때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고 결국은 법안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미 만들어진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국제 평화유지 활동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협력활동 등 파병 유형별 상비부대에 동원병력을 포함하는 규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파병 동원병력의 신변안전

우리나라는 군인이 각종 훈련, 작전, 평화 유지활동 등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전사자·전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의 기본이 되는 군인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방부훈령으로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이 있으나 국외 활동 중 발생된 전공사상자의 처리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채 “UN군 재해보상규정에 의해 보전 처리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¹⁵⁴⁾

이와 같은 신변상 보장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 유지활동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대책과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군인에 대한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재해보상제도의 준비와 시행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한국군은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자이툰부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의료·공병부대인 동의·다산부대 등 13개 국가에서 활동 중이다. 파병된 한국군 안전문제가 더욱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추가 파병이나 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앞으로 파병국의 현지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미군과 더욱 밀접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한국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 평화유지를 위하여 일정부문 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외에 파병된 한국군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귀한 자녀들을 국가이익을 위해 파병에 동의하고 성원할 것이며 해외파병에 지원하는 현역 장병과 동원병력도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것이다.

동원병력의 파병 국가나 파병 유형도 국방협력 분야와 인도적 지원 분야 등 비전투 지역 국가와 국제적 전후 복구지원과 의료지원 등의 요청이 있는 국가나 지역의 파병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파병 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구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파병 시 사고에 의한 국가 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예방은 물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54) 육군본부, 『평화유지활동』 (1999), 부록, p.12-1.

제3절 경제적 측면

1. 국가 경제에 기여

국가 안보에 있어 경제 중심적 접근전략이 가시화된 것은 1993년 초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로부터 싹터 왔었으며, 미국의 경제적 현실 역시 국가주도의 경제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상태였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적 통상과 투자의 확대를 외교정책 최고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남미와 아시아와의 새로운 외교통상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 회사들에 대한 해외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해외시장의 문턱을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번영은 미국과 서로 무역을 하거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주요 자원을 공급하는 주요 지역들의 안전에 달려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국방부와 연구기관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고, 미국방대학교 부설기관인 국가안보연구소가 매년 출간하는 「1999년 전략평가」에서는 “국가안보는 세계 경제와 성공적인 관계정립에 달려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⁵⁾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에는 이미 이데올로기적 대립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맹과의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인 이념동맹보다 경제 중심의 국가전략에 따른 국가적 동맹의 재편이 가장 주목할 수 있다.

냉전시절의 시장경제체제 진영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국가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실체도 다각화되면서 초국가적인 위협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마약이나 테러 등 사회적 현상과 비국가적 실체 등이 보다 큰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한국의 베트남파병은 실질적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경제이익이 거론되었다. 경제이익이 파병의 결정요인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당시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경제구조에서 원조액 감소와 무상원조가 차관형태로 전환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¹⁵⁶⁾

155) 김재두, 전개서, p.6.

156) 유병용 외, 『박정희 시대의 한·미 관계』 (서울 : 백산서당, 2009), pp.34-35.

한국이 월남에 파병한 병력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1만여 명이며 그 중 4,천여 명이 전사하였고 부상자수도 1만5천여 명에 달했다. 한국의 대 베트남 경제활동 수익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한국의 대 베트남 경제활동 수익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합 계	19.5	60.9	153.6	171.1	200.4	204.8	139.3	83.2
수 출 액	14.8	13.9	7.9	5.6	12.9	12.8	14.5	12.5
물품군납	2.0	9.9	12.0	32.4	34.2	57.3	21.3	15.0
용역군납		3.3	36.5	48.1	55.3	52.3	26.5	9.2
건설군납		3.3	14.5	10.3	8.4	7.4	8.9	3.1
군인송금	1.8	15.3	31.4	34.3	33.0	39.6	32.3	26.8
기술자 송금		9.1	34.4	33.0	43.1	28.0	3.0	3.9
특별보상지원			3.8	4.6	10.8	15.2	13.0	12.0
보 험 금		1.1	5.8	4.1	3.8	2.1	1.3	0.7

* 출처 : 유병용 외, 『박정희 시대의 한·미 관계』 (서울 : 백산서당, 2009), pp.34-35.

1965~1972년 동안 대 베트남 수출, 물품과 용역군납, 군인과 파견된 기술자들의 송금을 포함한 경제적 수익은 약 10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군사적 원조의 증가였다. 1961~1965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 받은 군사원조는 연 평균 1억 3,700만 달러였고 1966년~1972년까지 7년간 총 31억 5천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았다.

한국이 2003년 이라크에 추가로 병력을 파병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11호 (2003. 10. 16)의 결정에 따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과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이었고,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의 위상에 맞는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었다.¹⁵⁷⁾

157) 파병부대 편성의 특징은 재건업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 그리고 생존성이 보장되는 부대를 편성한다는 것이다. 재건지원대대는 전후복구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자치행정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병부대 역시 전후복구 지원활동과 기술 학교운영 등 소위 친한화 활동을 하게 되며, 의무부대는 현지인 및 우리 장병의 진료를 맡게 된다. 특히 재건지원대대의 경우 현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민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며 평시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 수행을 위해 훈련된 부대로 편성되었다.

물론, 첫 번째 고려요소는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이었다. 이라크 파병의 직접적인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2002년 말 촛불시위 이후 한·미 상호간 신뢰 구축 저하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한·미관계가 파병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한국군이 세계의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도 이라크 정부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판단에 파병 요청을 하였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라크 파병은 한·미간의 동맹을 향한 투자였다. 우리정부의 이라크 재건참여라는 결정이 비단 동맹관계 유지와 안보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표준’으로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경제적 신용도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신용등급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럽의 스페인처럼 미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낮고 유럽공동체라는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한국은 파병문제를 국가경제의 중차대한 생존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우리나라로서는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양국의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과 기술이전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주국방의 필수적인 국방과 방산분야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협력에 응할 가능성이 어려웠다.¹⁵⁸⁾

따라서, 한국군의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규모로 행사하고 있는 신용을 이용하는 ‘용신’(用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동맹이 ‘주둔’과 ‘인계철선’에 의해 신용을 고정으로 담보되었다면, 21세기의 동맹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패러다임 중의 하나인 ‘유동군’의 개념을 적용한 ‘유동적 신용’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전략적 용신이 필요하다. 국제경제와 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높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⁵⁹⁾

한국의 이라크 파병의 또 다른 의미는 파병을 계기로 미국과 함께 한국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의 ‘거대 게임(Great Game)’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점이다.

유라시아는 카스피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와 천연 가스가 거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고 이를 개발하여 국제시장으로 수송하는 송유관 매설지역과 경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이는 러시아, 미국, 터키, 이란, 인도, 파키스탄 간의 각축전이 ‘거대 게임(Great Game)’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우리에게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158) 강진석, 전계서, p.296.

159) 하영선, 전계서, p.266.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수입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입장이므로,¹⁶⁰⁾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이 군사정책 위주가 아닌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한국의 중·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해 가는 보다 큰 전략적 고려의 산물인 것이다.¹⁶¹⁾

이라크 전쟁 참가의 요인에 관해 한·미간의 서로다른 목적이 존재할 수 있어도 이라크 전쟁의 이후와 이라크 내의 평화재건을 통해 이라크인의 안보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었다. 한국과 미국의 양국이 이라크의 안보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이어온 혈맹과 한반도의 안보적 관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가치를 지향해 나가면서 이는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걸프전에 파병을 결정하기 전 연평균 12.7%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수출의 증가는 1989년 2.8%로 현저히 감소해 21.8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1990년 8월에는 9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무역적자와 함께 한국은 1987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 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즉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한·미동맹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시장개방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했다.¹⁶²⁾

이와 같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해외파병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라크 이라크로부터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⁶³⁾, 중동은 통상마찰로 인한 대외시장의 위축을 해결할 수 있는 건설과 상품 수출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파병으로 지속적인 파병이 요구되었다.

160) 동용승,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익은 뭔가,” 『국방저널』, 2003년 11월호, pp.34-37.

161) 현대건설(11억 4백만 달러)을 포함한 한국 업체들은 이라크에 대해 17억 6,904만 달러(약 2조 1,200억원)의 미수금(상업채권)을 갖고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공동전략 추진을 위해 이라크 민간 상업채권을 가진 각국 업체간 국제협의체인 ‘워싱턴 클럽’에 가입하였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2004년 3월 미국 임시행정처(CPA) 산하의 이라크 재건공사시행위원회(PMO)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 가운데 2억 2,000만 달러(약 2,600억원)어치를 수주한 것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EAI외교안보센터,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2』 (서울 : 동아시아 연구원, 2005), p.15.

162) 1990년에 한·미간의 통상마찰은 미국이 쇄고기 협상 과정에서 자유화 일정 요구, 한국의 수입억제 조치 중단, 한국정부의 환율 관여 불만, 통신회담 1년 추가연장, 지적소유권 촉구 등이 있었다.

163) 한국의 대중동외교는 1962년 이스라엘과의 국교수립으로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1973년 “신중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최중기 편저, “한국과 중동,” 『한국외교정책』 (서울 : 국제관계연구소, 1988), pp. 278-288. ; 한국은 중동진출 위해 주요 인사를 초청하였는데 1990년 사우디의 석유장관(1월)과 무역사절단(5월), 이란의 석유차관(5월) 등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외무부, 『외교백서』 (1991), p.195.

2. 해외파병 예산 절감

한국은 2017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현실은 경제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드문제 등 여러 군사적 상황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와의 관계로 인해서 안보와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심각한 경제적 요인인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관광시장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제도와 예산을 늘려가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제 불안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 연설을 한 것도 여·야의 협치 속에 국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찾아와 간곡한 부탁을 한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실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총화가 우선 이루어지면서 우리 군도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의 노력과 병행하여 현재 해외파병 중인 국군의 파병 관련 예산도 확인하여 보다 더 경제적인 파병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하겠다.

가. 해외파병 현황

유엔의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분쟁지역의 안정화, 국가위상 제고 등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국제평화유지 활동 지원의 해외파병과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원근거는 헌법 제 5조 제1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부대별 해외파견 및 연장 동의안이다.

2장 3절에서도 이미 언급된 현황으로 이를 요약하면, 걸프전 이후 2016년 11월말 현재 해외파병 현황은 13개국 1,103명이며, 부대단위 파병은 4개국 1,069명으로 <표 4-2> 과 같고, 개인단위 파병은 인도, 파키스탄, 남수단, 바레인 등 11개국에 34명이 파병되어 활동하고 있다.¹⁶⁴⁾

164) 국방부(2016), 전게서, p.266.

<표 4-2> 현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

2016년 11월 기준

구 분	부 대	현 병력	최초파견	교대주기	'17년 교대횟수
다국적군 · 국방협력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역)	302	'09.3월	6개월	3회
	아크부대(UAE)	146	'11.1월		2회
UN PKO	동명부대(레바논)	328	'07.7월	8개월	2회
	한빛부대(남수단)	293	'13.3월		1회

* 출처 : 국방부 해외파병과(2017), “해외파병 및 2017년 예산현황”

나. 파병예산 총괄 현황

2017년 국군 해외파병 예산은 <표 4-3>과 같다.

<표 4-3> 2017년 한국군 해외파병 예산

2016년 11월 기준

구 분	16 예산(A)	'17 확정(B)	'16 대비 증감(B)-(A)	%
총 계	80,230	79,635	△595	△0.7
파 병 수 당	33,839	35,077	1,238	3.7
운 영	46,391	44,558	△1,833	△4.0

* 출처 : 국방부 해외파병과(2017), “해외파병 및 2017년 예산현황”

다. 세부 예산편성 현황

국군 해외파병 관련 2016년 예산과 2017년 세부예산 현황은 <표 4-4> 과 같다.

<표 4-4> 2017년 한국군 해외파병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예산 (A)	'17 확정 (B)	'16 대비 증감(B)-(A)	%	
총 계		80,230	79,635	△595	△0.7	
파 병 수 당		33,839	35,077	1,238	3.7	
운 영 비		46,391	44,558	△1,833	△4.0	
다 국 적 군 파 병 · 국 방 교 류 협 력	계	39,411	40,199	788	2.0	
	파 병 수 당	16,880	17,078	198	1.2	
	운 영 비	22,531	23,121	590	2.6	
	청해 (소말리아)	소계	30,208	30,061	△147	△0.5
		해파수당	13,536	13,527	△9	△0.1
		운영비	16,672	16,534	△138	△0.8
	아크 (UAE)	소계	8,225	9,172	947	11.5
		해파수당	2,989	3,229	240	8.0
		운영비	5,236	5,943	707	13.5
	개인파병	소계	978	966	△12	△1.2
		해파수당	355	322	△33	△9.3
		운영비	623	644	21	3.4
	P K O 파 병	계	40,819	39,436	△1383	△3.4
		파 병 수 당	16,959	17,999	1,040	6.1
		운 영 비	23,860	21,437	△2423	△10.2
동명 (레바논)		소계	15,496	17,460	1,964	12.7
		해파수당	8,710	8,823	113	1.3
		운영비	6,786	8,637	1,851	27.3
한빛 (남수단)		소계	23,896	20,542	△3,354	△14.0
		해파수당	7,671	8,578	907	11.8
		운영비	16,225	11,964	△4,261	△26.3
개인파병		소계	1,427	1,434	7	0.5
		해파수당	578	598	20	3.5
		운영비	849	836	△13	△1.5

* 출처 : 국방부 해외파병과(2017), “해외파병 및 2017년 예산현황”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국군의 해외파병 예산은 약 800억 원으로 그중 해외파병 수당이 338억 원, 운영 예산은 46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2017년은 0.7% 감소된 79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16년 예산 사용결과 파병 형태별로 보면, 다국적군 파병은 총 394억 원으로 해외파병 수당 168억 원, 운영비 225억 원이었으며, 파병 부대별로 살펴보면 청해부대는 총 302억 원으로 그 중 해외파병 수당 135억 원, 운영비 166억 원이었고, 아크부대는 총 82억 원으로 해외파병 수당 29억 원, 운영비 52억 원이었다.

PKO 파병 관련 예산은 총 400억 원으로 해외파병 수당 169억 원, 운영비 23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파병 부대별로 살펴보면 동명부대는 총 154억 원으로 그 중 해외파병 수당 87억 원, 운영비 67억 원이었고, 한빛부대는 총 238억 원으로 해외파병 수당 76억 원, 운영비 162억 원이었다.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 교류협력 활동중 개인파병은 9억 7천여만 원이 사용되었고, PKO 파병활동에는 14억 원이 사용되었다.

2017년 예산사용 편성결과 파병 형태별로, 다국적군 파병은 총 401억 원으로 해외파병 수당 170억 원, 운영비 231억 원이었으며, 파병 부대별로 살펴보면 청해부대는 총 300억 원으로 그 중 해외파병 수당 135억 원, 운영비 165억 원이었고, 아크부대는 총 91억 원으로 해외파병 수당 32억 원, 운영비 5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PKO 파병 관련 예산은 총 394억 원으로 해외파병 수당 179억 원, 운영비 21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파병 부대별로 살펴보면 동명부대는 총 174억 원으로 그 중 해외파병 수당 88억 원, 운영비 86억 원이었고, 한빛부대는 총 205억 원으로 해외파병 수당 85억 원, 운영비 119억 원이었다.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 교류협력 활동 중 개인파병은 9억 6천여만 원이 사용되었고, PKO 파병활동에는 143억여 원이 편성되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 0.7%인 5억 9천5백만 원 감소 편성되었고, 주로 운영비 예산에 18억 원 감소되었으며, 해외파병 수당은 12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예산 관련 현역병과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예산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동원병력 파병 시 소요되는 예산 산출은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사례가 없어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보다 경제적인 파병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원병력을 파병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교분석 자료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청년 취업기회 확대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힘든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고급인력들이 안타깝게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업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원병력의 과잉이 우수한 인력의 활용은 물론 일정부분 취업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청년층 20대 실업자가 41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원인으로 기업은 취업자의 능력을 높이 요구했고, 구직자는 기업의 채용노력 부족을 지적해 상호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300여개 대·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500여명, 학계 및 전문가 100여명, 근로자 500여명에게 청년 고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설문한 결과를 연구자가 재인용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발표한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체는 청년 실업율의 주요 원인으로 구직 희망을 대기업·공기업 같은 상위 1% 직장으로 쏠리는 청년 눈높이(8.1점)를 가장 높게 평가 했다. 이어서 한국경제의 경기 침체(7.8점)와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7.6점), 고학력의 과잉과 학교 및 사교육(7.6점), 강하게 형성된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7.4점) 등의 순서였다.

반대로 청년층 구직자들은 기업들의 행태를 지적한 바, 적극적인 신규채용 투자를 꺼리는 기업의 노력부족(7.7점)을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 다음으로 고학력자와 학력과잉의 학교교육(7.7점)과 한국의 경기침체(7.6점),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실패(7.3점), 기득권 위주의 노동운동(7.0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7.3점), 한국경제의 경기침체(7.3점), 서비스산업의 발달 지연과 산업구조의 변화(7.3점)와 정년 60세 의무화(7.2점), 고학력자 과잉과 학교 교육(7.2점),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근로자들은 고학력자 과잉 및 학교교육(7.7점), 청년들의 취업 눈높이(7.7점), 기업들의 노력부족(7.4점) 등을 지적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주체로는 국가정부(50%)와 기업(28%)이다. 특히 청년 근로자와 구직자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극적 신규지원 채용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정부가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국가가 해외파병과 관련하여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고 장거리까지 자국의 부대를 파병시키는 이유는 국가마다 파병으로 자국의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이는 바로 국가이익 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자이툰 파병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인 성과를 봤을 때 기대했던 것 만큼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물론 이라크의 현지 정세가 불안한 것이 한국 기업의 진출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지만, 당시 중국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아르빌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구성 중에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노력이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⁶⁵⁾

그 당시 이라크의 쿠르드는 국제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이란과 터키를 비롯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많은 유럽국가의 업체들도 시장개척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국의 파병 목적도 세계 평화유지, 한·미동맹 강화에 있지만 국가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이툰부대 파병의 예를 들면,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찬사를 받는 등 그 목적을 달성하고, 해당지역 행정 관료들과 교류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적절한 시기에 국가차원에서 이라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으로 TF(Task Force)를 구성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추진했다. 즉 민사작전이 개시되는 초기에 쿠르드 지역의 치안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쿠르드 자치정부와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자이툰 부대가 해외 파병을 통해 이룩해 놓은 굳건한 신뢰를 기초로 경제협력의 확대를 국가차원의 정부주도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쿠르드 자치정부(KRG)나 쿠르드 지역사회에서 자이툰 부대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아르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성과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남·북한 분단된 지리적 여건과 부족한 자원의 제한을 극복하려는 정부차원의 파병정책 결정에 동원병력의 파병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교적,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미력하게 기여할 것이다. 해외파병에 현역과 대등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동원병력이 동참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안보관 확립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65) 오동용, “부대원들은 현지 어린이에게 기념품을 줄때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주었다.” 『월간조선』, 2월호, (2009), p.190.

제3절 군사적 측면

1. 국방개혁추진 여건 보장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기본방향으로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육성에 목표를 두고 첫째, 단·중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현재 및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¹⁶⁶⁾

주요내용 중 군 구조분야의 개혁목표는 미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첨단화 네트워크 중심의 군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중점으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가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병력구조도 정예화로 개선하는 것이며, 첨단전력을 증강하여 단위부대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대별 책임지역 확장에 따른 부대 수와 배비를 조정하고,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에 적합하도록 중간 지휘체대를 적정화하고 간소화 하는 것이다.

이중 병력구조 개편분야로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 여명 수준으로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하되, 간부비율을 증가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 하는 것이다. 상비병력 감축에 따라 각 군별 간부비율을 40%이상 유지하고 첨단·기술 집약형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를 증원할 계획이다.

국방운영분야 개혁은 국방경영 혁신으로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며, 주요개혁 중점은 실전적 교육훈련, 효과적 인력운영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동원체제 개선을 통해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 하고 군수분야의 혁신과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효율성을 증대하며, 국가발전에 상응한 장병들의 복지향상과 병영문화를 개선하여 선진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중 동원병력과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 하는 과제는 국방개혁의 중요한 축으로서 동원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동원즉시 전투력을 발휘하여 전쟁지속능력 보장하기 위한 동원체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평도 포격도발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시에 주요 전투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전시법인 부분동원법을 평시 법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166)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서울 : 국방부, 2017), p.4.

따라서, 동원즉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원병력과 예비군자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며 교육훈련 체계도 현대화와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전의 전장 실상을 고려할때 전방 전투지역에서 대규모 전투력의 손실이 발생했을때 후방에서 증·창설한 부대를 병력+장비+교육훈련까지 패키지로 하여 대대단위로 집단 보충하는 000개의 00보충대대를 편성해 운용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동원 및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 위해서 신형화기로 교체, 전투긴요 장비와 물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예비군 훈련을 전담하는 00개의 여단 단위로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 실전적 정예 예비군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군수운영 혁신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군수지원체계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군사시설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군수지원체계를 다단계에서 One-stop 체계로 단축하기 위하여, 군수지원 단계를 축소하고, 자동인식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 중심 One-stop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로 군수·복지·시설분야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인력 절감,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병들이 직접 하던 세탁, 물자 정비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 군 규격 표준차량을 상용차량으로 점진적으로 교체시키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 제도 등 민간 선진 운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간 정비업체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한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¹⁶⁷⁾

국방개혁의 핵심내용 중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병력중심의 양적인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기술 집약형의 질적 첨단화된 전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상비전력 규모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간부비율을 증가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국가안보에 있어서 동원 및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예비전력의 핵심자원인 동원병력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동원병력도 현역과 같이 해외에 파병하게 된다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동원병력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평가와 함께 상비전력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충분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군 구조개편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개혁과 군 구조개편을 보장하고 국가안보의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예비전력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동원병력 임무와 역할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67) 상계서, pp.4-30.

2. 동원 및 예비전력 활용 극대화

동원이란 국가 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의미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였다.¹⁶⁸⁾

산업화 이후부터는 전쟁양상이 대량과괴, 대량살상의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변화됨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는 대규모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예비전력의 영역 또한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까지도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원 및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을 충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임무와 역할과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군사력의 중요한 전력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상비전력의 부대 증편과 창설 소요에 대한 부대단위 보충이나 손실병력 발생 시 개인단위 개별 보충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상비전력 감축 공백을 동원 및 예비전력으로 보완하는 예비와 보조적 역할이 아닌 상비전력과 상호 동반자적 역할로 인식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현대전의 국가적 총력전화 추세를 고려할 때, 상비전력은 평시 전쟁억제력과 국지도발 시 응징 보복, 전쟁 초기의 대응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동원 및 예비전력이 동원 단계별로 신속히 보충되어 전쟁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넷째, 동원전력은 전시 주요전력으로 전쟁 발발 시 피·아를 막론해서 전투수행을 위하여 막대한 병력과 물자의 동원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수행의 필수요소라는 것이다.

동원 및 예비전력은 평시에는 상비 및 연합전력과 더불어 전쟁억제력 역할 외에 국지도발 작전 시 통합방위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한다. 전쟁 초기 상비군의 부족 전력을 보충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지속지원 및 확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¹⁶⁹⁾

이러한 동원전력을 해외파병을 하면 어떠한 유형별, 형태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세에 발생하였던 제1·2차 세계대전이나 중동전 등 대부분의 전쟁사를 보면 상비군은 평시 전쟁 억제력과 더불어 전쟁초기에 대응전력으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예비전력이 상비군을 점진적으로 대체하여 주력으로서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대한 전력을 동원

168) 육군본부, 『동원 및 예비군 업무』 (2013), p.1-1.

169) 박계호·팽준호,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칭) 창설 방안 연구』, 육군본부정책용역연구보고서(21세기군사연구소, 2016), p.43.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제정 및 동원집행 역량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300만 여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예비군은 동원예비군 150만여 명과 향토예비군 150만여 명이 상비군 부대에서 필요한 증편 및 창설 병력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원될 계획이다.

막대한 자원이 전시 단계적으로 동원이 될 계획으로, 특히 동원령 선포이후 일주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동원될 계획이다. 이들 동원자원의 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전쟁지속능력 유지의 핵심지로 개전초기 전방 부대가 필요로 하는 동원지원의 다수가 수도권에서 동원되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전시초기에 동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되어 동원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전시 동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을 원활이 수행할 수 없다.

남·북한이 긴박하게 대처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여 적지 않은 상비군과 예비전력을 편성 및 유지하고 있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및 상비군과 예비군 규모로 보면 북한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이다.

<표 4-5> 주요국의 인구, 상비군, 예비군 규모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이스라엘	한 국	북 한
인 구(만 명)	31,889	14,242	137,462	805	5,022	2,455
상비군(만 명)	138.1	79.8	233.3	17.6	60	120
예비군(만 명)	84	200	51	46.5	300	770
인구 : 상비군	231:1	179:1	589:1	45.8:1	79.7:1	20.4:1
인구 : 예비군	380:1	71:1	2.695:1	17.3:1	16.2:1	3.2:1

* 출처 : 박계호·팽준호,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칭) 창설방안 연구』, 21세기군사연구소, 2016.(2007), p.45.

이와 같은 방대한 현역과 예비군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비전력은 그 규모에 비하여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다든가 장비를 편성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전시 전방군단의 예비사단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동원

사단은 평시 기간편성이 매우 낮아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한 부대증편 및 작전지역으로 이동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우리의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이 북한에 비하여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동원하여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역과 동원 병력 해외파병을 통하여 동원 및 예비전력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할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과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정책부서(국방부, 육군본부)와 야전부대(연대장, 참모장) 근무하는 대령급 이상 주요 지휘관과 참모 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설문(면담)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종합할 수 있었다.

첫째,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인원(20명중 18명)이 찬성의 의견을 피력했으며, 그 이유로는 현역 감축에 따른 대체병력 확보와 상비병력 전투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 한국의 국력을 해외에 한층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예비군의 역할 증대와 함께 예비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예비역 자원 중에도 국가 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높고 특히 동원병력은 전역 후 4년차 이내 자원으로 해외파병 시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구비되어 있으며, 동원병력도 해외파병의 경험을 축적하여 통일 한국의 이후를 대비한 역할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우려되는 목소리는 현역과 달리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이 제한될 수 있으며 파병 동원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현역 주요직위자 및 참모들은 동원병력도 현역과 동일하게 해외파병 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법령 및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고, 분명한 것은 동원병력 해외파병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 동안 한국은 해외파병 문제로 일부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위상을 제고시키고, 100여만 명의 동원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예비군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물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상비전력의 감축에 따라서 대체병력으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동원

병력에 대한 해외파병 시 국가위상 제고와 예비군의 역할증대, 현역 대체병력으로 역할확대, 청년실업 해소 등의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동원병력 해외파병 유형 및 분야에 대해서는 대다수 유엔 평화유지군 등 국제사회 평화유지와 국방협력 등의 분야에서 임무수행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 증대와 역할 확대에 따라 해외파병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원병력도 해외파병을 통해 국제 평화유지 활동과 국방협력 분야에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동원병력 해외파병을 위한 선행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사전에 충분한 대국민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하고, 해외파병을 위한 병역법,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역에 준한 급여와 보상대책 강구 등의 추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령의 개정, 그리고 적절한 보상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국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도 관련기관 및 관계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과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한 폭 넓은 설문조사도 실시되어야 하며, 해외파병 방안이 구체화되면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파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동원병력 해외파병 시 파병병력의 선발대상 및 편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현역과 동원병력이 혼합 편성하는 것이 임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는 동원병력으로만 편성하여도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다수의 의견이 제시된 바와 같이 지휘체계와 주요 직위자는 현역 위주로 편성하고, 기타 작전지속지원 분야는 동원병력으로 편성하여 파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에는 동원병력 위주의 해외파병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는 현역과 동일하게 기존의 국방부 PKO 센터에서 전담하는 것과 동원전력사령부에서 주관 및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등하였으나, 향후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국방부, 합참, 각 군, 동원전력사령부가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훈련은 PKO 센터에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향후 동원전력사령부가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동원병력 해외파병 시 선발 대상에 대해서는 전역 1~4년차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1~8년차, 5~8년차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역 연차별 예비군 편성은 <표 4-6>와 같다.

<표 4-6> 전역 연차별 예비군 편성 참고자료

구 분	병			간부	
	1~4년차	5~6년차	7~8년차	1~6년차	7년차 이상
동원예비군	○			○	
일반예비군		○	○		○

* 출처 : 국방부, 『2017년 예비군 실무편람』, p262.

이를 분석해 보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시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감이 높고 건강한 자원으로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구비된 연차 이내자원(1~4년차)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타 의견으로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연차를 제한하지 않거나, 선발대상을 1~2년차로 한정하여 전투력 극대화하는 방법, 비전투병 파병 시 전 예비군으로 확대하고, 지휘부의 경우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 연령 정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간부의 경우에는 현행 소령은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로 편성되어 있는 현역과 예비군 편성 연령을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부예비군 편성 연령은 <표 4-7>과 같다.

<표 4-7> 간부 예비군 편성 연령

구 분	부 사 관			장 교			
	중사	상사	원사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연 령	40	50	55	40	45	53	56

* 출처 : 국방부, 『2017년 예비군 실무편람』, p54.

여덟째, 파병 동원병력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신문과 방송, SNS 등을 통해 공개 모집 공고 후 국방부에서 중앙 선발하는 방법과 기존의 개별 해외파병 선발방법과 같이 파병을 희망하는 전역 임박 현역 병력 중 해부대 지휘관의 의견과 추천을 접수하여 우수병력을 선발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대등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지휘체계와 주요직위자는 전역이 임박한 현역 위주로 선발하여 편성하고, 기타 작전지속지원 분야는 동원병력으로 선발 및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었고, 또한, 국민들과 동원병력들의 민감한 관심사항임을 고려하여 모집을 위한 공고시에는 공고문에 파병지역, 파병 시 임무, 파병규모 및 인원, 구비조건 및 자격, 파병시 급여 및 대우, 보상, 귀국 후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아홉째, 파병복귀 후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역 병력의 해외파병과 동일하게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임무수행 간 발생한 부상 및 사망자에 대한 예우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이 다수였으며, 추가적으로 파병 복귀 후 파병 전 소속 직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취업 시 또는 추가 파병지원 시 인센티브 부여 현역과 예비군 교육훈련 면제 등도 기타 의견으로 다수 제시되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시에도 현역과 동일한 보상체계 구축, 파병 복귀 후 파병 전 직장에 복귀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취업 시 인센티브 부여 또는 추가 파병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예비군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연구 및 검토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동원병력들 중 일부 인원이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파병을 지원한 자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즉 취업을 위해 파병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파병복귀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파병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파병에 대하여 우수자원이 다수 지원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대군 신뢰도 증진

예비군은 1968년 창설된 이후 89여회의 대침투작전에 참가하여 현역과 함께 무장공비 117명을 사살 하고 생포하는 전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재해·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마다 앞장서서 도움을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온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¹⁷⁰⁾

지금도 변함없이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향토방위의 주역으로서 생업을 뒤로 하고 예비군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국방개혁 추진 및 전반적인 안보환경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예비군을 중심으로 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역과 예비군 위상에 걸 맞는 해외파병 등 새로운 방향의 현역과 예비군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 중에서 현역과 예비군 해외파병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도 국정감사 시에 ○○당 ○○의원은 “이라크에 예비역을 부대 지휘관으로 파견하여 미국처럼 예비역 병력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한바 있다. 그 당시 답변자료 성격의 부분적인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집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변함없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위협, 비군사적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등 위협요인의 다양화와 군 구조개편, 제한된 국방자원을 고려할 때 상비전력만으로 갖가지 위협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예비전력이 우리나라 국가방위의 중심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군은 과거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최근의 걸프전, 이라크 등 주요 전쟁 때마다 다수의 예비군을 현역과 함께 파병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즉, 2차대전시에는 200만 명, 한국전쟁 시 34만 명, 걸프전 시에는 23만 여명을 동원하여 이 중 14만 4천여 명을 이라크전쟁에서도 21만 여명을 동원하여 본토 방호는 물론 4만여 명을 전투에 직접 참가시키는 등 예비군들을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¹⁾

170) 양점석 외, 전계서, p.78.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비군에 대한 필요성과 고마움에 대하여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예비군들조차도 예비군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국민들에게 불편만을 주는 예비군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며 심지어 예비군제도 무용론까지 스스로없이 제기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예비군들이 해외에 파병되어 현역 못지않게 눈부신 활동을 보여주고 국가의 위상을 펼치게 될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동원병력 파병 가능 여부를 현실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동원병력을 해외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파병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에서는 2003년 9월 30일에 육군본부 법무감실에 두가지 사항을 문의하였다. 첫째, ‘현행법상 예비군을 해외 파병하는 것이 가능한 가?’와 둘째, ‘예비군법, 병역법 혹은 PKO법을 제(개)정시 파병이 가능한 가?’라는 질의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한 법무감실의 검토결과를 회신해 온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예비군을 동원 또는 소집하기 위한 요건을 병역법, 군법에서 한정적으로 명시(상황적 요건에 의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군의 해외파병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하였다.

둘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국방의무는 위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으나,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예비군의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예비군의 설치이념과의 조화문제, 우리 헌법상의 평화추구 이념과의 충돌 가능성(헌법전문, 헌법 제4조, 제5조, 제6조), 기본권 보장의 정신과의 조화문제 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언론·정치권 등에 의한 위헌 여부의 개연성이 크다고 사료되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예비군을 해외에 파병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예비군의 해외파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예비군의 설치이념과의 조화문제, 우리 헌법상의 평화추구 이념과의 충돌 가능성(헌법전문, 헌법 제4조, 제5조,

171) 상계서, p79.

제6조), 기본권 보장의 정신과의 조화문제 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언론·정치권 등에 의한 위헌여부의 개연성이 크다고 사료 되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즉, 예비군의 해외파병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법적근거가 마련이 필요한데 법적근거를 마련할 경우에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법적근거 마련과정에서 단순히 관련 조항만을 가지고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관련된 제반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과 심층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¹⁷²⁾

2016년 11월 30일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추가적인 법률의 검토 및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군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제4절 소결론

본 장에서는 한국군 동원병력 해외파병 여건분석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외교적 측면에서, 첫째는 국제안보협력 증진이 파병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즉, 외교 정책 결정은 국가이익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며, 국가이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문제로 우리나라의 해외파병 활동을 통하여 분단된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파병활동이 평화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군 동원병력 파병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첫째는 파병의 당위성이다. 즉, 국내 정치 제도적으로 보면 공식적이며 까다로운 준비절차의 제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그리고 국회비준 통과를 위한 정족수가 높을수록 파병의 목적성과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파병에 따른 국민 공감대의 형성이므로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성원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병 동원병력의 신변안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으로 현역병과 혼합 편성하여 비전투지역이나 순수한 평화 유지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넷째는 이러한 해외파병활동이 우리나라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여건을 더욱 보장시켜 주고, 국내 내수 및 취업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첫째는 현역 병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현재의 군 구조개편의

172) 상계서, pp.91-94.

정상적인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해외파병 병력에 현역과 함께 동원병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방개혁과 군 구조개편을 병행하여 상비전력에 대응하
 는 개념으로 전·평시 동원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예비전력의 운용개선
 과 활용이 적극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동원병력이 해외에 파병되어 현역 못
 지 않게 눈부신 활동을 보여주고 국가의 위상을 펼치게 될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더욱더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원관련 주요 관계자(20명)의 설문 면담에서도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인원이 찬성의 의견을 피력했으며, 그 이유로는 현역 감축에 따른 대
 체병력 확보와 상비병력 전투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 한국의 국력을 해외에 드높일 수
 있으며, 향후 예비군의 역할 증대와 함께 예비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예비역 자원 중에도 국가 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높고 특히 동원병력은 전역
 후 4년차 이내 건강한 자원으로 해외파병 시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
 량이 구비되어 있으며 동원병력도 해외파병의 경험을 축적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한 역
 할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일부 우려되는 목소리는 현역과 달리 엄정한 지
 휘체계 확립이 제한될 수 있으며 파병 동원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원병력 해외파병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령
 제·개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분명한 것은 동원병력
 해외파병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다만, 그 동안 한국은
 해외파병 문제로 일부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동원병력에 대한 해외파병 시 국가위상 제고와 예비군의 역할증
 대, 현역 대체병력으로 역할확대, 청년실업 해소 등의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제5장 동원병력 파병 시 고려요소 및 추진방향

제1절 관련법령 제정 및 기구설치

1.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국가안보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련 사항으로 매우 심도 있는 연구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원병력 해외파병과 관련 병역법 및 예비군법의 개정도 국방의무 조항이나 현역과 예비군 설치 이념, 사회적 분위기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해외파병과 관련된 헌법조항은 제5조 및 제60조 ②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보면 현재의 파병대상은 국군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예비군은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현 조항으로는 현역과 예비군 파병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예비군도 파병대상에 명시하거나 또는 현역과 예비군 신분을 군인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비군을 군인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다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소집시킨 후 군부대에 입영 조치하여 현역과 동일하게 운용하면 된다.¹⁷³⁾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는 예비군의 신분을 군인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개정방향과 법령 개정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1>, <표 5-2>, <표 5-3>의 내용과 같다.

아래의 <표 5-1>은 법령별로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병역법 제 44조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동원병력을 추가하는 것이며 제 46조에는 병력동원소집시기에 해외파병시기를 추가하고, 제 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해외파병 예비역에 대한 동원병력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제 83조 전시 특례와 유사한 해외파병 특례도 추가하는 방향이다.

173) 상계서, p.94.

<표 5-1>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방향

관 련 조 항		개 정 방 향
병역법	제44조	• 병력동원 소집대상에 해외파병 대상자 추가
	제46조	• 병력동원 소집시기에 “해외파병 시기” 추가
	제52조	• 병력동원훈련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해외파병 예비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제83조	• 전시 특례와 유사한 “파병특례” 추가
병역법 시행령	제95조	• 해외 파병을 위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방법 정립
	제96조	• 동원병력 소집방법 개정
	제99조	• 병력동원 소집의 해제 시기 규정
예비군법	제2조	• 6항 국위선양을 위한 의료구호, 피해복구 및 건설지원 등 인도적 지원 요청 시 선발된 예비군에 한하여 지원 추가
		• 7항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작전 지원 요청 시 선발된 예비군에 한하여 지원

* 출처 : 양점석 외, 『예비군 해외파병 방안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4), p.95.

병역법시행령 제 95조에 해외 파병을 위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방법을 포함시키고, 제 96조 동원병력 소집방법 개정을 개정하여 동원병력에 소집시기를 구체화 하고, 제 99조 병력동원 소집 해제 시기도 명확히 규정이 필요하다.

예비군법은 제 2조 6항 국위선양을 의료구호, 피해복구 및 건설지원 등 인도적 지원 요청시 선발된 예비군에 한하여 지원 추가하고, 제 7항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작전 지원 요청 시 선발된 예비군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표 5-2> 병역법 개정방안

현 행	개 정(안)
<p>제95조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의 지정) ① ~ ② : 생략</p>	<p>제95조(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항 (신설)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현역과 예비군 해외파병을 위해 병력동원을 하고자 할때는 해외파병 대상 동원병력을 사전에 선정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항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해외 파병대상 동원병력을 통보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동원병력을 자원관리부대와 국방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항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병 병력과 동원병력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 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이 끝난 때 2. 동원령이 해제된 때 3.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p>	<p>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설) 해외파병 등 사전병력 동원소집 사유가 해소된 때</p>

* 출처 : 양점석 외, 『예비군 해외파병 방안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4), p.96.

위의 <표 5-2>의 병역법 제95조의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관련한 개정안으로 ③항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현역과 예비군 해외파병을 위해 병력동원을 하고자할 때는 해외파병 대상 예비군을 사전에 선정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해외 파병대상 동원병력을 통보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동원병력을 자원관리부대와 국방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병 병력과 동원병력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는 3개항을 신설해야할 것이다. 병역법 제99조의 병력동원소집해제 관련한 개정안은

4항 해외파병 등 사전병력 동원소집 해소된 때를 추가해야 한다.

아래의 <표 5-3>는 예비군법 개정안으로 병역법 제99조의 병력동원소집해제와 관련한 개정안은 4항 해외파병 등 사전병력 동원소집 해소된 때를 추가해야 한다.

<표 5-3> 예비군법 개정방안

조 항	현 행	개정안
제2조 (임무)	1.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 현역군 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예의 준비	1.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 또는 해외파병 시 현역군 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예의 준비
제5조 (동원)	1. 국방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국방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해외파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와 해외파병지원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보상 및 가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자의 유족은... (생략)	①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이거나 해외 파병 활동 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자의 유족은...(생략)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생략)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또는 해외파병 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생략)
제11조 (실비 보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또는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된 예비군대원(해외파병 동원병력 포함)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또는 실비 보상(파병수당 포함)을 할 수 있다.

* 출처 : 양점석 외, 『예비군 해외파병 방안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4), p.98.

위의 <표 5-3>의 제 2조, 임무에 국가비상 사태 하 또는 해외파병 시 또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임무를 명시해야 하고, 제 5조, 동원에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방장관은 출동 또는 해외파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지원자에 대하여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 제 9조, 보상 및 가료 제 11조 실비보상 조항에도 현역과 동일하게 동원병력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를 명시해야 한다.

2. 해외파병 관련법 개정

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파병 요건과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 협력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파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파병 장병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국회의 파병 철수 요구권 및 철수 후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파병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유엔 평화유지활동 이외에 다국적군 등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해외파병 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¹⁷⁴⁾

예비군의 해외파병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국가안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인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국방의무조항, 현역과 예비군 설치 이념 등 좀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 분야를 동시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해외파병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4>, <표 5-5>와 같다.

<표 5-4> 국제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관 련 조 항		개 정 방 향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동원병력 파병에 관한 사항 포함

*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158.

174) 국방부, 『2016국방백서』, p.158.

<표 5-5> 국제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육군규정 개정 방향

관 련 조 항		개 정 방 향
육규 321 해외파병 업무규정	제1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정의) 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파병”(이하 “파병”이라 한다.)이란 - 국방교류 등에 참여하는 국군부대, 군 요원, 선발된 동원병력을 해외로 파병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적용범위) 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병업무를 수행하는 육군본부 및 육직부대, 동원전력 사령부, 작전사 및 예하부대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 파병 준비 중인 부대 및 개인, 현역과 동원병력

* 출처 : 양점석 외, 『예비군 해외파병 방안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4), p.97.

위의 <표 5-4>의 국제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5조와, <표 5-5> 육군규정 321 해외파병 업무규정 제 3조의 적용범위에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동원병력도 파병의 대상에 포함시켜 파병의 된 동원병력들이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파병의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3. 파병 전담기구 설치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군이 파병정책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의 해외파병은 유관기관의 기능을 조정·통제하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발전할 수 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국제평화지원단과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등을 운용하는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에 대한 필요성 주장은 공식적으로 1991년 기능사령부 성격의 동원사령부 창설이 최초 제기되었고, 이 시기는 이미 1990년대 초 구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군비축소의 주장이 제기되어 상비군 감축과 더불어 이를 대체하여 예비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3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동원사령부 설치를 검토하면서 지상군과 해군 및 공군의 작전사령부와 동급으로 작전을 지원하는 기능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나 이를 위한 법령화와 조직 창설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2007년 9월 국방부 예측으로 집행기능을 수행할 동원사령부 창설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추진되지 않았으며, 2009년에도 동원기능 및 조직 통폐합으로 동원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전 평시 연계된 동원자원의 관리 및 운용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동원체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총괄기구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었다.¹⁷⁵⁾

2011년에는 18대 국회에서 당시 ○○○의원 등이 국방위 법안 소위에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각 군의 부담 경감 및 전시 동원집행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국방부에 동원사령부 창설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1월부터 육군 참모총장 책임 하 창설추진단 TF가 운영되었고, 2017년 5월 4일 동원전력사령부령이 제정 입법 예고되었으며,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2017년 10월 1일부로 창설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동원전력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전시에는 부대 증·창설 병력의 보충과 더불어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는 동원 및 예비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동원의 준비와 훈련 등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에 기여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방부대가 필요로 하는 증·창설 및 손실 보충 병력을 적시에 동원해서 전방전력을 보강해 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대로 육군의 직할부대이다.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운용은 국방부, 합참, 각 군, 동원전력사령부가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훈련은 PKO 센터에서 운용하고 향후 동원전력사령부가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우리 정부에서 해외파병을 통해 축적된 전문

175) 박계호·팽준호, 전게서, p.14.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발전시키는 기능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에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제안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방부가 주도하여 파병 부대별 특성에 맞도록 모델화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도 외교부와 책임과 권한을 분담할 요소가 많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역할을 분담하되 통합 효과를 지향하여 필요시 전략적 이중성을 취할 필요성도 있다. 외교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방부는 안보 및 군사작전 측면에서, 경제부처에서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부 산하의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등과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면 대한민국의 이미지 개선 뿐 아니라 국격에 상응한 개발도상국 개발원조 및 인도주의적 재난구호 등의 성과와 복합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해외파병을 전담하는 부대 운영은 2009년 12월부터 3천여 명 규모로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국제 평화활동센터(PKO)로 운영되고 있다. 파병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상비부대는 각각 1천여 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파병 전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경우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 2010년 7월 국제평화지원단(은누리부대)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고,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병과별 기능 부대를 의미하며 UN을 통해 공병부대와 의무부대의 파병 요청시 기지정된 공병, 의무 등의 모체부대를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여 파병한다.

PKO 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파병교육 전담부대로 1995년 8월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2015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명하고 국방대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파병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 평화활동센터는 파병부대의 파병요원에 대한 파병 전 사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 센터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국(DPKO)과 외교부 유엔과, 타 국가 PKO센터, 경찰 PKO센터 및 국내 국제평화 유지활동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파병부대와 개인 파병요원이 임무를 마치게 되면 파병부대 교훈사례집과 파병요원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

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 참모과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국가로부터 교육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 유지활동 연구, 교육, 파병관련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을 보강하고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유엔과 협조하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교관교육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2018년에는 ‘아시아·태평양 PKO센터 협의체 연례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국제 평화유지활동 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¹⁷⁶⁾

향후 국제평화 유지활동과 국제 분쟁지역에 우리 국군의 해외파병과 관련하여 현역은 물론 동원병력도 포함하여 파병되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관련 부처별 협업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 활동센터와 동원전력사령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현재의 PKO 센터와 동원전력사령부에서도 동원병력 해외파병과 관련한 교육이 병행하도록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절 국민적 공감대 형성

1. 국민과의 소통

동원병력 해외파병을 위한 선행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사전에 충분한 대국민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UAE 파병은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이 해외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총 13차례로 모두 헌법 5조에 있는 ‘국제평화’가 헌법적 근거였다.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후 1993년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상륙수 부대를 처음으로 파병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파병은 지난 20여 년간 유엔과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을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정부도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파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파병지의 성과와는 별개로 파병시마다 파병요청을 받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게 야기되었다. 특히 파병형태, 수행임무 등에 따라 정책을 결정

176) 국방부, 『2016국방백서』, p.160.

하는 과정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과 일부 반대세력의 주장에 밀려 정부가 최초 계획했던 파병정책을 변경하거나 정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국가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파병 시에는 긍정적인 파병명분과 한·미동맹에 의한 갈등요소를 최소화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국군의 파병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하겠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국민적 홍보를 해야 하겠다.

이를 기초로 향후 파병 시에도 냉정한 국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국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때론 다소 위협이 따르더라도 해외파병이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소에 PKO 파병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국익효과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분분할 때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역 동원관련 업무에 근무하는 주요 관계자들의 설문 및 면담결과에서 보듯이 동원병력도 현역과 동일하게 해외파병 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법령 및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분명한 것은 동원병력 해외파병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 동안 한국은 해외파병 문제로 일부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여론조사 활용 활성화

한국은 기본적으로 해외시장의 개척을 국가발전의 요체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여건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협력안보체제를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와 안전보장 그리고 우리의 자주국방에 소요되는 적정 자원 상당부분을 경제발전 분야에 투자한다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해왔었다.

동원병력의 해외파병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파병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많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국가 공영방송과 SNS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작은 정책 하나도 급격하게 방향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인데 국가 정책의 급격한 조정과 방향전회는 마땅한 명분이나 당위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그에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우리 국민들은 해외파병을 통해 국가의 안보는 물론 경제발전과 예비군 조직의 활력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2016년 7월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은 파병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만약 우리에게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UN의 적극지원을 희망하고 기대하기 위한 예상 때문이며, 과거 6.25전쟁에서 유엔이 한국을 지원한 점에서 국제 사회가 요구 시 한국의 파병은 국가적 신의를 지킨다는 것으로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미국의 경우도 과거 2차 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걸프전, 이라크 등 주요 전쟁 시마다 다수의 예비군을 현역과 함께 파병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즉, 2차대전 시 예는 200만 명, 한국 전쟁 시 34만명, 걸프전 시에는 23만여 명을 동원하여 이 중 14만 4천여 명을 이라크전에도 21여만 명을 동원하여 본토방호는 물론 4만여 명을 전투에 직접 참가시키는 등 예비군들을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다.

변함없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위협, 비군사적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등 위협요인의 다양화와 군 구조발전, 제한된 국방자원을 고려할 때 상비전력으로 갖가지 위협상황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예비전력이 우리나라 국가방위 중심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 해외파병 사안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여론조사를 활용하여 해외파병에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들도 설득하는 노력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국민적 총화 속에서 국민의 당당한 지원 하에서 동원병력도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비병력 즉 현역병력 위주의 해외파병에서 동원병력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활동, 여론조사결과를 홍보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3. 파병의 기대효과 전략적 홍보

우리 군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현역 병력을 점차적으로 감축하여 50여만 명을 유지하면서 상비 병력은 분단된 현실의 전투준비에 집중하고, 현역병의 감축에 따른 대체병력 확보와 그 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예비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것에 대한 동원병력의 역할 증대와 함께 예비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방개혁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군 구조개편의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한,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은 한국의 국력을 해외에 드높일 수 있으며 동원병력에게도 해외파병 활동의 경험을 축적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게 함은 물론, 예비전력 정책을 보다 폭 넓게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동원병력 파병은 한·미 동맹의 강화는 물론, 외국의 경제분야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으며, 파병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실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건설 회사들의 해외진출에 유리 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청년들은 물론 중·장년들이 엄청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자는 계속 늘고 있으며,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고급인력들이 안타깝게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업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청하고 이를 승인 협조해줄 것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상태의 수준이다. 따라서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이 우수한 인력의 활용은 물론 실업자 해결에도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가 요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들도 늘고 있다.

또한, 예비역 자원 중에도 국가 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높고 특히 동원병력은 전역 후 4년차 이내 건강한 자원으로 해외파병 시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구비되어 있으며 동원병력도 해외파병의 경험을 축적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한 역할의 증대가 가능할 것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 및 국방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도 관련기관 및 관계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과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해외파병 방안이 구체화되면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파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파병부대 편성 및 자원선발

1. 파병부대 편성

동원병력을 해외에 파병하는 방안은 현재 미국과 같이 현역과 함께 편성하여 현역과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 방안과 필요한 전문가만을 파병하는 제한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면적 방안이 가장 효율적 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스템과 국민들의 정서상 아직까지는 미국과 같이 전면적인 파병을 실시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고 보여 진다.

미국의 경우는 과거로부터 예비군을 현역과 거의 동일하게 훈련시키고 작전에 참가시키는 등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예비군들의 파병한 사례가 전무하고 많은 국민들이 현역들의 해외파병마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제한적 파병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파병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파병(안)은 현재 파병 활동 중인 자이툰 사단을 참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현역과 통합 편성하는 방안으로, 동원병력은 해외 파병부대 조직의 일부로 편성하되 현역과 혼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현역과 예비군을 혼합 편성하는 방안이다. 과거 이라크 사단의 편성을 보면, 공병대대, 의무대대, 수송대, 통신중대, 재건지원대대 등으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부대에 주요 핵심 지휘관 및 지휘자 그리고 필수적인 인원은 현역으로 편성하고 그 외 인원은 동원병력으로 편성하는 방안이며, 현재 분야별, 특기별로 우수한 현역병들이 파병요원에 지원하여 선발됨에 따라 많은 부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여 진다.

즉, 국내의 현역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수병력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 대신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을 가지지 못한 예비군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의 경우에는 현역에 의해 전반적인 지휘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부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운영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다만, 대부분이 현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현역과의 마찰도 일어날 수 있으며 지휘과정에서 동원병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휘를 할 경우 지휘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원병력도 법적으로 현역과 같은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역과 같은 일사분란한 지휘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현재도 병력동원 훈련 참가 시 병역법에 의해서 현역 신분의 법적인 지위와 보상 및 가료가 보장되고 있어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둘째, 동원병력만으로 파병부대를 편성하는 방안으로, 현역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부대를 동원병력만으로 편성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파병초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역 부대와 같은 체계적인 지휘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편성된 동원병력의 동화기간이 부족하여 소속감과 유대관계가 결여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동원병력의 파병이 계속되고 파병을 통해 충분히 경험이 축적되어 가게 된다면 파병지역과 임무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동원지원단에 편성되어 있는 동원보충대대와 같이 일정기간 파병 전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외파병 모체부대 조직문제가 구체화 될 경우에 동원 및 예비군관련 조직도 함께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대조직과 관계없이 소요되는 인원만큼 주요 민간기술자격을 구비한 동원병력을 선발하여 파병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파병 해당국의 언어에 능통한 어학자원, 전문상담사, 국제법 관련 변호사, 의사, 물류유통사, 전사상자 전문처리 요원, 현지 가이드 경험이 있는 현역과 예비군 중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파병하는 것이다.

과거 이라크 파병 시 아랍어에 능통한 우수한 어학자원 선발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방안은 앞에서 제시된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안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동원병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면서도 동원병력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의 논문과 설문에서도 제기되었듯이 현역과의 통합한 부대를 편성하는 방안이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여주듯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이 정착될 때 까지는 현역부대 지휘관 편성 하에 동원병력을 편성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원선발

해외파병 자원선발 시 파병유형별 특기자 선발은 중요한 요소이다. 파병 시 수행하는 임무는 정전협정 이행 감시, 지역 치안유지, 요인 경호작전, 교육훈련 등 전투병력 위주로 수행해야 하는 전투지원 임무와 인도적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등 비전투병력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로 현역병 위주의 평화유지 활동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파병 요청 국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예측할 때, 현역 병력만으로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현역 병력을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선발 목표는 직무수행의 최적격 후보자를 판별하고 예측하는데 있다. 즉 파병의 기준은 지원자 가운데 어느 자원이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선발의 최종 목표는 파병에 필요한 최적격 우수자원을 공정하게 선발하는데 있고 이러한 선발의 목표와 타당성에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필리핀의 태풍 피해복구 지원단은 재해재난 복구를 위해서는 119 소방요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군 병력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그동안 파병경험을 살펴볼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병원 및 학교시설, 도로 등의 보수와 신규 건설인데, 이러한 지역에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한다면 보다 능률적으로 파병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파병의 수요에 대비하여 요청국의 임무에 적합한 인력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파병 유형별 필요한 우수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기자원의 구비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공고하고, 둘째, 국가자격 인증이 필요한 직위는 공인기관의 해당 공인 자격증을 서류심사에 제출하도록 하며, 셋째, 실기 능력이 필요한 특기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평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선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파병시기에 임박하여 전역하는 현역병이 지원할 경우에는 관련 특기별 장관급 부대의

지휘관 추천서와 확인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여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기자 선발은 개인적인 희망의 요구와 취업을 위한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명예심과 국가 이익을 위한 해외파병임을 주지시키고, 엄격한 선발제도가 선결적으로 계획 되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파병 선발은 해외에 파병할 부대 및 개개인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해볼때 임무수행에 적합하고 우수한 요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개개인 자력평가, 해당국 언어구사 능력에 대한 평가, 면접, 다면평가, 해부대 지휘관 추천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동일 지역에 대한 추가파병을 제한하는 등 많은 병력이 해외파병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발된 파병인원은 각 군 본부와 합참의 책임 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 파병 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파병 간 임무수행 할 현지에서의 역할 완수에 필요한 준비와 직무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과거 한국군 이라크 파병병력은 국방부·합참의 편성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인원을 각 군 본부에서 선발했고, 장관급 장교 등 주요 지휘관 및 다국적군 사령부의 참모 및 협조 장교 등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각 군 본부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텡스 등 영어 구술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선발했고, 각 군 본부의 선발은 해외 파병부대 임무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체부대 선발과 개인 선발로 이뤄진다. 모체부대 선발은 견제 유지와 팀워크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했다.

부대단위 파병 선발은 각 군별 가용 부대수와 부대 여건을 고려해서 순환식 지정으로 균등한 파병 기회를 보장했고, 개인 선발은 사단 사령부와 민사여단의 참모부 요원과 모체부대 선발 시 부족한 인원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소요되는 해당 직위에서 임무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 개인자력과 다면평가, 해부대 지휘관 확인서, 신원조회 등을 통해 품성 저조자와 전과자 등은 선발에서 제한하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으며, 또 많은 인원이 선발 지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발 1개월 전에 군 인트라넷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지원서를 접수했다.

파병 동원병력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첫째, 신문 및 방송, SNS 등을 통해 공개 모집 공고하여 국방부에서 중앙 선발하는 방법과 둘째, 기존의 개별 해외파병 선발방법과 같이 파병을 희망하는 전역 임박 현역 병력 중 해부대 지휘관의 의견과 추천을 접수하여 우수병력을 선발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휘체계와 주요 지휘자는 전역이 임박한 현역 위주로 선발하여 편성하고,

기타 작전지속지원 분야는 동원병력으로 선발 및 편성하고, 모집을 위한 공고 시에는 공고문에 파병지역, 파병 시 임무, 파병규모 및 인원, 구비조건 및 자격, 파병 시 급여 및 대우, 보상, 귀국 후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3. 부모 및 가족 동의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우리나라의 병력은 현역병 위주로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선발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에서 주관하며, 파병분야 및 유형별 각 군 홈페이지와 지휘계통의 문서 하달로 전파 및 공유되어 지원자 중 각 군과 선발 주무부서에서 적격자원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쳐 파병지역에 투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파병 자원들은 현역 자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원 의사는 물론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2017. 3. 30.) 동아일보에 기사화 되었던 내용으로 육군의 모 부대가 6·25전쟁 당시에 매설한 지뢰를 탐색 및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될 장병들을 선발하며 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 작전에 소요되는 병사 30명 중 부모가 작전 투입을 허락하지 않은 3명은 제외하고 부족한 병력을 추가로 선발했다. 이 부대는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병사 5명을 다시 선발했다고 하는 현실에서 작전에 투입하는 병력마저도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고 움직이는 군이 얼마나 효율적인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값 비싸고 첨단화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군의 기초가 되는 간부와 병사, 그리고 군과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남북이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로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 군이 즉각 전투태세에 나서려면 국민과의 신뢰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을 것이다. 장병들은 물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도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없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성인이 된 병사들이 해외 파병을 지원 할 때 부모 동의가 필수항목이 된 것도 올해로 13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 절차가 ‘병영 내 포폴리즘’이라며 없애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일부 병사들 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현재까지도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병에 대한 부모나 가족에 대한 동의는 해외파병 지역, 수행해야할 임무와 파병지역의 위험수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파병 임무수행 중에도 방송, SNS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파병부대 동원병력들의 활동상과 피 파병국의 적극적인 호응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해외파병 동원병력 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들도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래야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지속적으로 파병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4절 파병부대의 임무수행

1. 유엔 평화유지 활동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규범적 기준은 국제연합 헌장을 기초로 한다. ‘국제분쟁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권고 이외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¹⁷⁷⁾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군사적인 조치 이전의 단계로서 경제제재와 철도 및 항만, 기타 운수, 통신수단의 중단과 국가 간 외교관계 단절 등을 회원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회복에 필요한 육·해·공군에 의한 무력시위 및 봉쇄 및 기타 추가적인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 유엔에 가입된 모든 회원국들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소요되는 병력의 원조 및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⁷⁸⁾

국방부에서는 평화 유지활동을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 간 자체적인 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며 유엔 주도 또는 유엔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역기구 또는 특정국 주도하 각국에서 파견한 군사 및 민간요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국제평화, 안전의 유지, 지역 질서회복을 돕기 위한 분쟁해결의 모든 활동을 총칭한다.’¹⁷⁹⁾ 라고 정의하고 있다.

177)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

178) 국제연합헌장, 제43조.

179) 국방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규정」, 제2조, 제2항.

합동참모본부는 ‘평화 유지활동을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의거, 분쟁이 악화되어 자체 해결이 제한되는 지역에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 활동에 동의가 있을 경우 분쟁지역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군인 및 민간인을 파견하여 정치·군사적 중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분쟁해결 활동¹⁸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용어의 개념을 바탕으로 평화 유지활동은 ‘분쟁 관련 당사국간의 동의를 기초로, 불가피할 경우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유엔에 의해 조직된 군, 경찰, 민간요원 등이 분쟁지역에 투입되어 유엔의 지시와 통제에 의거 분쟁 당사자간 공정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에 대한 예방, 분쟁의 확산 방지, 평화구축 및 유지 등을 통해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1999년 동티모르에 평화를 심어주고 복귀한 상륙수부대와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나라와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아랍에미레이트와 국방협력을 위해 파병되었던 아크부대 등은 전투부대로서 파병대상국 지역 내 우리 국민의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레바논에서 임무를 수행한 동명부대는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뿐만 아니라 태권도 및 한글교실 운영 등을 통해 문화 외교관 역할도 수행하며 중동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터키, 아이티는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에 구조팀을 파견하고 의약품, 비상식량 및 식수와 같은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아이티 대지진 발생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재건지원단인 단비부대를 파병하였고, 도로와 건물에 대한 피해복구, 의료 및 급수지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와 주민생활을 위한 재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¹⁸¹⁾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은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의 대규모 재해재난 지역에 실시한 국제적 파병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180) 상계서, 제2항.

181) 양철호·박효선, “해외재난 구호활동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군 아이티 재난지원단 파병 사례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9호(위기관리이론과 실천, 2013), pp.153-174.

아이티 재건지원단 성공의 요인은 첫째, 해외파병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파병 결정과 현지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파병부대의 통합적 지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현지 작전 여건과 파병대상국가 국민들의 성향을 고려 효율적인 민사작전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파병대상국에 파병된 외국군과 다양한 교류 협력이었다. 그러나 해외파병 후 조기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파병국 현지 특성에 부합되는 인력과 장비의 편성 등 보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의 파병사례를 기초로 추가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면, 대대적인 재해재난 상황 발생에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파병대상국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을 위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상륙수부대에서 실시한 사랑의 학교와 기술학교 운영은 대한민국의 박애정신을 널리 떨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군군 최초의 인도주의적 국제평화 활동으로 평가 받는 계기가 되었다. 소말리아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한 상륙수 부대는 국군 최초의 평화유지군 참가 부대로 다양하고 많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국군이 세계 어느 곳에 파병되더라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구호 활동은 '94년부터 '06년까지 연 인원 500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했던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을 시초로 아프카니스탄 동의부대, 이라크 제마부대 등이 분쟁지역에서 동맹국 및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료지원 등을 시행해 국위를 선양한 바 있다. 최근에 파병했던 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는 치사율이 50%를 넘나드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에라리온에서 진정한 희생과 봉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따라서 동원병력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분야는 상륙수부대와 같이 국경선 통제, 치안 확보 임무, 순회진료, 구호품 전달 등 인도적 지원 활동과 현지 주민들의 복구 활동과 동명부대의 정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이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정전 감시활동 활동, 다양한 민군작전 및 인도적 지원활동, 그리고 한빛부대와 같이 내전이후 황폐화된 지역의 도로, 비행장, 교량 건설 및 보수 등 재건지원 활동과 난민보호, 식수 및 의료지원의 안정화 지원 활동과 인도적 지원임무 등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어 유엔의 주도 또는 유엔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기구 또는 특정국 주도하 여러 회원국이 파병한 군 및 민간요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평화, 안전 유지 및 질서회복을 돕기 위한 각종 분쟁에 대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것이다.

2.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있는 해외파병은 대부분 유엔의 헌장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평화 유지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실시한 해외파병이 모두 유엔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전에 파병이었고, 최근의 이라크 파병 역시 동맹인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다국적군의 파병이었다. 이러한 동맹관계 또는 다국적군의 파병은 앞에서 제시했던 전형적인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국적군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엔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파병국가 자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엔 지휘통제 하에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다국적군 자체적인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해외파병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유엔 평화 유지활동보다는 다국적군의 일부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파병부대의 작전 지속지원은 가장 어려운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해외 파병부대가 파병대상국 작전지역에서 필요한 각종 보급품과 근무지원은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파병장병들의 작전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인 식량과 식수, 의복, 주거공간은 필수적인 지원요소이다.

작전지속 지원은 파병 장병들의 작전지역에서 생존과 작전활동에 소요되는 장비 및 물자의 보급뿐 아니라, 보급품 운반 및 수송, 분배에 필요한 병력과 일련의 절차, 조직, 근무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부 보급품의 소비는 제한적이지만, 각각의 장비와 기계, 차량에서 소요되는 다량의 연료 등을 필요로 하듯이 파병병력들도 많은 식량과 식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품목들은 파병병력들이 위치한 곳에 수송되어, 저장, 분배,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전지속지원은 장비와 물자뿐 아니라 물자의 관리 절차와 의료지원, 수송활동을 위한 시설, 후송을 위한 시스템, 부대별 의료인력, 의약품의 공급, 특수기구와 기타 물품 등이 포함될 것이다. 파병 형태별 작전지속지원을 위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 평화유지활동으로 해외 파병되는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속 지원은 유엔의 책임하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며, 파병국가에서 지원되는 품목은 유엔에서 경비를

보전하게 된다. 유엔에서의 경비보전 방침으로 식수, 유류, 급식은 유엔에서 현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으며, 장비를 운영 유지하기 위한 정비 비용은 월단위로 경비의 보전이 이루어지고 파병대상국에서 철수 시에는 감가상각비로 보전하게 된다.

또한, 부대 및 개인의 운영물자와 시설의 사용과 유지를 위한 부대비용은 월단위로 경비 보전되며, 물자와 병력 수송을 위한 선박 또는 항공 수송비용은 파병국이 선 집행후 유엔에서 경비를 보전해 준다. 하지만, 장기 저장해야 하는 부식류나 특정국만의 기호식품, 증·후식, 전투식량과 비상부식은 파병국이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매월 유엔에서는 경비보전을 위한 운영검사를 실시하는데, 등록된 장비의 수량만 보유해야 하며 보유 장비는 100% 가동 되어야 하고 검사결과 불 가동 장비는 경비에서 제외된다.

둘째, 특정국가 중심으로 분쟁지역의 분쟁해결을 위해 다국적군을 형성하여 평화유지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의 작전지속지원은 평화유지 작전부대에 대한 지원 경비는 본국에서 부담하며, 지원이 제한되거나 또는 비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다국적군 구성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후 상호간의 약정에 의해 경비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다국적군 파병 시 작전지속 지원과 관련 유의할 점은 다국적군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서로간의 협조 하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유류 등 수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품목은 최대한 다국적군 간 상호 지원이나 현지에서 구매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분쟁지역이나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사령부의 연락 및 협조관, 연합참모, 군감시단으로 선발, 개별적으로 파견되는 요원들로 이들의 작전지속지원으로 개개인 특수 피복류는 파병국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을 위한 논리를 전개할 때 그것이 “UN 평화 유지활동”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국적군 활동”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원병력 해외파병 시 전투병으로써의 임무수행 보다는 현역 병력의 경계지원이나 전투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위 선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시 다국적군 파병활동 가능분야는 상륙수부대와 같이 국경선 통제, 치안 확보, 순회 진료, 구호품 전달 등 인도적 지원 활동과 현지 주민들의 복구 활동과 청해 부대가 수행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상선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 등도 가능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방협력 활동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평화적이고 상호간에 싸우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국방협력이라 함은 서로 힘을 합쳐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방어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도주의와 국방협력은 대단히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협력 활동의 목표는 국가 상호간 안보협력을 통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며, 안보분야 협력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실천결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인도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손 꼽히는 적십자사와 제네바 협약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사업가였던 앙리 뒤낭은 나폴레옹 3세의 슬페리노 전투에서 고통에 절규하는 사르데냐 및 프랑스 동맹군을 목격하고 전쟁 중에도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주창하면서 구호 활동을 시작한 것이 적십자 운동의 출발이었다. 그 후 전시 국제법이 전파되고 군대의 역할이 단순히 적국과의 전쟁에서 교전하는 수준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호와 적국의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로 확대되었다.

군대는 단순히 총을 들고 싸우는 조직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존재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군의 역할로 적군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재난구호 활동을 펼치는 것도 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전체적 합집합을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이라고 한다. 우리 군은 다양한 재해와 재난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구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홍수 피해 복구나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 등이 국방협력 활동이며, 최근 대형 재해재난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인 국방협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국방협력의 해외 사례로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공군기지는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와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등 베네룩스 3국의 공군 인력이 해마다 수천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인트호벤 공군기지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진정한 국방협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의 합동작전은 말리나 리비아에서처럼 특정지역의 분쟁에서나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분쟁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도 평소 군의 전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될 시 자국의 이해에 충족하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군을 파병하는 것을 프랑스와 영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모인 것은 “모으고 분담하는 (Pooling and Sharing)”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합동 국방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였지만, 각국이 경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권이 또다른 이슈를 논의할 여유조차 남겨놓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 EATC는 총 7,682회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아프카니스탄에 병력과 장비 및 물자를 수송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에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을 지원하고, 리비아의 다국적군 작전을 지원했다.

따라서 한국의 동원병력도 상비군과 함께 직접적인 전쟁이외의 평화유지, 인도적 지원, 위기관리, 대형 재해재난 등과 같은 군사작전과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작전(국제범죄, 마약, 테러, 밀수, 에이즈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상비군이 임무수행 하는 분야는 어떤 임무도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총체 전력의 개념에서 동원병력의 임무 및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군사작전에서는 동원병력이 전투임무도 담당할 수 있겠으나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아크부대의 UAE의 연방군(UDF)과의 국방협력과 UAE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보호 임무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파병 복귀 후 관리

1. 취업 인센티브 부여

파병 업무를 마치고 복귀를 앞둔 대부분의 군인에게 취업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전역군인은 경제적으로 위기 상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적절한 일자리를 보유한 파병군인은 사회인으로서 새 삶을 영위해 가는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파병군인 취업지원은 국방부, 노동부 등에서 부서별로 업무 분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파병군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며 파병군인의 직업훈련과 고용 차관보를 임명하고 매년 업무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상이 제대군인 근접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의 제대군인 취업 담당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각 주에 이들 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협력함으로써 파병군인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파병군인에 대한 취업과 훈련지원 서비스(VEETS)를 통해 연방 공무원 및 체신 공무원을 포함 모든 소청하는 개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면세품의 구입이나 군 의료지원 시설 이용 등 상비군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복무 후 지급되는데 전임(full time) 근무자는 20년 후에 지급되며, 기타는 20년 근무 후 60세부터 지급된다.¹⁸²⁾

우리나라는 전역 간부의 경우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은 육군 제대군인 지원 센터를 비롯하여 국방부 국방취업 지원센터,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제대군인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기관은 나름 특성에 부합된 전직지원에 관한 각종 정보를 탑재하고 있으나, 병사들의 경우에는 전직지원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취업 정보의 제공은 매우 취약하다.

군 장병이 전역 전부터 자신의 능력과 경력에 부합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이 시급하다. 또한, 군 복무 후 제대한 장병들의 취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 각 부처 및 각 군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오히려 전역장병들의 전직지원을 산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파병병력에 대해서도 현재 제대군인이 사용하고 있는 현역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을 파병병력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파병병력도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각 군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직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병병력이 필요한 추가사항도 국방부와 각 군 및 국가보훈처가 협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파병 희망자 대부분은 취업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별도의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파병 전 직장으로서의 복직과 우대, 취업 시 일정 범위 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인력풀을 구성하여 언제든지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동원병력들이 해외파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평화유지 활동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동원병력의 파병 복귀 후 가능한 범위 내 제도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잔여 예비군 훈련시간 조정

우리나라의 경우 예비군은 처음부터 전시 동원 대비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내 고장과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서 예비군에 편성된 자원들은

182) 이상욱, “해외파병유형별 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합동군사대학교 논문, (2015), p.51.

일정의 예비군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예비군의 훈련대상은 병사의 경우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며,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군 인사법에 따른 계급별 연령정년에 이르는 해 까지 예비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

예비군 교육훈련은 일반훈련과 동원훈련으로 구분되며, 예비군법 제6조 및 병역법 제49조에 따라서 신규 전역자는 예비자원으로 당해 연도 훈련이 부과되지 않고 병사는 전역 후 1~4년차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 3일,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등 36시간, 5~6년차에는 기본훈련 등 20시간이 부과되고, 장교 및 부사관은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이 2박 3일 부과되며, 세부 훈련 시간은 아래 <표 5-6>과 같다.¹⁸³⁾

<표 5-6>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구 분		일반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		예비 시간
		기 본 훈 련	작 계 훈 련	동 원 훈 련	동미참 훈 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간 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7~8년차					
병	1~4년차	동원 지정자		2박3일		132
		동원 미지정자		12	24	124
		공군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5~6년차	동원 미지정자	8	12		140
	7~8년차					

* 출처 : 국방부, 『2017년 예비군 실무편람』, p.342.

이에 따라, 해외파병 복귀병력은 파병유형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협력분야 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시간을 면제해 주거나 파병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기타 보상대책

우리는 과거 월남전 시 고엽제 피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파병지에서 사망하였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처리규정 등을 세밀하게 정립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외에도 강릉지역 무장간첩 소탕작

183) 국방부, 『2017예비군 실무편람』 (2017). p342.

전에 참가하여 다친 예비군들에 대한 보상 문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더욱 세밀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에 소속된 예비군들이 지원하여 선발될 경우에 소속된 직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직장에 소속된 동원병력이 파병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장의 동의와 함께 직장 차원에서의 파병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약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앞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예비군이 해외에 파병될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인센티브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며,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해외파병 자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자원들이 다수 지원하게 되는 동기가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군부대 시설 및 의료시설 이용과 면세품 구입 등 현역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해외파병 동원병력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원병력 파병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미군의 경우는 해외파병 장병의 가족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병원진료와 심리상담 등의 의료지원, 군 복지시설 무료이용 등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파병장병과 가족에 대한 국가와 군 차원의 각종 의료지원과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병무청이 “병역명문가에 군 복지시설 문 활짝”이라는 보도가 게재 되었는데, 2017년 6월 19일부터 병역명문가중만 소지하면 군 시설의 체력단련장, 휴양시설, 마트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희생과 헌신에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⁸⁴⁾

우리나라는 군인이 각종 훈련, 작전, 평화 유지활동 등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전공사·상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에 대한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현역 장병을 포함하여 군인과 동원병력이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상받아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제·개정이 필요하다.

184) 국방일보, (2017. 6.19).

제6장 결 론

국제사회는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안보 및 국방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국방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주변의 각국들도 자국에 맞는 국방개혁 비전을 세워놓고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개혁 2020’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동원 및 예비전력분야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과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7년 10월1일 육군 직할부대로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되는 등 동원 및 예비전력이 안보환경변화,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원병력의 해외 파병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군 동원병력의 해외 파병방안에 관한 연구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동원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하고 국제 분재의 개념, 국제평화 유지군의 구성과 활동에 관해서 정리한 후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결정요인을 외교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군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고, 외국의 동원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한국군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여건 분석과 동원 관련 주요직위자 및 참모, 실무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 시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국가안보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련 사항으로 매우 심도있는 연구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원병력 해외파병과 관련 병역법 및 예비군법의 개정도 국방의무 조항이나 현역과 예비군 설치 이념, 사회적 분위기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해외파병과 관련된 헌법조항은 제5조 및 제60조 ②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보면 현재의 파병대상은 국군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동원병력은 군인신분이 아니므로 현 조항으로는 현역과 동원병력 파병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동원병력도 파병대상에 명시하거나 또는 현역과 예비군 신분을 사전에 군인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원병력을 군인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다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소집시킨 후 군부대에 입영 조치하여 현역과 동일하게 운용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는 예비군의 신분을 군인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적 논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법안을 제정하고자 할 때 국민들의 여론을 얻지 못하면 해당 법안의 제정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 주요직위자 및 참모들의 설문 및 면담결과에서 보듯이 동원병력도 현역과 동일하게 해외 파병 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법령 및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동안 한국은 해외파병 문제로 일부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동원병력 해외파병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의견수렴 형성으로 사전에 충분한 대국민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마땅하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파병 시에는 긍정적인 파병명분과 주변국과 한미동맹에 의한 갈등요소를 최소화 하며, 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 및 국방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도 관련기관 및 관계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과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한 폭 넓은 설문조사도 실시되어야 하며, 해외파병 방안이 구체화되면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파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파병병력의 선발의 문제이다. 해외파병 시 수행하는 임무는 정전감시, 치안유지, 경호작전, 교육훈련 등 전투병 중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전투지원의 임무와 인도적 구호활동, 피해복구,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비전투병중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로 구분함으로써, 파병의 기준은 지원자 가운데 어느 자원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선발은 해외에 파병될 부대와 각개 장병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자력에

대한 심사와 파병 대상국의 어학능력 평가, 면접, 다면평가, 해부대 지휘관의 추천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선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신문과 방송, SNS 등을 통해 공개 모집공고 후 국방부에서 중앙 선발하는 방법과 기존의 개별 해외파병 선발방법과 같이 파병을 희망하는 전역 임박 현역병력 중 해부대 지휘관의 의견과 추천을 접수하여 우수병력을 선발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동원병력 파병부대 편성은 해외 파병부대 조직의 일부로 편성하되 현역과 혼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현역과 예비군을 혼합 편성하는 방안이다. 이는 주요 핵심 지휘관 및 지휘자 그리고 필수적인 인원은 현역으로 편성하고 그 외 인원은 동원병력으로 편성하는 방안이며, 현재 분야별, 특기별로 우수한 현역병들이 파병요원에 지원하여 선발됨에 따라 많은 부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여 진다. 즉, 국내의 현역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수병력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 대신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을 가지지 못한 예비군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파병된 동원병력의 임무수행 분야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에 의거 그 권한이 부여되며 유엔 주도 또는 유엔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지역기구 또는 특정국가의 주도하에 파병된 군과 민간요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지역 내 질서회복을 위한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전투유형과 평화유지 활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파병복귀 후 관리로 파병병력에 대해서도 현역간부와 병의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각 군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직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병 병력이 필요한 추가사항도 국방부와 각 군 및 국가보훈처가 협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병인원에 대해서는 파병기간이 만료되어 복귀 이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물론 파병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여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에 소속된 동원병력이 파병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장의 동의와 함께 직장 차원에서의 파병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약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군부대 시설 및 의료시설 이용과 면세품 구입 등 현역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해외파병 동원병력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원병력 파병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 논문을 연구하면서 기존 연구 자료가 부족하였으나,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비록 제한된 인원 에 대한 설문과 면담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다수의 인원들이 동원병력의 해외파병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파병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역과 예비군 중에서도 상당수 인원들이 파병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과 함께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하겠다는 다수 인원들이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는 국가 및 국방부 차원에서도 동원병력 해외 파병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토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동원병력들의 입장에서 지원 및 선발, 보상, 훈련,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심도 깊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원병력 해외파병 문제는 국방개혁과 군 구조개편 추진과 연계한 현역의 감축과 갈 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국가 안보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기 않기 때문이며, 국가 이익 추구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맞춰 동원병력 해외 파병도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동원병력 해외파병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향후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적 환경변화를 미리 미리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동원병력의 해외파병 방안도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

둘째, 미국 등 선진국의 해외파병 사례들을 통해 얻어지는 여러 효과들을 분석하여 우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동원병력도 국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해외파병 시 국익은 물론 국방개혁에 기여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국방대학교, 『군사동원론』, 국방대학교 출판부, 2004.
-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서울 : 국방부, 2017.
- , 『2017예비군 실무편람』, 서울 : 국방부, 2017.
- , 『국방백서 2016』, 서울 : 국방부, 2016.
- , 『예비전력정책서』, 서울 : 국방부, 2017.
- ,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서울 : 국방부, 2003.
- 외교부, 『외교백서』, 서울 : 외무부, 1991.
- 김용현, 『군사학개론』, 서울 : 백산출판사, 2005.
- 박계호·팽준호,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칭) 창설방안 연구』, 21세기군사연구소, 2016.
- 박동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서울 : 선인, 2016.
- 송승중, 『UN 평화 유지활동의 이해』, 서울 : 연경문화사, 2006.
- 양점석 외, 『예비군 해외파병 방안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4.
- 외교안보연구원, 『1999년 국제정세전망』,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98.
-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2001』, 서울 : 외교통상부, 2001.
- 유병용 외, 『박정희 시대의 한·미 관계』, 서울 : 백산서당, 2009.
- 육군본부, 『동원·예비군업무 실무지침서』, 2015.
- , 『동원 및 예비군업무』, 2013.
- 장진원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 법문사, 1998.
- 최종기, “한국과 중동,” 『한국외교정책』, 서울 : 국제관계연구소, 1988.
- 황진환 외, 『군사학개론』, 서울 : 양서각, 2011.
- 허남성 외,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방안』, 서울 : 국회국방위원회, 2002.

나. 논문

- 강현구,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2009.
- 권혁주 외,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취약국가의 개발협력 : 취약국가 모형과 정책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 김동성,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참여와 국가이익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수행·김현경, “한국의 대중동 파병외교 정책: 아프가니스탄 및 UAE 파병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32권 3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4.
- 김열수. “한국군의 평화활동 : 회고와 전망”, 『해외파병사연구총서』, 제1집(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김정두, “한국 군사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재두, “한국의 파병과 한반도 안보질서”,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4.
- 김철우 외, “해외파병의 전략적 접근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5.
- 김현조, “국방개혁2020과 한국 예비군제도 발전방안”,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계운봉, “한국의 해외파병에 나타난 국가이익 구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남궁곤, “외교정책 결정 요인”,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 명인, 2009.
- 남창희, “일본의 주(駐)캄보디아 PKO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3집 2호, 1993.
- 동용승,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익은 뭔가”, 『국방저널』, 2003년 11월호, 2003.
- 마상윤, “한국군 베트남 파병 결정과 국회의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22권 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3.
- 박동순, “탈 냉전기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파병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병철,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제분쟁관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성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산업경제연구소, “이라크 파병 경제적 영향 분석”, 『산업경제정보』, 제163호, 2003.
- 서보혁, “결정의 합리성: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제55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 안충준, “캐시미르분쟁과 한반도에서의 UN PKO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양철호·박효선, “해외재난 위기시 구호활동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군 아이티 재건지원단 파병사례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9호,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2013.
- 오재복,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동 Timor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유정하·임진희, “한국군 해외파병 관련 국내의 현황과 기록관리 실태”,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
- 윤지원, “탈냉전기 한국군의 파병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4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 이갑성, “한국의 다국적군 해외파견과 국가자율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병록, “한국의 베트남, 이라크 파병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상욱, “한국 해외파병정책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 로즈노의 예비이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세영, “예비군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정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과정 분석”,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임태호,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할과 방향”, 호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전제국,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PO)의 국익증진 효과”, 『국가전략』, 제17권 2호, 성남 : 세종연구소, 2011.
- 조춘호, “한국군의 유엔상비체제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 국외문헌

- Allison, Graham T. Zelikow, *Philip. Essence of Decision :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ition*, Pearson Education Publishing, 1999.
- James D. Fearson and David L. Laitin,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2003.
-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 Nicholas Publishing Company, 1980.
- Nikolai TabUNov "Sources and Cause of Wars," *Soviet Military Review*(May1986).
- Richard E. Dupuy and Trevor N. Dupuy,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from 3500 BC to the Present*, New York : Harper & Row, 1977.
- International Peace Academy, *Peacekeepers Handbook*, New York: Pergamon, 1984.
- Marshall, "Assessing the Societal and Systemic Impact of Warfare," *Center for Systemic Peace*, 2000.
- .Mats R. Berdal, "Whither UN Peacekeeping?," *Adelphi Paper 281*, London : Brassey's, 1993.
- UN, *The Blue Helmet : A Review of the Nations Peace-keeping*, New York :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90.
- United Nations, *The Blue Helmet*, New York : UN, 1992.
- United Nations, *UN Peacekeeping Operations : Principles and Guidelines*, New York :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 UN Department of Field Support, 2008.

3. 기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서울 : 법제처, 2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군법』, 서울 : 법제처, 2016.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법률 제1508호), 1963.
-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해설집, 1985.
-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 43조.
- 연합뉴스, 『연합연감 2004』, 2004.
- 오동용, “부대원들은 현지 어린이에게 기념품을 줄때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주었다.” 『월간조선』, 2월호, 2009.
- EAI 외교안보센터,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국가 안보패널 정책보고서 2』, 2005.
- 육군본부, 『평화유지활동』, 육군 인쇄창, 1999.
-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 분석』, 합참, 2004.
- 해군, 『군사전략개론』, 해군대학, 2009.
- 행정학용어 표준연구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010.
-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 제공자료, 2007.
- 국방일보(2017년 6월 19일).
- 국방일보(2016년 7월 31일).
- 동아일보(2003년 7월 25일).
- 조선일보(2002년 12월 31일).
- 세계일보(2004년 2월4일).
- http://www.mnd.go.kr/sub_home/html/sub_home9_menu1-1.html(검색일 : 2017. 1.15.)
- <http://www.kida.re.kr/woww/>(검색일 : 2017. 2.15).
- www.armyreserve.army.mil/ARWEB/MISSION/History.htm, (검색일 : 2017. 3.7)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2460&cid=43667&categoryId=4366>(검색일 : 2017. 3.22.).
- <http://www.UN.org/en/peacekeeping/documents/operationslist.pdf>, (검색일 : 2017. 4.15).
- <http://www.peacekeeping.go.kr>(검색일 : 2017. 5.6.).